

# 日帝의 「朝鮮土地調査事業」에 있어서의 「國有地」創出과 「驛屯土」調査

愼 鏞 廈\*

〈目 次〉

I. 머리말	VII. 導掌과 農民權利의 處理
II. 驛土의 國有地化	VIII. 「驛屯土實地調査」
III. 屯土의 國有地化	IX. 「朝鮮土地調査事業」中の 國有地
IV. 宮庄土의 國有地化	X. 「驛屯土分筆調査」
V. 牧場土・其他土地의 國有地化	XI. 맺음말
VI. 未墾地의 國有地化	

## I. 머 리 말

日本帝國主義가 1910년 韓國을 植民地化한 後에 植民地體制 수립을 위한 제일차적 작업으로 실시한 植民地政策 중의 하나에 「朝鮮土地調査事業」과 그에 병행하여 실시한 「驛屯土調査」라는 것이 있다.

「朝鮮土地調査事業」일반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일찍 밝혀낸 약간의 선구적 연구논문들이 있으며, 필자도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연구논문으로 서술한 바 있다.<sup>(1)</sup> 「驛屯土」調査는 본질적으로는 「朝鮮土地調査事業」의 一環인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도 한 편의 선구적 연구논문이 있다.<sup>(2)</sup> 이 논문은 日帝의 소위 「驛屯土調査」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앞서 쓴 「朝鮮土地調査事業」에 대한 논문의 속편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驛屯土」는 「國有地」의 別稱이다. 원래 「驛屯土」라는 용어는 朝鮮王朝時代에는 「驛土」와 「屯土」만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日帝는 1906년 이후 帝室財産과 國有財産

\*서울大學校 社會學科 副教授

(1) ① 朴文圭「農村社會分化的起點としての土地調査事業に就て」『朝鮮社會經濟史研究』(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 1933. 서울.

② 李在茂「朝鮮における「土地調査事業」の實體」『社會科學研究』第7卷 第5號, 1955. 日本 東京.

③ 愼鏞廈「日帝下の「朝鮮土地調査事業」에 대한 一考察」『韓國史研究』第15輯, 1977. 서울.

(2) 權寧旭「日本統治下の朝鮮における所謂「驛屯土」問題の實體」『朝鮮近代史料研究集成』(友邦協會) 第3號, 1960. 日本 東京.

을 「整理」한다고 하면서 「驛屯土」를 「國有地」의 별칭으로 쓰기 시작하다가 1908년부터는 공공연하게 「國有農地」를 총칭하여 「驛屯土」라고 불렀다. 따라서 1908년 이후부터는 「驛屯土」에는 「驛土」와 「屯土」뿐만 아니라 「宮庄土」「牧場土」「陵園墓位土」 기타 官衙와 宮房의 附屬土地가 모두 포함되고 있다. 日帝의 한 調査資料는 「驛屯土」의 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驛屯土란 것은 甲午制度革新 以後 前掲 驛土及 屯土等の 總稱으로서 사용되었으며, 宮內府內藏院 管理當時에 있어서 驛屯土의 種目을 들면 屯土 驛土 牧場 堤堰畝 竹田 楮田 松田 薑田 蘆田 紫場 草坪 烽臺基地 公廨基址 寺刹坐地等이다. 그러나 隆熙二年 各宮庄土及 陵園墓附屬地等과 함께 宮內府 所管을 廢하여 一切 國有財産으로서 度支部 所管에 歸屬시킨 以來 此等 各種의 土地를 합치어 이를 驛屯土라고 總稱하기에 이르렀다. 現今의 驛屯土라고 稱하는 것은 即 以上 各種의 土地를 包含시킨 國有田畝의 總稱인 것이다.」<sup>(3)</sup>

開港(1876)후부터 大國帝國이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1904)까지의 한국에서의 農業 部門과 관련된 日本資本의 활동은 生産物의 支配에 집중되어 있었다. 물론 이 때에도 日本資本은 生産手段인 《土地》의 占有를 추구하고 이를 시도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食糧・原料를 저렴하고 풍부하게 供給하기 위해서는 商業・貿易 부문에서 《生産物》을 支配하는 것 보다 生産手段인 《土地》를 支配하는 것이 더욱 收益率과 確實性이 높은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05년 말엽 日帝가 소위 「乙巳條約」을 체결하고 日帝統監府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日本資本의 土地占有는 크게 진전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外國人의 土地所有는 朝鮮王朝政府의 法律로 원기적으로 禁止되어 있었고, 日本資本의 不法의 土地占有는 여러가지 社會的 制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日帝가 1905년 12월 「統監府」를 설치하여 한국을 政治的으로 支配하게 되자 가장 먼저 실시한 정책의 하나가 日本資本의 土地占有를 자유롭게 許容하고 保護한 것이었다. 1906년 10월의 「土地家屋說明規則」은 비롯하여 그후 계속해서 발포한 12개의 土地關係法令 및 規則이 그러한 정책의 표현의 일면이었다.<sup>(4)</sup> 그러나 이것은 日本資本의 土地占有를 許容하고 保護하기 위한 緊急措置로서의 臨時法規에 불과하고 아직 本格的 植民地政策의 범주에 드는 것은 아니었다.

日帝의 土地占有를 위한 本格的 植民地政策은 1907년부터 일단 土地를 國有地와 民有地로 나누어 國有地占有政策부터 制定되었다. 日帝의 國有地占有를 위한 植民地政策은 民有地에 대한 것과는 성격상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즉 日本資本의 民有地의 占有는

(3) 朝鮮總督府 『小作農民ニ關スル調査』 1912, pp.2의 30~31.

(4) 嶺南慶 『日帝下の「朝鮮土地調査事業」에 대한一考察』의 (이하 <前掲論文>으로 약함) 第1表 참조.

日帝의 植民地政策의 적극적 支援에도 불구하고 일단 經濟過程을 통한 資本의 支出을 수반하는 土地占有인데 비하여, 國有地占有은 資本의 支出을 수반하지 않고 植民地統治權力에 의거하여 《無償》으로 방대한 면적의 土地를 占有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日帝가 한국을 植民地化함으로써 일거에 획득할 수 있었던 전형적인 植民地掠奪의 하나이었다. 日帝가 「朝鮮土地調査事業」의 본격적 실시에 앞서서 國有地占有政策을 서둘러 집행하게 된 것도 그것이 資本을 支出하지 않고 植民地統治權力에 의거하여 《無償》으로 土地를 획득할 수 있는 특성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日帝의 植民地政策의 본질은 國有地占有政策에서 더욱 赤裸裸하게 잘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다.

日帝의 植民地政策의 일부로서의 國有地占有政策은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① 農耕地占有政策 ② 未墾地占有政策 ③ 山林·林野占有政策등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山林·林野占有政策을 제외하고, (5) ① 農耕地占有政策과 ② 未墾地占有政策에 대한 부분이다.

日帝의 國有地調査의 主體는 때때로 형식은 大韓帝國政府의 이름을 빌었을지라도 실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日帝가 이를 담당하고 집행하였다. 日帝는 1907년 6월에 宮內府 制度局안에 「臨時整理府」를 두었다가, 7월에는 「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을 설치하고 國有財産과 帝室財産을 分割하여 조사하는 기관으로 삼았다. (6)

「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의 委員長은 유명한 親口派 宋秉畷이었으며, (7) 그 實務高官은 모두 日本人官吏들이었다. (8) 日帝는 1907년 11월에는 다시 宮內府안에 「帝室財産整理局」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9) 이 기관들이 國有財産과 皇室財産을 임의로 분할하자, 日帝는 國有財産을 整理하고 管理하기 위하여 1908년 7월에 度支部 안에 「臨時財産整理局」을 설치하는 한편, 동년 6월에는 「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을 폐지하고 동년 8월에 「帝室財産整理局」을 폐지하였다. (10) 「臨時財産整理局」은 ① 國有에 移屬된 財産의 調査 및 整理 ② 이 때문에 發生한 不動産上의 權利에 관한 異議申立의 審議 ③ 帝室債務整理 ④ 이에 부쳐서 土地測量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11)

(5) 山林·林野占有政策에 대한 先驅的 論文으로서는, 權寧旭「朝鮮における日本帝國主義の植民地的山林政策」『歴史學研究』第297號, 1965, 日本 東京, 참조.

(6) 「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官制」 및 「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臨時處務規程」『例規類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0987) 참조.

(7) 『度支部來去案』(奎章閣圖書, No. 17766) 第6冊, 隆熙元年 十一月七日條(照會 第214號) 참조.

(8) 『度支部來去案』 第5冊, 隆熙 2年 7月 7日條「通牒 第350號」에 의하면 이때의 調査實務의 主役은 度支部書記官·事務官·主事등 4명이 모두 日帝官吏였다.

(9) 臨時財産整理局『臨時整理局事務要綱』1911, pp. 1~8 참조.

(10) 『度支部來去案』 第5冊, 隆熙 2年 6月 30日條(照會 第55號) 참조.

(11) 度支部『韓國財政施設綱要』1910, p.193 참조.

그러나 臨時財産整理局은 地方組織이 없었으므로 각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國有地」의 실제의 調査와 管理에 대해서는 실제로 度支部의 日帝顧問部에 속해있던 各地方 財務監督局에 의존하였다. 日帝는 1907년 7월 「韓日新協約(丁未七條約)」 체결이후 바로 顧問部를 擴張하여 日帝財政顧問으로 하여금 한국의 徵稅權을 장악하도록 하였다. 日帝는 그 監督機關으로서 서울(漢城)·平壤·大邱·全州·元山·公州에 財務監督局을 설치하고 종래의 稅務監을 全廢하여 종래의 十三道觀察使·地方郡守의 稅務權을 폐지하였으며 日帝가 모든 財政權을 완전히 장악하였다.<sup>(12)</sup> 日帝는 財務監督局의 執行機關으로서 全國에 231箇所의 財務署를 설치하였다.<sup>(13)</sup>

日帝의 〈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整理局·帝室財産整理局↔財務監督局·財務署〉가 소위 「國有地(驛屯土)」 調査와 管理의 초기의 主體가 된 것이었다. 1910년 3월에 度支部內에 土地調査局이 설치되었다가, 日帝強占 후인 1910년 10월에 朝鮮總督府안에 「臨時土地調査局」이 설치됨으로써 소위 「國有地(驛屯土)」 調査의 주체는 후기에는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으로 統攝되어 이행되었다.<sup>(14)</sup>

日帝의 國有地調査는 기본적으로 4단계를 거쳐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 1 단계는 1907년~1908년 사이에 財政整理·帝室財産整理라는 명목으로 驛土·屯土 뿐만 아니라 宮庄土·牧場土·陵園墓位土·未墾地 기타 각종의 土地를 「驛屯土」에 포함시키어 國有地面積을 創出하고 確保한 단계이다. 제 2 단계는 1909년 6월~1910년 9월 사이에 國有地로 창출하여 확보한 토지에 대하여 소위 「驛屯土實地調査」라는 이름으로 面積과 小作料와 小作農을 조사한 단계이다. 제 3 단계는 1910년 9월~1918년 1월에 「朝鮮土地調査事業」을 하는 도중에 國有地를 申告 또는 通知하여 土地台帳등 각종 帳簿를 갖추고 國有地의 所有權을 登記한 단계이다. 제 4 단계는 1918년 1월~1918년 12월 사이에 「朝鮮土地調査事業」의 附帶事業으로서 이른바 「驛屯土分筆調査」라는 것을 실시하여 小作農別 地目別 疆界를 査定하고 國有地에 대한 지배체계를 최종적으로 확립하여 완료한 단계이다.

이 논문에서는 각 단계에 있어서의 日帝의 「國有地」創出過程과 「國有地」調査의 특질을 고찰하여, 그런 통해서 日帝의 國有地占有政策에서 나타나는 日帝의 租民地政策의 내용의 일부를 보려고 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처음부터 資料의 부족에 부딪치고, 사용된 자료도 日帝側의 調査資料에 치우치게 되었으므로 스스로 미흡함을 전감하지 않을 수 없다. 부족한 부분과 자료는 다른 기회에 補充하려고 한다.

(12) 「朝鮮の保護及併合」 『朝鮮統治史料』(韓國史料研究所) 第3卷, pp.185~186 참조.

(13) 『韓國財政施設綱要』 p.8 참조.

(14)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이하 「報告書」로 略稱), 1918, pp. 15~21 참조.

## II. 驛土의 國有地化

日帝가 韓末에 「驛土」라고 하여 國有地化한 土地 중에는 본래의 官有地인 「馬田」·「院主田」등 〈有土驛土〉뿐만 아니라, 본래가 民有地인 「驛公須田」「長田」「副長田」「急走田」「站衙祿田」등 〈無土驛土〉가 무차별하게 포함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民有地가 日帝의 統治權力에 의하여 國有地에 強制編入되고 많은 農民이 자기의 所有地를 잃게 되었다.

驛土는 驛站의 附屬地를 총칭한 것이다. 朝鮮王朝時代에는 統一新羅時代 이래의 전통에 따라 各道의 主要地와 道郡에 통하는 道路에 평균 40里마다 1개의 驛이나 站을 설치하고 驛丁과 馬匹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이를 管理하는 官吏로서 察訪 驛長 副長 急走등을 두었다. 이 때 官吏의 俸給, 官吏宿泊의 費用, 養馬의 費用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각종의 土地가 이른바 驛土인 것이다.

朝鮮王朝時代에 驛土의 制度가 확립된 것은 世祖 때로서 全國에 538개의 驛을 두고 40명의 察訪을 배치하였으며, 이를 위한 附屬地로서 驛公須田 長田 副長田 急走田 院主田, 站衙祿田등을 설치하였다. 이 制度가 法制化된 것은 『經國大典』 戶典 諸田條에 다음에 같이 土地 배분의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sup>(15)</sup>

① 驛公須田……大路는 20結(黃海道는 25結을 加하고 兩界는 10結을 加함), 中路는 15結(兩界는 7結을 加함), 小路는 5結(兩界는 3結을 加함).

② 長 田……驛長은 2結.

③ 副長田……副長은 2結 50負.

④ 急走田……50負(緊路에는 50負를 加함).

⑤ 馬 田……大馬는 7結(緊路에는 1結을 加함). 中馬는 5結 50負, 小馬는 4結(緊路에는 各 50負를 加함).

⑥ 站衙祿田……5結.

⑦ 院主田……大路는 1結 35負, 中路는 90負, 小路는 45負.

이러한 土地들은 驛站院이 있는 부근의 비교적 肥沃한 土地를 골라 設치한 것이었다.

이 制度가 甲午更張 때까지 약간의 수정을 거치면서 19세기 중엽까지 내려 온 것이

(15) 『經國大典』 戶典 諸田條, 『朝鮮王朝法典集』(景仁文化社版) 第1卷 pp.187~188. 「驛 公須 大路 二十結(黃海道加二十五結 兩界加十結) 中路十五結(兩界加七結) 小路五結(兩界加三結), 長 二結, 副長 一結五十負, 急走 五十負, 大馬七結 中馬五結 小馬四結(緊路則 急走加五十負 大馬加一結 中·小馬加五十負), 站, 衙祿 五結, 院, 院主 大路一結三十五負 中路九十負 小路四十五負.」

다.<sup>(16)</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驛士들이 처음부터 모두 國·官有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위의 驛士 중에서 ① 驛公須田 ② 長田 ③ 副長田 ④ 急走田 ⑥ 站衙祿田은 처음부터 民人의 私有地의 收稅權(즉 收租權)만을 驛·站·院에 配當한 <無土驛士>였고, 실제로 官有地로써 配當된 <有土驛士>는 ⑤ 馬田과 ⑦ 院主田 뿐이었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長田·副長田·急走田에 대해서는 『經國大典』 戶典 諸田條에 「長田 副長田 急走田은 卽 各自收稅이다」<sup>(17)</sup>라고 하여 이 3가지 종류의 驛士는 民田의 收稅權만을 驛에 分給하여 준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馬田 院田은 自耕無稅이다」<sup>(18)</sup>라고 하여 이것이 官田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驛公須田과 站衙祿田에 대해서는 바로 日帝調査者가 인용하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宣祖實錄』 宣祖 7년條에서 다음과 같이 그것이 民有地임을 밝히고 있다.

「備邊司 啓하여 가로되 臣들이 삼가 大典諸田의 條를 按컨대, 馬田 院田 津大田 氷夫田 陵軍田은 則 自耕無稅라고 합니다. 이것은 즉 公田으로써 應食의 人에 許해서 自耕해서 無稅로 하는 것입니다. 衙祿公須田 渡田 崇義殿田 水夫田 長田 急走田은 則 各自收稅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民田의 收稅로써 應食者에게 給하는 것입니다. 頃年 任事의 官이 法典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公須, 長, 急走 등의 田結이 많지 않습니다. 錢우어 들어는 마의 稅가 작은 것으로써 드디어 誤認하여 公田으로 만들어 卒爾대 公文을 廢達시킵니다. 어찌 一時의 誤見으로 因하여 肅宗 金石의 典을 毀하고 卽 病民의 蠲免 해야 하겠습니까. 臣컨대, 다시 議論해 주십시오. 答曰 啓에 依하라. 但 長田의 事는 允許하지 않다. 後에 아날 允許하다.」<sup>(19)</sup>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馬田·院田은 <自耕無稅>하는 官田이고, 衙祿公須田 長田(및 副長田) 急走田은 <各自收稅>하는 民田이라는 사실이다. 위의 上啓는 지방관들이 잘못 알고 衙祿公須田 長田(및 副長田) 急走田을 官田(公田)으로 취급하는 경우를 교정할 것을 요청하여 允許를 받고 있다.

또한 驛公須田에 대해서는 甲午更張 때 驛士(免稅地)에 대하여 <甲午陸摠>을 했을 때의 文書에 「結稅 以公須位로 付寶山驛이우고, 土則 各有番主하여 五百餘年 暫相賣買之地也」<sup>(20)</sup>하여 驛公須田의 土地는 民人의 私有地이고 結稅만 特定驛에 일부에만 <無土驛士>임을 제

(16) 『大典會通』(1865年刊)에서도 驛·站·院田에 대해서는 아무런 修正없이 經國大典(貫)의 수록되고 있다. 『朝鮮王朝法典集』(景仁文化社版) 第4卷 pp.219~220 참조. 1865년의 法典에서는 「驛士」에 대한 규정이 아무런 變動이 없음을 甲午更張때 까지 「經國大典」의 규정이 法制上으로는 존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7) 『經國大典』 戶典 諸田條 (前掲版) 第1卷 pp. 182~183 및 「大典會通」 戶典 諸田條 (前掲版) 第1卷 p. 219 「國行水陸田……長田 副長田 急走田則 各自收稅」 참조.

(18) 『經國大典』 戶典 諸田條 (前掲版) 第1卷 p. 182 및 『大典會通』 戶典 諸田條 「前掲書」 第1卷 p. 219 「官屯馬田 院田 津田 氷夫田 守陵軍田則 自耕無稅」 참조.

(19) 羽田一郎 『朝鮮土地 地稅制度調査報告書』 pp. 288~289. 現存國史編纂委員會版 『宣祖實錄』에는 이 자료가 없고 『備邊司騰錄』도 宣祖時代分은 逸失되어 있다. 이 자료도 그후 逸失되었거나 다른 資料의 誤記가 아닌가 추측된다.

(20) 『驛屯土關係所關文牒去案』(一名『驛訓旨』)(奎章閣圖書 No. 17898) 第9册, 建陽元年 10月 10日條 <照會叟支部大臣署理金在豐第二十二號>.

확인하고 있다.

官田으로 되어있는 馬田・院主田은 〈白耕無稅〉라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驛卒들로 하여금 自耕케 해서 그 生産物을 稅없이 모두 驛의 經費와 自食에 充當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에는 驛卒들이 農民에게 小作을 주어 小作經營을 하고 賭租(小作料)를 받아 經費와 自食에 充當하는 일이 많았으며, 이 때 小作料가 一般小作地에 비하여 크게 低廉하고 定額制가 많았기 때문에 〈賭地權〉이 발생하여 轉賣되는 일이 많았다. 朝鮮王朝後期에 있어서의 驛土의 變遷에 대해서는 이 시대의 연구자가 독립논문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19세기 이후 朝鮮王朝末期의 실태를 보면 이 사이에 官僚와 農民들이 상당한 부분의 馬田과 院主田을 私田化하여 버렸으므로 「甲午更張」때의 官田에 대한 〈甲午陸摠〉과 〈乙未查辦〉의 결과를 보면 官田으로서의 馬田과 院主田의 면적은 크게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甲午更張」때의 驛土는 다음과 같은 세개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본래부터 民人의 私有地로서 田稅만을 國家가 아니라 驛站院에 납부하던 ① 驛公須田 ② 長田 ③ 副長田 ④ 急走田 ⑤ 站衙祿田등과 같은 〈無土驛土〉.

② 官田인 馬田과 院主田이 점차 私田化되어 民人의 私有地로 되어 버린 〈第二種有土驛土〉.

③ 甲午更張 때까지 官田으로서의 馬田과 院主田으로 남아 있던 〈第一種有土驛土〉.

甲午更張때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위의 세가지 범주의 驛土 중에서 ①과 ②는 民人의 私有地가 된 것이고 ③만이 官田으로서의 〈第一種有土驛土〉라고 볼 수 있다. 甲午更張 때의 驛土의 面積을 보면 위의 ①과 ③을 모두 합하여 보아도, 다음 제 1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국에 걸쳐 2萬 6,846結 42負 5束에 불과하다.<sup>(21)</sup> 특히 咸鏡南北道와 廣州府는 驛土가 거의 私田化되어 그 結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甲午更張 때 政府는 舊來의 驛站制度를 廢止하고 近代의 交通通信制度를 채택함과 동시에 驛土를 免稅地에 대해서 〈甲午陸摠〉을 하고 이듬해 〈乙未查辦〉을 하면서 〈無土驛土〉는 이를 民人에게 돌려주고 官有地의 〈有土驛土〉만을 農商工部・軍部를 거쳐 度支部와 宮內府에서 관장하게 되었다.<sup>(22)</sup> 그러나 光武年間(1900년)에는 驛土는 모두 宮內府의 內藏院 소속으로 옮겨지게 되고<sup>(23)</sup> 이때 〈光武量田事業〉과 병행하여 內藏院所管土地에 대해서 〈查檢〉을 하면서 內藏院收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폐지된 〈無土驛土〉도 모두 「復結」되어 「驛土」의 民有地 형태로 되고, 結稅를 內藏院에 납부하게 되어 文書上으로는 모두 內藏院의 「驛土收

(21) 『結戶貨法稅地』(1895)(서울大古圖書 No. 5127-10) p. 26 참조.

(22) 『驛屯土關係所關文牒去案』第9冊(照會度支部大臣署理李鼎煥八十七號)이하 참조.

(23) 『朝鮮の保護及併呑』〈前掲史料〉p. 176 참조.

〈表 1〉「甲午陸摠·乙未査辦」때의 各道別 驛土面積, 1895年頃

順位	道·都	面積
5	京畿道	2,361結 48負 3束
1	慶尙道	9,571" 52" 3"
4	全羅道	2,449" 63" 4"
2	忠清道	5,355" 18" 6"
3	黃海道	3,223" 41" 4"
6	平安道	2,086" 91" 4"
7	江原道	1,281" 19" 2"
	咸鏡南道	未詳
	咸鏡北道	未詳
8	開城府	291" 98" 1"
10	春川府	15" 96" 4"
9	水原府	209" 15"
	廣州府	未詳
	合計	26,846結 42負 5束

資料：『結戶貨法稅則』

入」 속에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에도 驛土가 限定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光武量田·査檢>의 결과인 1900~1908년의 十三道の 驛土面積이, 田은 1萬 3,020石 15斗落 2升 5合 2夕落 및 結 124結 73負 2束이었으며,<sup>(24)</sup> 畚은 1萬 859石 17斗 7升落이었고, 田畚結이 713結 88負 8束에 불과하였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sup>(25)</sup> 이때(1900년)의 驛土收入을 보면 한 報告書는, 租 7萬 1,085石 5斗 7升 9合 9夕, 太 1,686石 11斗 4升 3合 8夕, 米 10斗, 粟 423石 15斗 7升 8合 8夕, 木 麥 22石 18斗 4升, 牟 1,016石 4斗 6升, 各穀 2,009石 11斗 6升 8合 7夕, 薪 10斗 4升 5合, 苦草 9斗 9升, 木花 319斤, 錢 50萬 1,377兩 5錢 5厘라고 보고하고 있으며<sup>(26)</sup>, 같은 <光武量田査檢>의 결과인 다른 한 報告書는 貨幣로 환산하여 總計 56萬 3,479兩 6錢 3分 8厘라고 보고하고 있다.<sup>(27)</sup> <光武量田·査檢> 후의 驛土의 單位인 道別로 보면, 제 2표와 같이, ① 慶尙北道 ② 京畿道 ③ 慶尙南道 ④ 江原道 ⑤ 忠清南道 ⑥ 全羅北道 ⑦ 忠清北道 ⑧ 全羅南道 ⑨ 平安北道 ⑩ 黃海道 ⑪ 咸鏡南道 ⑫ 平安南道 ⑬ 咸鏡北道の 순위로 되어 있다.

(24) 여기서 「結」이 「斗落」과 독립되어 計算되고 있는 것은 원래부터 斗落으로 표시되어있지 않고 結로만 표시되어 있어서 서로 정확히 換算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25) 여기서 「田畚結」은 田·畚의 区分이 不明하지만 結과 표시되어있는 面積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統計는 모두 「十三道驛土田畚斗落與賭領」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 자료에는 各道·各郡別까지의 驛土의 面積과 收入이 詳細히 수록되어 있다.

(26) 『十三道驛土田畚斗落與賭領』(奎章閣未整理圖書, No. 20626)참조.

(27) 『各驛土賭錢收支總領』(奎章閣圖書, No. 19452) 참조.



〈表 2〉 「光武量田・査檢」 후의 道別 驛土收入額, 1900~08年頃

順位	道別	驛土收入額	百分比(%)
2	京畿道	7萬 8,378兩 5分 5里	13.91
7	忠清北道	3萬 9,440兩 7錢 2分 2里	7.00
5	忠清南道	4萬 6,622兩 5錢 2分 2里	8.27
6	全羅北道	3萬 9,592兩 8錢 4分	7.03
8	全羅南道	3萬 2,591兩 4錢 3分	5.78
1	慶尙北道	8萬 8,922兩 2錢 0分 5里	15.78
3	慶尙南道	7萬 7,762兩 4錢 6分	13.80
10	黃海道	2萬 7,626兩 9錢 4分 2里	4.91
12	平安南道	1萬 3,301兩 9錢 3分	2.36
9	平安北道	3萬 0,349兩 6錢	5.39
4	江原道	5萬 2,352兩 5錢 3分 5里	9.29
11	咸鏡南道	2萬 4,747兩 2錢	4.39
13	咸鏡北道	1萬 1,791兩 2錢 1分 7里	2.09
總計		56萬 3,479兩 6錢 3分 8里	100.00

資料：『各驛土賭錢收支總額』에서 작성.

日帝는 1907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한 國有地創出 工作을 집중함에 있어서 驛土의 實態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驛土의 實相과 그대로 一致하도록 國有財産을 整理하려던 日帝는 이를 당연히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했을 것이다.

(1) 『經國大典』과 『大典會通』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의 田稅만 驛에서 수납하던 본래부터의 民人의 私有地인 ㉠ 驛公須田 ㉡ 長田 ㉢ 副長田 ㉣ 急走田 ㉤ 站衙祿田 등의 〈無土驛土〉는 검토할 여지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로 民人의 私有地로 처리하여야 했을 것이다.

(2) 『經國大典』과 『大典會通』에서 〈自耕無稅〉로 규정된 ㉥ 馬田과 ㉦ 院主田중에 1907년에 내려올 때까지 土地私有權의 確立과 土地私有化의 進전에 平行하여 私田化된 「驛土」(〈第二種有土驛土〉)는 그 동안의 歷史的 進展의 罔연한 客觀的 事實을 인정하여 당연히 民人의 私有地로 처리하여야 했을 것이다.

(3) 『經國大典』과 『大典會通』에서 〈自耕無稅〉로 규정된 ㉥ 馬田과 ㉦ 院主田중에 1907년까지 官田으로 남아 있어서 官衙에서 小作料를 징수하던 〈第一種有土驛土〉에 대해서는 두 가지 처리방안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하나는 이 驛土에서 〈賭地權〉과 〈耕作權〉의 이례적인 큰 成長을 기초로하여 賭地權所有者나 耕作農民의 私有地로 처리하는 방법<sup>(28)</sup>이요, 다

(28) 『朝鮮의 保護及 併合』 〈前揭史料〉 p. 177에서는 驛屯土의 小作料가 總生産量의 5分の 1이라고 기

른 하나는 國有地創出을 위하여 이부분의 驛土를 國有地에 編入시키는 처리방법이었다.

日帝는 처음부터 國有地創出을 정책목적으로 했으므로 日帝가 ③의 ㉠ 馬田과 ㉡ 院主田 중에서 당시까지 官田으로 남아있어 官衙에서 低率의 小作料를 징수하던 部分의 <第一種有土驛土>를 國有地에 編入시킨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日帝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日帝統監府는 곧 朝鮮總督府의 所有地로 될 國有地를 강제로 創出하기 위하여 ②의 ㉠ 馬田과 ㉡ 院主田 중에서 당시에는 이미 私田化되어 民人의 私有地로 되어버린 <第二種有土驛土>도 가능한 한 모두 찾아내어 國有地과 編入시켰다. 日帝는 이 목적을 위하여 大韓帝國政府가 1899년(光武 3년)~1903년(光武 7년) 量田事業과 병행하여 內藏院所管土地를 「查檢」하면서 無理하게 民人의 私有地를 驛土에 沈呑시킨 民有地도 國有地에 編入시켰은 뿐만아니라, 당시로부터 250年前에 만들어진 <康熙量案><sup>29)</sup>이라고 부르던 이른바 <舊量案>을 臺帳으로 사용하여 여기에 기록된 馬田과 院主田은 모두 이를 國有地에 編入시켰다. 이것은 日帝가 國有地의 強制的 創出을 위하여 250年以上의 私有地의 發展의 대서와 그 결과를 武力에 기초하여 無理하게 否定하고 民人들로부터 私有地화된 土地를 武力으로 빼앗은 것이었다.

그러나 日帝는 여기에서도 그치지 않았다. 日帝統監府는 15세기 「經國大典」 편성전에 본래부터 民人의 私有地로서 단지 田稅만을 戶籍 대신 驛에 납부하던 처음부터 당시까지 이 두 면에서 보아도 명명백백하게 民人의 私有地인 ㉠의 ㉠ 驛公須田 ㉡ 長田 ㉢ 副長田 ㉣ 急走田 ㉤ 站衙祿田 등의 <無土驛土>를 그것이 「驛」에 地稅를 납부했으며, 그 때문에 官衙에서 <各自收稅>의 <驛土>라고 호칭되기도 했다는 억지에 근거하여 國有地에 強制編入시켜버렸다. 이 때 <舊量案>에 「驛」에 結稅를 납부했다는 기록이 보이거나, 內藏院이 조금이라도 所管했거나, 또는 光武量田때 만든 <新量案>에 內藏院에 驛結稅를 납부했다는 기록이 있는 土地는 民有地임을 알면서도 이를 「驛土」라고 하여 國有地에 編入시켰다. 이것은 만그대로 民有地에 대한 土地強奪이었다. 日帝의 調查資料들은 이 부분에 와서는 그들 스스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一次資料를 거의 남겨놓지 않고 있으나, 「朝鮮土地調查事業」의 實

록하고 있다. 이 때 驛屯土의 小作料額은 일반농지보다 低率이어서 總生産量의 25%~33%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거의 모든 驛土에서 賭地權이 성립되어 있었다. 慎鍾廈「李朝末期의 『賭地權』과 日帝下의 「永小作」의 關係—小作農 賭地權의 所有權으로의 成長과 沒落에 대하여—」『經濟論集』第6卷 第1號, 1967 참조. 따라서 이 때에는 약간의 地價償還을 시키고 모든 驛土를 民有地化 할 수 있는 것이었다.

- (29) <康熙量案>은 康熙年間(1663~1722年)에 만들어진 土地臺帳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로는 1719년(肅宗 45년)에 忠淸·全羅·慶尙道의 下三道를 改量함과 동시에 他道의 종래의 量案을 再整理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國有地調查 당시에는 康熙量案을 「舊量案」으로 부르고 光武年間의 量田事業에 의하여 만들어진 量案을 「新量案」으로 부르면서 모두 保存되어 사용되었다.

務擔當 責任者이었던 和田一郎은 이 사실을 다 감추지 못하고 엉뚱한 자리에서 이 때 私田(民人의 私有地)인 長田・副長田・急走田등을 公田(國有地)으로 變換시켰다고 기호를 써서 조그맣게 표시해 놓았다.<sup>(30)</sup>

日帝統監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의 驛土의 面積보다 數倍나 되는 「驛土」를 소위 「國有地」로 強制創出한 것이었다.

日帝의 이러한 한국농민에 대한 土地強奪政策에 대하여 한국농민으로부터의 紛爭과 反抗 鬭爭이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었다.

日帝의 「朝鮮土地調査事業」의 본격적인 실시 직전인 1909년 日帝가 「驛屯土實地調査」라는 것을 행할 때 「驛土」에 대한 調査를 하고 紛爭을 어느정도 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10년~18년의 土地調査事業 때 일어난 驛土에 대한 土地紛爭은 1,524件 2,098筆로서 國有地紛爭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全國에 걸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 紛爭의 내용을 보면 民人의 私有地로서 地稅만 驛에 납부하였던 民有地를 「驛土」라고 하여 소위 「國有地」에 강제 편입시킨 것이 주 내용이었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慶南 咸陽郡에 있는 한 土地는 원래 民人의 私有地(私田)로서 地稅만 驛에 납부하던 <民結上納>의 것이었는데 甲午更張의 廢驛 때 「驛位土」라고 잘못 판단되어 國有로 편입되었다. 이 土地의 所有者가 政府의 誤判을 지적하여 수사 請願하자 政府는 이를 審査한 후 民有地임을 確認하여 이 土地가 <民有>임의 旨을 내리고 驛의 『紘規』라고 칭하는 冊籍에도 명확히 <民有>라고 記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이 土地를 康熙量案(1719년경에 만들어진 量案)에 驛 또는 馬位라고 記載되었다고 하여 國有地에 編入시켜 버렸다.<sup>(31)</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民人의 私有地로서 地稅만 驛에 납부하던 <無土驛土>(驛公須田・長田・副長田・急走田・站衙祿田등)가 잘못하여 國有地로 간주된 경우에 甲午更張 政府는 이를 是正하여 民人의 私有地로 明白히 還給하여 준 반면에, 日帝의 土地調査事業은 이를 다시 國有地로 강제 편입하였다는 사실이다. 民人의 私有地를 잘못 판단하여 國有地로 編入시킨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獨立된 朝鮮王朝政府의 審査를 거쳐 矯正되어 民有地로 確定된(일단 査定되어 民有地임이 明白한) 土地도 日帝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國有地에 強制編入시킨 곳에 日帝의 國有地 創出을 위한 明確히<意圖的>인 民有地의 國有地 強制編入과 그 실각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驛土는 1筆의 土地面積이 비교적 廣大한 것이 그 특징의 하나이므로, 전국에 걸쳐 2,098

(30) 『朝鮮土地地稅調査報告書』 p. 118의 △表의 項 참조할 것.

(31) 『報告書』 pp. 142~143, 慎鑄慶<前揭論文>의 事例 10. 참조.

筆의 土地紛爭이 있었다는 사실은 驛土紛爭의 面積이 매우 광대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驛土의 대부분에서 土地紛爭이 있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III. 屯土의 國有地化

屯土(또는 屯田)는 驛土보다 더욱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驛土는 驛·站·院의 설치지역이 비교적 명확하고 그에 따라 驛土의 분포가 비교적 정확히 파악되고 있었는데 반하여, 屯土는 官屯田·衙門屯田의 설치가 허용된 이래 中央과 地方의 各種官衙가 經費調達을 위해 民有地의 結稅를 징수하려고 <無土屯土>를 광범위하게 설치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有土屯土> 뿐만 아니라 <無土屯土>가 매우 널리 설치되었고, 그 面積도 驛土보다 훨씬 광대했다. 이 때문에 屯土에는 그 종류가 무수히 많을 뿐 더러 民有地가 매우 다양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屯土를 모두 國有地化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다.

『增補文獻備考』卷第 144, 田賦考 4, 諸田條와 卷第 145, 田賦考 5, 屯田條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屯田의 최초의 設置와 그 변천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屯田은 高麗 顯宗 15년(1024년)에 都兵馬使가 西京畿內 下陰에 部曲民 100여호를 갖고 처음으로 屯田을 설치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 후 주로 軍糧供給의 對策으로서 각지의 軍隊駐屯地 부근의 土地를 開墾하여 兵士들로 하여금 耕作케해서 그 所出을 軍糧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며, 高麗肅宗 4년(1099년)에는 비단 軍隊 뿐만 아니라 州府郡縣에도 각 5結에 한하여 官屯田을 허락하게 되어 屯田이 널리 설치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sup>(32)</sup>

朝鮮王朝에 들어오면, 비단 軍糧을 공급하는 國屯田 뿐만 아니라 官屯田까지 그 설치의 面積規模를 넓히었으며, 『經國大典』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法制化하기에 이르렀다.<sup>(33)</sup>

- ① 主鎮……20結
- ② 巨鎮……80結
- ③ 諸鎮……5結
- ④ 大都護府及牧……各 20結
- ⑤ 都護府及郡……各 16結
- ⑥ 縣及驛……各 12結

또한 『經國大典』은 國屯田과 官屯田은 <自耕無稅>로 하여 國屯田은 軍隊의 兵士가 自耕하여 그 所出을 軍糧에 充당하되 政府에의 地稅는 免稅이며, 官屯田은 官奴婢가 自耕하여

(32) 『增補文獻備考』卷 145, 田賦考 5, 屯田條, (古典刊行會版) 中卷 pp. 667~668 참조.

(33) 『經國大典』戶典 諸田條, <前掲版> 第1卷 pp. 185~186 참조.

그 所出은 地方官衙의 經費에 充당하되 政府에의 地稅는 免稅라고 규정하였다.<sup>(34)</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經國大典』이 위의 규정의 結數를 넘는 剩餘屯田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이다. 『經國大典』은 이를 <數外官屯田>이라고 하여 貧民에게 分給하여 耕作시켜서 一般民人의 私有地의 地稅와 同率의 地稅를 해당 官衙가 負擔하여 經費에 充당할 것을 허용하였다.<sup>(35)</sup> 이 數外官屯田의 許容은 그 후 <無土屯田>의 설정을 통한 屯田의 확대를 가져올 결정적 요인을 내포한 것이었다.

屯田은 壬辰倭亂 이후에 급속히 팽창하게 되었다. 중앙에 訓鍊都監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에 각종 官衙와 鎭을 다수 新設하여 屯田을 設치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官衙들이 그들의 經費의 豐足을 기하기 위하여 定額이외의 다수의 <數外官屯田>을 設치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급격히 팽창한 官屯田의 設치 방법은 朝鮮王朝初期와 같이 官田을 配當하거나 民有地를 買收한 것이 아니라, 民人의 私的 所有地의 地稅徵收權을 分給하거나, 民人의 閒曠地의 開墾地의 地稅徵收權을 갖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壬辰亂 이후의 官屯田의 확장이 주로 <無土屯田>의 팽창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때에는 <軍營>뿐만 아니라 各衙門도 設치되었을때마다 다투어 屯田을 設치하였으므로 <衙門屯田>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屯田이 추가되었다.

朝鮮王朝 全期間에 걸쳐 각종 屯田의 設置가 民有地를 侵蝕하거나 <無土屯田>으로서 民有地의 結稅를 징수하여 中央政府의 稅收入의 減少를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增補文獻備考』 <田賦考>에 비교적 체계있게 年代記順으로 제시되고 있다.<sup>(36)</sup> 壬辰亂 이후 급격히 팽창하는 각종 屯田의 設置와 民有地의 侵蝕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논문이 필요한 작업이다.<sup>(37)</sup>

이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19세기 이후 朝鮮王朝末期의 屯田의 문제에 대해서는 『萬機要覽』 <財用篇>이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sup>(38)</sup> 이 때에는 屯田設置의 弊害는 매우 커서 茶山 丁若鏞도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隱結과 餘結은 해마다 늘기만 하고 官結이니 屯結이니 하는 것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국가에 바치는 原田의 稅額은 날마다 줄고 있으니, 이 일을 광차 어찌할 것인가.」<sup>(39)</sup>

(34~35) 『經國大典』 戶典 諸田條, <前揭版> 第1卷, p. 182 참조.

(36) 『增補文獻備考』 卷 144 田賦考 4, 諸田條<前揭版> 中卷, pp. 656~666 및 卷 145, 四賦考 5, 屯田條<前揭版> 中卷 pp. 667~676의 각종 屯田의 民田侵蝕事例 참조.

(37) 朝鮮後期の 屯田의 내용에 대해서는, 鄭昌烈「朝鮮後期の 屯田에 對하여」 『李海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70 참조.

(38) 『萬機要覽』 <財用篇> 2, 免稅條 참조.

(39) 『牧民心書』 戶典六條 田政, 『丁茶山全書』(文獻編纂委員會版) 下卷, p. 386.

丁若鏞은 屯田設置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심각하게 생각하였다.

「요즈음 屯田은 私人을 살찌게 하고 있으니 나라의 瘠인 것이다. …요즈음은 모든 營의 將臣들이 먼리 떨어진 外地로 돌아가서 屯田이란 명분을 빌어 肥沃한 땅을 사들인 후, 귀족의 작은 아들이나 부잣집의 늙고먹는 폐들을 監官으로 차출하여 監官의 우두머리로 삼아 키를 가부리듯 훑어다가 한 벼 속에 집어 넣으니 적은 자도 천량이고 많은 자는 수천이나 된다. 국토는 날로 쪼그러지게 하고 세입은 날로 쪼그러지게 만드니, 나라의 瘠치고는 이 보다 더 한 것이 없을 것이다. 2백년 이래 各臣 碩輔로서 이를 길이 걱정하고 제 살결을 짝이는 듯 걱정하여 章疏 格言 良謨에 나타난 것을 公車에 그득히 실었으나 屯田의 數는 해마다 늘기만 하니, 이제 이백년 전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미 10배나 더 되는 것이다.」<sup>(40)</sup>

그리하여 19세기에 들어오면 民人의 私有地에서 結稅만을 徵收하는 <無土屯田>이 <有土屯田>보다 더욱 많게 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807년경의 各衙門屯田의 面積을 보면, 다음 제 3표와 같이, 4萬 6,104結 97負 9束에 달하고 있다.<sup>(41)</sup>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종래의 法規에 의한 官屯田 3,394結과 鎭田 339結<sup>(42)</sup>을 합하면 19세기초의 屯田總計는 공식적으로는 4萬 9,837結 97負 9束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屯土가 다수 존재했으므로 19세기초의 실제의 屯土面積은 이 보다 약간 광대했다고 볼 수 있다.

〈表 3〉 十九世紀初 各衙門屯田의 面積表, 1807年頃

順 位	衙 門 名	免 稅 地 面 積
17	議 政 府	69結 96負 1束
7	宗 親 府	792" 4" 3"
9	敦 寧 府	400"
6	忠 勳 府	1,414" 17" 9"
5	耆 老 所	1,561" 75"
1	均 役 廳	23,007" 44" 9"
3	訓 鍊 都 監	3,330" 30" 1"
21	禁 衛 營	18" 25" 3"
24	御 營 廳	7" 86" 2"
13	總 戎 廳	194" 74" 9"
8	成 均 館	531" 10" 1"
19	四 學	39" 19" 1"
2	司 僕 寺	11,687" 7"
11	奉 常 寺	205" 32" 7"
10	司 饗 院	258" 78" 4"

(40) 『牧民心書』戶典六條 田政, 『丁茶山全書』(前掲版) 下卷 p. 387.

(41) 『萬機要覽』〈財用編〉2, 免稅條 참조. 이資料에는 各衙門屯田 免稅地의 道別·衙門別 統計 뿐만 아니라, 衙門別 免稅地의 道別所在面積까지 기록되어 있어 매우 귀중한 統計資料를 전해주고 있다.

(42) 『度支志』〈外篇〉卷 3 版籍司 田制部 1, 〈서울大學校出版部版〉 p. 82 참조.

4	司 圃 署	2,009" 26" 3"
23	內 醫 院	9" 34" 1"
15	尙 衣 院	74" 1" 5"
26	內 瞻 寺	3"
20	繕 工 監	31" 64" 7"
22	水 庫	16" 98" 5"
14	掌 苑 署	111" 6" 9"
12	典 牲 署	204" 51" 7"
18	司 畜 署	51" 45" 7"
25	惠 民 署	3" 41" 6"
16	內 農 圃	72" 24" 9"
合 計		46,104結 97負 9束

資料：『萬機要覽』〈財用篇〉2, 免稅條

〈表 4〉 十九世紀初 八道四都別 衙門屯土 分布表, 1807年頃

順 位	道・都別	屯土免稅地面積	百分比(%)
5	京 畿 道	4,679結 29負 2束	10.16
6	忠 清 道	3,997" 50" 6"	8.67
1	全 羅 道	13,096" 34" 3"	28.41
2	慶 尙 道	9,354" 84" 3"	20.29
4	黃 海 道	5,496" 97" 9"	11.92
7	江 原 道	899" 13" 3"	1.95
3	平 安 道	7,337" 52" 4"	15.91
8	水 原 道	389" 95" 4"	0.84
10	廣 州 府	305" 76" 9"	0.66
11	開 城 府	228" 90"	0.50
9	江 華 府	318" 73" 6"	0.69
合 計		46,104結 97負 9束	100.00

資料：『萬機要覽』〈財用篇〉2, 免稅條에서 작성.

이 때(1807년)의 屯土는, 제 3표와 제 4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官衙別로는 ①均役廳 ② 司僕寺 ③ 訓練都監 ④ 司圃署 ⑤ 耆老所 ⑥ 忠勳府 ⑦ 宗親府...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各衙門의 屯田設置에 따라 매우 많은 종류의 屯田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道別로는 屯土는 ① 全羅道와 ② 慶尙道에 집중되어 있었고, ③ 平安道 ④ 黃海道 ⑤ 京畿道 ⑥ 忠清道 ⑦ 江原道の 순위로 분포되어 있었다.

마침 甲午更張무렵 度支部가 당시까지의 屯田의 種類 起源 個所數 設定方法에 대해 調査해 놓은 것이 1912년기록에 있으므로 이를 통해 1894년경의 屯田實態를 보면 다음과 같다. (43)

(43) 『小作農民=關スル調査』 pp. 2의 18~27.

〈表 5〉 甲午更張前의 屯田의 實態

1. 京各營屯(中央各營門所屬의 屯田)

名稱	起 源	個所數	設 定 方 法
一. 糧餉屯	宣祖 27年(第14世, 距今 318年)訓練都監을 設置하여 軍兵의 服色, 器械及 科布의 費用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킨 것. 糧餉廳屯이라고도 稱함.	194	一. 折受(當初는 荒廢地를 給付하여 起耕시킨 것인지라도 後에는 民有地의 收稅權만을 給與한 것이 많음. 이를 無土屯이라고 말함. 여기서는 모두 折受라고 하기도 함. 以下同) 二. 籍沒田(國事犯者로부터 沒收) 三. 移屬(他官衙로부터 移屬) 四. 買收 五. 築腹(築腹作番한 것)
二. 訓練屯	糧餉屯과 同時에 設置된 것으로서, 訓練都監所屬屯上임. 用途同前.	33	一. 荒蕪地의 折受 二. 買收
三. 御 屯	仁祖 2年(第16世, 距今 288年)御營廳을 設置하고 軍餉其他의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이에 附屬시킨 것. 처음에 御營廳屯이라고 稱함.	15	一. 折 受 二. 買 收
四. 總戎屯	御營廳屯과 同時에 設置된 것으로서 總戎廳 所屬屯上임. 처음에는 總戎廳屯이라고 稱함 用途同前.	42	創設의 時, 長湍, 鎮城의 荒蕪地에 民을 勞賃하여 起墾함. 身役을 免함. 農牛를 給함. 起耕에 手反하여 稅를 徵收한 後에는 移屬, 買收등의 것이 있음.
五. 禁 屯	肅宗 8年(第19世, 距今 230年)禁衛營을 設置하고 이에 附屬시킨 것. 처음에는 禁衛營屯이라고 稱함. 用途 同前	28	一. 買 收 二. 籍沒田
六. 龍虎屯	英祖 31年(第21世, 距今 157年)禁軍廳을 龍虎營이라고 改稱하고 正祖 10年(第22世 距今 126年)屯田을 附屬시킨 것. 用途同前.	18	一. 籍沒田
七. 壯勇屯	正祖 17年(第22世, 距今 119年)壯勇營을 設置하고 이에 附屬시킨 것. 처음에 壯勇營屯이라고 稱함. 用途 同前.	4	一. 折 受 二. 移 屬 三. 買 收
八. 武衛屯	開國 487年 太皇帝 15年(距今 34年)武衛所를 이에 附屬시킨 것. 用途同前.	12	一. 移 屬 二. 買 收 三. 屬公(無主 또는 沒收하여 屬公에 돌림 것.)

2. 外各營屯(地方各軍門의 所屬屯田)

名稱	起 源	個所數	設 定 方 法
一. 監營屯	觀察使의 官廳을 監營이라고 稱하고 監營各庫의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킨 것. <各庫>. 一. 營庫. 二. 補膳庫, 三. 賑恤庫, 四. 補軍庫, 五. 軍需庫,	64	一. 買 收 二. 公錢負債人으로부터 沒入. 三. 觀察使로부터 捐贖買收한 것.



	六. 軍器庫, 七. 養土庫, 八. 瞻學庫, 九. 營繕庫, 十. 兼濟庫, 十一. 紙所庫, 十二. 雇馬庫, 十三. 戶庫, 十四. 工庫, 其他 平壤監營에만 存在하는 것에 勅需庫, 泉流庫(管餉庫) 등이 있음.		四. 人民이 賦役을 免하기 위하여 共同買收하여 納付한 것. 五. 無主田畝을 屬公시킨 것. 六. 富民의 寄附한 것.
二. 兵營屯	國初부터 各道要衝의 地에 兵馬節度使(觀察使兼任)를 두고 道內兵馬를 統率시키면서 軍餉 其他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처음에 兵馬營屯이라고 稱함. 官屯田의 하나로서 經國大典에 「主鎮」이라고 한 것이 이것임. 國初에 20結로써 定式을 삼았으나 後에 定式없이 設置 됨.	29	一. 國有地 二. 荒蕪地의 起墾 三. 買 收 四. 無主屬公 五. 人民의 寄附
三. 水營屯	國初부터 各道沿海要港에 水軍節度使(觀察使兼任)를 두고 舟師를 統率시키면서 그 經費(同前)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처음에 水使營屯이라고 稱함.	26	同 前
四. 各鎮屯	兵馬水軍節度使의 下에 各道要衝의 地에 各鎮營을 設置하고(地方官兼任) 또한 邊塞, 沿海 其他要害의 地에 鎮堡를 設置하여 그 經費(同前)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官屯田의 하나로서 經國大典에 「巨鎮」「諸鎮」이라고 한 것이 이것임. 國初에 定式이 있었으나 後에는 定式없이 設置됨.	132	同 前
五. 統營屯	宣祖朝(第14世)에 慶尙 忠清 全羅 三道의 水軍을 統轄시키기 위하여 慶尙道統營에 統制使를 두었으며, 正祖朝(第22世)에 그 經費를 充當하기 위하여 이에 附屬시킴.	27	正祖朝에 統制使의 下에 瞻餉庫를 두고 每年 別餉耗 米一千石을 請得하여 이로써 買土設屯함
六. 守禦屯	仁祖 4年(第16世, 距今 286年) 廣州 南漢山城을 改築하고 守禦廳을 두어 이에 附屬시킴. 用途 同前.	43	一. 折 受 二. 買 收
七. 防禦屯	仁祖朝에 京畿, 江原, 咸鏡, 平安, 四道에 防禦使(地方官兼任)를 두고 後에 三南地方에도 漸次 設置하여 이에 附屬시킴. 처음에 防禦使營屯이라고 稱함. 用途 同前	2	兵營屯과 같음.
八. 鎮營屯	仁祖朝에 鎮營將을 各道에 두고 討捕使를 兼하게 하면서 이에 附屬시킴. 用途 同前.		未 詳
九. 鎮撫營屯	肅宗 26年(第19世, 距今 213年)江華府에 留守를 두어 鎮撫使라고 稱하고 이에 附屬시킴. 用途 同前	10	一. 買 收 二. 移 屬
十. 管理營屯	肅宗 37年(距今 201年) 開城府에 留守를 두어 管理使라고 稱하고 이에 附屬시킴. 用途 同前	2	未 詳
十一. 總理營屯	正祖 17年(第22世, 距今 119年) 水原府에 留守營을 設置하고 이에 附屬시킴. 華城屯이라고도 稱함. 用途 同前	32	一. 買 收 二. 移 屬 三. 荒蕪地築堰
十二. 鎮禦營屯	開國 497年 太祖 25年(距今 24年)에 春川府를 陞格하여 留守營을 두고 이에 附屬시킴. 用途 同前	2	一. 移屬

3. 京各司屯(各衙門屯田으로서 中央政廳에 附屬된 土地)

名稱	起 源	個所數	設 定 方 法
一. 耆老所屯	耆老所의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耆老所는 國初부터 設置되어 文臣正二品 年七十以上의 人을 許入함. 圖像을 藏置하고 또한 列聖祖의 入社된 御帖을 奉安하는  곳임. 養老의 目的을 위하여 設置된  것이라고 함.	19	王室로부터 下賜됨.
二. 宗親府屯	宗親府 所管屯土임. 宗親府는 列朝御譜와 御眞과를 敬奉하고 王族을 掌하는 官衙로서 國初부터 設置되어 그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9	王室로부터 下賜
三. 議政府屯	議政府所管屯土임. 國初부터 本府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5	國有地下賜
四. 敦寧府屯	敦寧府所管屯土임. 敦寧府는 王室外戚의 府로서 國初부터 設置하고 本府의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7	王室로부터 下賜
五. 忠勳屯	忠勳府 所管屯土임. 忠勳府는 諸功臣의 府로서 國初부터 設置하고 勳臣의 給與其他의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104	一. 國有地 下賜 二. 籍 沒
六. 義禁府屯	義禁府屯土임. 義禁府는 舊平理院과 같이 最高司法官衙로서 國初부터 設置되고 그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3	籍沒(推測에 依함)
七. 成均館屯	成均館所管屯土임. 成均館은 儒學敎誨의  일을 管掌하는  곳으로써 國初부터 設置되어 養賢庫를 두고 儒生의 供饋等을 管掌하며 그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28	一. 國有地下賜 二. 折受(民有地結稅)
八. 奉常寺屯	奉常寺所管屯土임. 奉常寺는 祭祀를 管掌하며, 國初부터 設置되어 祭祀所用의 祭酒等을 供上하고 其他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奉常寺는 그 所屬 屯土의 外에 籍田을 管檢함.	5	
九. 司饗院屯	司饗院所管屯土임. 該院은 御膳及王宮內의 供饋를 管掌함. 本院及分院(京畿道 楊根郡에 있으며, 砂器을 製造하는  곳임)의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3	折受
十. 司僕屯	司僕寺所管屯土임. 司僕寺는 王室用 輿馬廐牧을 管掌하고 全國內 牧場을 管理함. 各牧場內에 牧位田, 他는 牧子位田의 外에 本寺의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設置함.	5	買收 不詳
十一. 軍器屯	軍器寺 所管屯土임. 軍器寺(軍器廳)는 兵器를 製造하며, 國初부터 設置된  것으로서 工役其他의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4	未詳

十二. 掌樂屯	掌樂院 所管屯土임. 該院은 聲律敎閱을 管掌하며, 國初부터 設置된 것으로서 그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1	
十三. 繕工屯	繕工監 草坪임. 繕工監은 土木營建을 管掌하며, 國初부터 設置된 것으로서, 各殿, 宮, 各司의 所用 簾簾을 進排하기 위하여 이에 附屬시킴.	2	蘆草의 產出地를 擇하여 折受한 것임.
十四. 水庫屯	水庫署 屯土임. 水庫署는 藏水을 管掌하며, 國初부터 東西의 두곳에서 水庫를 設置하여 東庫에는 祭享用에 供하는 것을 藏하고 西庫에는 御厨用及百官에 頒賜하는 것을 藏하게 하고, 그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2	折 受
十五. 典牲署屯	典牲署 所管屯土임. 典牲署는 發享所用의 犧牲을 飼養하는 것을 管掌하며, 國初부터 設置되어 仁祖朝(第16世)에 司畜署를 廢하고 이에 附屬시킴으로 부터 雜畜을 포함하여 飼養함. 牛羊等 放牧及 喂養料를 充當하기 위하여 이에 附屬시킴.	2	折 受
十六. 內資屯	內資寺屯임. 內資寺는 御供米, 麵, 醬, 油, 蜜, 蔬, 果等を 管掌하며, 國初부터 設置되어 供上物品을 支應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7	折 受
十七. 內贍屯	內贍寺屯임. 內贍寺는 御供油 醋及 素饌等を 管掌하며, 國初부터 設置되어 그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3	未 詳
十八. 掌苑署屯	掌苑署所管屯土임. 한편으로 東山이라고도 稱함. 掌苑署는 園圃花果를 管掌하며, 國初부터 設置되어 果木花草를 栽培하고 果品을 供上하기 위하여 이에 附屬시킴.	22	京畿各郡에 適當한 土地를 擇하여 設定함. 慶北의 尙州及 平南의 咸從에 栗園있는 것은 例外임.
十九. 司圃屯 (附農圃)	司圃署 所管屯土임. 司圃署는 園圃蔬菜를 管掌하며 國初부터 設置되어 御供菜蔬를 進供하고 其他의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司圃署에서 園軍과 農牛를 두고 耕種시키는 땅을 農圃라고 稱함. 其他의 個所는 菜蔬를 徵收함.	33	折 受
二十. 活人署屯	活人署의 所管屯土임. 京城內病人의 救活을 管掌하며, 國初부터 設置되어 그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4	未 詳
二十一. 惠民署屯	惠民署 藥田임. 惠民署는 醫藥과 民署救活을 管掌하며, 國初부터 設置되어 藥科種植하기 위하여 그 디고 其他의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不詳	不 詳
二十二. 賑恤廳屯 附常平廳屯	成宗 12年(第9世, 距今 430年前) 賑恤廳을 設置하고 京外恤田을 管掌시킴, 賑資 其他의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11	一. 空閒地築堰 二. 買 收

二十三.	英宗 26年(第21世, 距今 162年前) 均役廳을 設置하고 軍布一人 二疋의 內에 一疋을 減하여 代給하기 위하여 設置된 官衙로서 純祖 2年(第23世, 距今 110年前) 그 支出을 補充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17	移屬
二十四.	正祖 3年(第22世, 距今 133年前)奎章閣을 設置하여 列祖의 御製, 御筆, 願命을 敬奉하고 그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15	王室로부터 下賜
二十五.	戶曹 所管 屯土임 各陵, 園, 墓의 祭官의 旅費及 各宮房 祭需의 供給, 其他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12	一. 純祖(第23世)朝에 內需司所管屯田의 內에서 下賜된 것. 二. 廳止宮房으로부터 移屬한것 三. 買收

4. 外各司屯(地方守令의 廩田이 된 土地)

名稱	起	源	個所數	設定方法
一. 各郡官屯	各牧, 府, 郡, 縣의 屯田으로서 經國大典에 大都護府及牧은 20結, 府, 郡은 16結, 縣은 12結로 하여 軍餉에 充當하는 制度가 있으나, 後에는 地方官의 廩田이 됨. 各郡(牧, 府, 縣을 并稱함. 以下 同一함)에는 官屯田의 外에 各庫屯이 있으며 그 名稱은 다음과 같음. 一. 官廳庫屯, 二. 厩馬庫屯, 三. 補民庫屯(地方에 따라서 惠民庫屯 또는 補役庫屯이라고도 稱함). 四. 工房庫屯. 五. 軍器庫屯, 六. 大同庫屯(咸鏡平安兩道 各郡에 在함), 七. 勅庫屯(平安道 各郡에만 在함)	395 그 後 消滅한 것이 약 100	一. 國有地及 荒蕪地의 起耕 二. 各庫屯은 公有地로서 組成함.	
二. 各驛官屯	各察坊道の 所管屯土임. 察坊道는 各驛을 管轄하는 官衙로서 國初부터 設置되어 經國大典의 官屯田에 驛結이라고 한 것이 이것임. 察坊의 俸給에 대신하여 附屬시킴.	5	國有地	
三. 各廳屯	各郡, 鄉廳, 吏廳, 將校廳, 通引廳, 使令廳, 官奴廳等의 屯土임. 各廳의 經費及 在職者 採食을 위하여 附屬시킴.	70	一. 公共財産으로서 買收한것. 二. 觀察使 또는 郡守가 捐糜한 金錢으로서 買收한 것. 三. 沒入 또는 無主의 田土를 屬公시킨 것.	
四. 砲屯	砲軍屯임. 開國 472년에 道郡의 砲手(獵夫)를 抄選하여 別砲軍을 組織하고 그 給料을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75	一. 公有地移屬(廢地한 書院土의 類) 二. 民有地屬公(富民으로부터의 寄附)	
五. 攔護屯 附善衛土屯	各郡의 攔護軍屯임. 攔護軍은 砲軍과 마찬가지로 各郡에 設置한 것으로서 그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4	大概 砲屯과 同一함.	

六. 津夫屯	國初부터 國道에 當하는 渡津에 津船及 津夫(船頭)를 두고 旅行官吏의 涉行에 便케 하였으며, 津夫의 給料을 위하여 이를 附屬시킴. 經國大典에 六渡는 10結 50負, 中渡는 7結, 小渡는 3結 50負라고 한 것이 이것임. 그 位置等은 未詳.	8	國有地
七. 烽臺屯	烽燧基地의 起耕田임. 烽臺는 大概 各郡에 配置됨.	16	國有地
八. 撥所屯	擺撥所屯임. 擺撥所는 宣祖 30年(第14世, 距今約 310年前) 邊報를 遞傳하기 위하여 西北兩道에 騎撥步撥 兩撥站을 設置하고, 騎撥은 每 25里에 1站, 步撥은 每 30里에 1站을 두고, 每站에 撥將及 撥軍을 두었으며, 그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4	未詳
九. 書院土	各書院土임. 書院은 儒林이 先賢의 道德과 功烈을 仰慕하여 院字를 建築하며 遺像을 奉安하여 永年享祀하고 後進을 勸獎하는 곳으로서 그 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킴. 額書院에는 3結에 限하여 免稅함.	39	先賢의 後裔及 儒林의 醜出.
十. 軍田	各軍의 軍根田임. 距今數百年前 各道郡의 富民이 軍役을 免하기 위하여 田畝를 醜出하고 그 收入을 官에 納付하여 身役에 대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性質이 當初는 民有였으나 年을 經過함에 따라서 後에 無主屬公으로 돌아간 것임. 西北三道에 가장 많음.	57	富民의 醜出
十一. 義僧屯	肅宗 37年(第19世, 距今 200年前) 北漢山城을 築하고 各道의 緇徒를 抄選하여 僧軍을 組成함. 이를 義僧이라고 稱함. 英祖朝(第21世)에 番錢을 上納하고 身役을 免하기에 이름. 義僧의 番錢을 上納하기 위하여 이 屯土를 設置한 것이나 軍根田과 同等함.	1	義僧의 醜出

여기서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屯土의 設定方法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었다는 점이다.

(1) 民人의 私的 所有地의 徵稅權의 給與(民結의 折受)

이것은 民人의 私有地로서 종래 戶曹에 納付하던 田稅(地稅)를 屯田을 附屬시키려고 하는 該當官衙에 直納하도록 하여 이를 屯土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無土屯田>이라고도 불리웠다. 이러한 屯田은 그 이름이 비록 <屯田>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民人의 私有地임에는 변함이 없고, 오직 田稅만 屯田附屬官衙에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屯田은 실지 당시에도 명확하게 民人의 私有地로 간주되었다.

屯田의 대부분은 당시 <民結>의 <折受><sup>(44)</sup>라고 부르던 것으로서의 民人의 私有地의 徵稅

(44) 「折受」라는 용어 그 자체에는 ① 收稅地의 折受 뿐만 아니라 ② 有土의 折受 ③ 未墾地의 折受

權을 國家가 戶曹로부터 該當官衙로 給與한 <無土屯田>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2) 新開墾地의 徵稅權의 給與

民人이 閒曠地를 새로 開墾하는 경우, 또는 官衙가 民人을 招致하여 閒曠地를 開墾케 하는 경우, 이 土地는 起墾者(民人)의 私有地가 되어 初期 數年間은 田稅를 戶曹가 아니라 屯田을 附屬시키려고 하는 官衙에 納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土地도 民結의 折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無土屯田>으로 불리었으며, 그 所有權은 民人에게 있고 오직 田稅만 戶曹대신 該當官衙에 바치었다.

이러한 新開墾地의 徵稅權을 屯田을 附屬시키려고 하는 官衙에 給與하는 경우가 民結의 折受 다음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3) 他官衙로부터의 移屬

이것은 國家가 한 官衙로부터 ① 徵稅權 또는 ② 土地 그 자체를 새로 屯田을 附屬시키려고 하는 官衙로 移屬시킨 것을 말한다. 徵稅權을 移屬시킨 경우에는 <無土屯田>이 형성되고, 土地 그 자체를 移屬시킨 경우에는 <有屯屯田>이 설정되었다. (45)

他官衙로부터의 移屬의 경우 <無土屯田>과 <有土屯田> 중에서 어느 쪽의 비율이 높았는가는 분명치 않다.

(4) 給價買土

特定 官衙의 屯田을 새로 設置하여 國家나 地方官衙가 價格을 支給하여 民人으로부터 그들의 私有地를 給價買土함으로써 <有土屯田>으로서의 屯田을 設置하는 경우이다. (46) 이 경우에는 所有權은 民人에 있지 않고 該當官衙나 國家에 있었다.

이 給價買土의 방법은 <有土屯田>을 設定하는 가장 正常的인 方法이었으며, <無土屯田>을 제외하고는 <有土屯田> 실지를 위해서는 가장 널리 행해져었다. 그러나 中央政府 또는 地方官衙의 財政의 餘裕가 없었으므로 이 방법에 의하여 民人으로부터 買收된 土地의 <面積>은 많다고 볼 수는 없다.

(5) 民有地의 屬公

이것은 주로 ① 反逆罪에 관련된 罪人의 土地를 籍沒하거나 ② 租稅公課를 납부하지 않

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折受는 제 5 條의 <糧餉屯>條에서 折受를 설명하여 「當初는 荒廢地를 給付하여 起耕시킨 것일지라도 後에는 民有地의 收稅權을 給與한 것이 많음. 이를 無土屯이라 함. 여기서는 모두 折受라고 하기로 함. 以下同」이라 쓰고 있고, 또 <成均館屯>條에서 折受를 설명하여 「民有地結稅」이라고 쓰고 있는 바와 같이, 折受는 民有地의 收稅權의 折受를 의미하고 있다.

(45) 위의 제 5 條의 屯土設置方法에서 <公田의 下賜> <國有地>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다.

(46) 위의 제 5 條의 屯土設置方法에서 <買收>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다.

고 逃亡한 民人의 所有地를 屬公하여 屯田을 設置한 것이다. 이것은 <有土屯田>이었다. 물론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설치된 屯田의 <面積>은 많지 않았다.

#### (6) 富人의 寄附

이것은 地方의 富人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自己의 私有地를 새로 屯田을 附屬시키려고 하는 官衙에 寄附하여 屯田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이것도 <有土屯田>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에 의하여 설치된 屯田의 <面積>은 극히 작았다.

여기서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屯田에는 <無土屯田>과 <有土屯田>이 있으며, 이 중에서 <無土屯田>은 民人의 私有地이고 <有土屯田>은 일단 民人의 私有地가 아니라고 우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有土屯田>도 甲午更張 무렵에 오면 다시 <第一種>과 <第二種>으로 나누어진다. <第一種有土屯田>은 주로 各官衙의 財政資金으로 給價買土하여 설치된 屯田으로서 그 田稅를 免除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屯田으로부터는 設屯官衙가 耕作者(小作人)로부터 직접 매년 <小作料>를 徵收하였다. <第二種有土屯田>은 民有地에 설치했거나 그 간에 民有地化해 비린 有土屯田으로서 郡邑이 매년 耕作者로부터 小作料가 아니라 <地稅分(賭稅)>를 징수하여 設屯官衙에 轉交하였다.<sup>(47)</sup> 예컨대, 1900년에 訓練都監의 <第二種有土屯田>의 <賭稅>가 들어오지 않아서 畝畝의 일을 하는 民人을 구속했는데 사실은 該郡이 이를 消費하고 訓練都監에 送納하지 않은 것이었다.<sup>(48)</sup>

有土屯田이 甲午更張 때까지에는 상당한 부분이 <民有地化>했다는 사실은 위의 제 5 표에서 國初에 395個所에 설치한 各郡官屯이 甲午更張 때에는 약 100個所가 消滅되었다고 한 곳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甲午更張 때의 <甲午陞摠·乙未查辦>에서도 政府는 <有土屯田>과 <無土屯田>의 面積을 정확히 구분하지는 못했으며, <甲午陞摠·乙未查辦>의 결과에 의하여 겨우 그 개략적 윤곽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참고로 甲午更張 때의 각종 屯田의 總結數는 有土와 無土를 混合하여 다음 제 6 표와 같

(47) 『結戶貨法稅則』 pp. 22~23에서는 <第一種有土免稅結>과 <第二種有土免稅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즉 <第一種有土免稅結>은 官衙가 給價買土하여 그 租稅를 免除해서 小作人으로부터 小作料를 徵收하는 것이오, <第二種有土免稅結>는 官衙에게 民有地를 限定하여 그 稅金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無土免稅結>도 <第二種有土免稅結>과 비슷하게 官衙에게 民有地의 徵收權을 주는 것이지만, 무가지 집에서 差異가 있다고 한다. 첫째, <第二種有土免稅結>은 그 土地를 永久히 變換 아니하나 <無土免稅結>은 대개 3~4년에 그 土地를 變換한다. 둘째, <無土免稅結>은 반드시 官에서 徵稅하여 各官衙에 給與하나 <有土免稅結>은 그렇지 않고 各官衙가 直接 徵收하거나 또는 各邑으로부터 各官衙에 送納케 하거나 하는 것이다.

(48) 『庄土關係請願及證據書類』(奎章閣未整理圖書, Mo. 20835)〈京畿道豐德郡邑內居金澄楫請願書條〉참조.

〈表 6〉「甲午陞摠・乙未査辦」때의 各衙門屯田의 免稅結 面積表(有土無土混合), 1895年頃

衙 門 名	免 稅 地 面 積	衙 門 名	免 稅 地 面 積
宗 親 府	792結 4負 2束	內 農 圃	72結 24負 9束
議 政 府	355〃 88〃 9〃	內 醫 院	9〃 34〃 1〃
忠 勳 府	1,409〃 26〃 5〃	掌 苑 署	111結 6〃 9〃
敦 寧 府	400〃	司 畜 署	51〃 45〃 7〃
耆 老 所	1,561〃 75〃	四 學	39〃 19〃 2〃
成 均 館	531〃 9〃 2〃	惠 民 署	3〃 41〃
司 饗 院	258〃 78〃 4〃	典 性 署	204〃 51〃 7〃
繕 工 監	31〃 64〃 7〃	內 瞻 寺	3〃
尙 衣 院	74〃 1〃 5〃	禁 衛 營	18〃 25〃 3〃
西 求 庫	16〃 98〃 5〃	奉 常 寺	205〃 32〃 7〃
司 圃 署	2,009〃 27〃 3〃	訓 鍊 都 監	3,508〃 91〃 8〃
挽 戎 廳	194〃 74〃 9〃	司 僕 寺	10,887〃 62〃 4〃
御 營 廳	7〃 86〃 2〃	計(田畜並)	22,757結 71負 7束

資料：『結戶貨法稅則』

〈表 7〉「甲午陞摠・乙未査辦」때의 各道別 屯土結數一覽表, 1895年頃

道 別	宮 內 府 所 屬	度 支 部 所 屬	計
京 畿 道	815結 34負 1束	74結 73負 8束	890結 7負 9束
忠 清 道	1,209〃 22〃	38〃 20〃 3〃	1,247〃 42〃 3〃
全 羅 道	3,036〃 81〃 8〃	1,244〃 47〃 6〃	4,281〃 29〃 4〃
慶 尙 道	1,384〃 20〃 3〃	198〃 77〃 9〃	1,582〃 98〃 2〃
黃 海 道	1,067〃 76〃 2〃	32〃 17〃 9〃	1,099〃 94〃 1〃
江 原 道	65〃 64〃	22〃 88〃 1〃	88〃 52〃 1〃
平 安 道	44〃 43〃 2〃	15〃 71〃 1〃	60〃 14〃 3〃
咸 鏡 道	0	27〃 40〃 7〃	27〃 40〃 7〃
合 計	7,623結 41負 6束	1,654結 37負 4束	9,277結 90負 0束

資料：『結戶貨法稅則』

이 22,757結 71負 7束이었다. 이것을 약 88年前인 『萬機要覽』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무려 23,347結 26負 2束이 減少하고 있다. 이것은 均役廳屯田의 廢止와 더불어 상당수의 屯田이 他官衙에 移屬되었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는 屯田의 私田化・民有地化 傾向을 일단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실제로 〈無土屯田〉뿐만 아니라 〈第二種有土屯田〉의 私田化도 19세기에는 더욱 급격히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結戶貨法稅則』에 기록되어 있는 1895年頃의 各道別 屯土面積의 총계는, 제 7 표와 같이, 9,277結 90負에 불과하다. 이것이 이른바 〈甲午陞摠〉과 〈乙未査辦〉에 의한 〈有土屯田〉의



面積의 파악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같은 자료인 『結戶貨法稅則』의 各衙門屯田有土無土 混合免稅地 22,757結 71負 7束과 대비해서 差減하여 보면, 甲午更張 때의 〈無土屯田〉이 약 13,479結 81負 7束이오 〈有土屯田〉이 약 9,277結 90負로서, 〈無土屯田〉對 〈有土屯田〉은 比率는 약 60對 40의 비율로 〈有土屯田〉보다 〈無土屯田〉의 면적이 훨씬 더 넓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無土屯田〉은 모두 다 파악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屯土에 있어서 〈無土屯田〉의 면적이 〈有土屯田〉의 면적보다 넓은 경향은 그 후에도 持續되어 屯土가 軍部와 度支部의 것마저 內藏院所管에 들어간 후(1899년) 日帝의 「國有地」 整理(1907년)와 調査(1909년)때까지도 계속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 이 점은 주목해 둘 필요가 있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光武年間の 量田事業 때 內藏院은 宮室收入을 增大시키기 위해 內藏院所管 土地에 대한 〈查檢〉을 하면서 상당한 면적의 民有私有地를 〈無土屯田〉으로 또는 〈混奪入〉으로 內藏院管轄下에 편입시켰는데, 이러한 稅政이 日帝에 의하여 國有地強制創出에 최대한으로 惡用되었다. 하나의 예로 당시의 『皇城新聞』은 다음과 같이 이 사실을 보도했다.

「元來私有地로 國有에 編入된 者를 還給하라고 請願하는 者가 有한디 就中 光武二年에 李容翹氏가 內藏院卿으로 在하야 皇室의 不足을 補充한다 하고 民有地를 沒收한 者가 最多하나 此는 其時에 何等 代償이 無히 強力으로 奪入한 者이나 呼訴無處인 고로 今日까지 默然沈在하다가 今日을 當하야 民土에 復歸케 하라고 請願하는 者가 最多한디 一朝 公力으로 官有에 編入하야 十餘年來에 何等 障碍가 無히 收租하든 者이나 然이나 其起源을 推考하야 證據가 明確한 者에 對하야는 還給함이 可할마 如此한 이라. 請願者中 七人은 悉皆還給한者 즉 此로 因하야 收入에 影響을 及함이 多함으로 還給準備에 對하야 日下 考關中이라더라.」<sup>(49)</sup>

여기서 우리가 지적해야 할 점은 屯田과 관련된 「國有地」調査 특히 所有權調査는 다음과 같은 客觀的 事實을 인정해야 했다는 것이다.

(1) 屯土 중에서 〈無土屯田〉은 처음부터 民人의 私有地로서 시종하여 왔으므로 田稅를 戶曹에 납부하는가 該當官衙에 납부하는가에 관계없이 당연히 民人의 私有地로 法認하여 처리되어야 했을 것이다.

(2) 有土屯田 중에서 〈第二種有土屯田〉은 民人의 私有地로 만들어졌거나 그동안 〈無土屯田〉과 거의 같이 되어 실질적으로 民人의 私有地로 되었으므로 그 동안의 歷史發展의 客觀的 事實을 인정하여 당연히 民人의 私有地로 法認해서 처리되어야 했을 것이다.<sup>(50)</sup>

(49) 『皇城新聞』(第3152號) 1909年 8月 17日字〈雜報(私有請願)〉.

(50) 〈第二種有土屯田〉에는 混奪入地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名稱은 『屯田』이지만 실제로는 一般農地와 같은 比率의 稅金만을 特定官衙에 내고 있었으므로 農民의 立場에서는 所有權問題가 대두하지 않는 한 실질적 損失을 주지 않았으므로 混奪入된 民田도 〈第二種有土屯田〉으로 남아 끊임없이 紛爭이 일어나고 탄압당하면서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混奪入된 〈第二種有土屯田〉의 所有權은 農民에게 있었음은 물론이다.

(3) 有土屯田 중에서 <第一種有土屯田>에 대해서는 두개의 처리방안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하나는 黃海道 黃州郡의 일부 農民의 요청과 같이 屯土에서의 <賭地權>과 <耕作權>의 이례적인 큰 成長에 기초해서 賭地權所有者나 耕作農民의 私有地로 처리하는 방법과,<sup>(51)</sup> 다른 하나는 國有地 創出을 위하여 이종류의 屯土를 國有地에 編入시키는 처리방법이었다.

日帝의 國有地 調查整理는 처음부터 土地改革의 성격은 없었고 國有地 創出을 정책목적으로 했으므로 日帝가 ③의 <第一種有土屯田>을 國有地에 編入시킨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日帝는 屯土의 國有地化에 있어서도 물론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日帝는 <第二種有土屯田>까지도 <舊量案>을 臺帳으로 하여 이를 모두 찾아내서 國有地에 編入시키었다. 이것은 그동안의 歷史發展의 客觀的 事實을 否認하는 것이었으며, 그에 混奪入된 土地의 대량 존재를 否認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종류의 土地가 몇차례 民人사이에서 轉相賣買되어 完全히 私有地로서의 文書上的 要件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日帝가 아무리 彈壓을 가할지라도 紛爭地로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日帝는 여기에서도 그치지 않았다. 日帝는 본래부터 당시까지 시종일관하여 명명백백한 民人의 私有地였던 <無土屯田>까지 그것이 屯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하여 이를 모두 國有地에 強制編入시켜 버렸다. 이것은 日帝가 武力으로 民人의 私有地를 공공연히 掠奪한 조치이었다.

물론 당시 韓國政府는 <屯土>의 <有土>와 <無土>의 충분히 정확한 면적상의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것은 日帝가 <無土屯田>과 <第二種有土屯田>을 國有地에 強制編入시킨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土地調查는 바로 이러한 混淆를 整理하여 區分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내용을 이루어야 하는것이므로 이 때 당연히 民人의 私有地는 民人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었다.

日帝統監府와 그 후 朝鮮總督府가 이미 私有地化된 <第二種有土屯田>과 처음부터 私有地로 내리던 <無土屯田>을 武力으로 모두 國有地로 強制編入시킨 결과 대규모적인 所有權紛爭이 일어나게 되었다. 屯土紛爭은 日帝의 彈壓을 뚫고 表出된것만도 19,783筆로서 모든 <國有地>紛爭 중에서 屯土紛爭이 가장 많아서 그 비율이 45.9%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거의 모든 <屯土>에서 所有權紛爭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51) 『各道請願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300) <黃海道黃州郡·金斗泳·李德煥·金用汝·張善汝·孫召史條> 참조. 이들은 자기들의 耕作屯田의 拂下를 요청하고 있다. <有土屯田>에 있어서도 農民의 權利가 成長하고 있었으므로 驛土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地價償還을 시키고 모든 <屯土>를 民有地化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事例：1~4

다음과 같은 4곳의 土地는 원래 民有地로서 屯土에 混奪入되어 土地의 所有權은 民人이 갖고 結稅만 官營에 납부하던 土地로서 民人들은 證憑書類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이를 認定지 않고 國有地로 強制編入해 버리고 말았다.<sup>(53)</sup>

〈表 8〉 屯土紛爭事例表

土地所在地	請願人	事由	請願人提出書類	實存署書類
仁川郡 永宗島	安 中 植	前防禦營被奪田番還付件	仁川裁判所供取書 1通. 永宗島秋收冊 1冊. 仁川裁判所 請願書(指令附) 1通. 前調査局에 請願(指令附) 1通.	關係記錄 없음
永宗龍流島	奇 忠 燮	鎮義翼土廳에 被奪	量案 1冊 對慶善宮請願書 1通	
仁 川 郡	金 洪 九	前砲軍設置時被奪田番還付件	量案 1冊	
豐 德 郡	徐 憲	同 上	文 記 31枚 立 旨 2枚 袷 記 1枚	

事例：5

玄風郡 番谷面 中島는 본래 洛東江의 浦落泥生地로서 中島各洞民이 開墾하여 그 稅를 처음에는 官房에 納付해 오다가 그 후 砲軍이 設置되자 稅를 包軍에 납부해 오던 民有地로서의 無土屯土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이 土地가 包軍과 관계 있으므로 「屯土」라고 하여 國有地에 強制編入해 버리고 말았다.<sup>(54)</sup>

屯土紛爭에 대한 몇가지 事例를 보면 지난번에 든 9個의 事例<sup>(52)</sup> 외에, 다음의 몇가지 다른 事例에서도 모두 民有地를 國有地에 強制編入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었다.

日帝의 國有地占有政策은 이상 본 바와 같이 屯土의 國有地化과정에서 民有地인 ① 無土屯田과 ② 第二種有土屯田까지도 부당하게 國有地에 強制編入함으로써 農民의 土地를 掠奪하여 소위 國有地를 실재보다 훨씬 擴大하여 強制創出하였다. 그리고 이 때 國有地로 強制編入된 民人의 私有地인 〈無土屯田〉와 〈第二種有土屯田〉의 면적은 본래의 官有地(따라서 日帝가 필요하면 國有地化할 수 있는 土地)의 면적 보다 훨씬 더 광대했음은 甲午更張 무렵의 〈無土屯田〉對 〈有土屯田〉의 對比가 정부에 의하여 〈無土屯田〉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약 60 對 40의 比率이었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알수 있는 것이다.

(52) 愼鏞廈〈前揭論文〉의 事例 11~19 참조.

(53) 「屯土關係請願書送付ノ件」『往復書類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0610)의 1910年 6月 3日條〈漢城財務監督局長의 臨時財產整局長에게의 報告〉참조.

(54) 「玄風郡中島ノ件」『往復書類綴』참조.

#### IV. 宮庄土의 國有地化

宮庄土는 <宮房田>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서 宮中經理機關인 內需司와 王室의 일부 또는 王室로부터 出閣한 宮房(大君, 公主, 王子, 翁主, 後宮 등)의 經費에 應당하기 위하여 설정한 土地 및 收稅地를 總칭하는 것이다.

朝鮮王朝末期까지 남아있었던 宮房은 內需司와 壽進宮, 明禮宮, 於姦宮, 龍洞宮, 毓祥宮, 宣禧宮, 景祐宮, 慶善宮, 英親王宮 등 九宮이었다.<sup>(55)</sup> 이 중에서 內需司만이 王室의 經理를 管掌하는 公式機關이었고, 毓祥宮·宣禧宮·景祐宮은 國王의 私親을 奉享하는 <私廟>이었으며, 그 밖의 宮房은 모두 大君 王子 後宮 등의 私有財産을 管理하는 <私庫>이었다.

宮庄土는 기본적으로 壬辰倭亂 이후의 産物이다. 그 이전에는 內需司만이 國初부터 존재하였고, 宮房의 經費는 <職田制>에 의하여 규정된 收稅權이 분급되었을 뿐이었다. 職田制가 무너지고 宣祖 때에 壬辰亂 이후 王子·公主들이 다수 出閣하게 되자 王이 그 生活保障을 위하여 陳荒地 및 禮賓寺의 土地를 下賜하거나 民有地의 收稅權을 下賜함으로써 출현하게 되었다고 한다.<sup>(56)</sup>

일단 宮庄土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자 그 후 宮房들은 비단 王의 <賜牌>을 받고 賜與된 것뿐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陳荒地와 民有地를 <立案折受>하여 王의 允許를 얻거나 民田을 闖入하면서 급격히 <有土>와 <無土>의 宮庄土를 팽창시켜 나갔다. 朝鮮王朝後期에 있어서 宮庄土가 팽창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法規도 몇 차례 바뀌어 독립논문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sup>(57)</sup>

이미 18세기 말까지는 宮庄土의 팽창은 일단 고착화되어서 상당히 큰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 19세기 초인 1807년경의 공식으로 파악된 宮庄土의 면적을 보면, 다음 제 9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有土宮庄土가 11,380結 47負, 無土宮庄土가 26,547結 13負 1束, 合計 32,927結 60負 1束에 달하고 있다.<sup>(58)</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미 19세기 초에 宮庄土에

(55) 度支部『臨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1911, pp. 15~20 및 p. 39 참조.

(56) 『增補文獻備考』卷144, 田賦考 4, 諸田條<前掲版> 中卷. p. 660 참조.

(57) 『續大典』戶典 諸田條, 『朝鮮王朝法典集』(前掲版) 第3卷 pp. 141~143에는 各宮房의 等級에 따르는 宮庄土免稅地定額이 規定되어 있으나, 그대로 遵守되었는지는 의문이다. 『大典通編』戶典 諸田條, 『朝鮮王朝法典集』(前掲版) 第3卷 p. 50에는 「各宮房無土免稅 導掌差送之規 並革罷每結 米則二十三斗 錢則七兩六錢七分 自該邑直納本曹 出給宮房」이라 하여 各宮房의 無土宮庄土免稅地의 結稅徵收는 各宮房이 직접 導掌을 파송하여 收稅하지 못하도록 하고 該邑이 이를 徵收하여 戶曹에 납부하면 戶曹가 이를 各宮房에 出給하도록 하고, 그 結稅額도 定額化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規定도 19세기에 들어오면 제대로 遵守된 것 같지 않다.

(58) 『萬機要覽』財用篇 2, 免稅條, 참조.

있어서 〈無土宮庄土〉가 〈有土宮庄土〉보다 2.3배나 더 광대하다는 사실이다.

이 무렵(1807년경)의 宮庄土의 道別分布를 보면, 제10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有土〉 〈無土〉를 막론하고 ① 全羅道(34.21%)에 압도적으로 集中되어 있고<sup>(59)</sup> ② 다음으로 忠淸道(17.27%), 京畿道(15.66%), 慶尙道(14.67%), 黃海道(14.96%)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③ 江源道(1.84%)와 平安道(0.98%)에는 그 면적이 비교적 작았다.

이로부터 약 88년 후인 〈甲午陸摠·乙未査辦〉때의 宮庄土의 면적을 보면, 〈有土宮庄土〉가

〈표 9〉 十九世紀初 各宮房 有土無土別 宮庄土面積, 1807年頃

宮	房	有	土	無	土	合	計
內	需	司	1,678結 47負 0束	2,118結 69負 9束	3,797結 16負 9束		
壽	進	宮	2,068 " 82 " 8 "	1,635 " 1 " 4 "	3,703 " 84 " 2 "		
毓	祥	宮	478 " 88 " 1 "	1,394 " 86 " 1 "	1,873 " 74 " 2 "		
宜	禮	宮	940 " 13 " 7 "	2,463 " 45 " 7 "	3,403 " 59 " 4 "		
延	祐	宮	20 " 0 " 0 "	0 "	20 " 0 " 0 "		
於	義	宮	407 " 10 " 0 "	1,831 " 99 " 8 "	2,239 " 9 " 8 "		
明	禮	宮	1,062 " 46 " 4 "	685 " 89 " 7 "	1,748 " 36 " 1 "		
龍	洞	宮	623 " 15 " 6 "	1,797 " 9 " 6 "	2,420 " 25 " 2 "		
嘉	順	宮	13 " 87 " 3 "	1,000 " 0 " 0 "	1,013 " 87 " 3 "		
慶	壽	宮	16 " 55 " 9 "	910 " 0 " 0 "	926 " 55 " 9 "		
宜	嬪	宮	325 " 18 " 6 "	1,042 " 85 " 7 "	1,368 " 4 " 3 "		
鎮	安	大君房	0 "	5 " 0 " 0 "	5 " 0 " 0 "		
益	安	大君房	0 "	9 " 0 " 0 "	9 " 0 " 0 "		
慶	順	君主房	47 " 4 " 0 "	4 " 0 " 0 "	51 " 4 " 0 "		
讓	寧	大君房	9 " 0 " 0 "	0 "	9 " 0 " 0 "		
孝	寧	大君房	0 "	9 " 0 " 0 "	9 " 0 " 0 "		
月	山	大君房	9 " 0 " 0 "	0 "	9 " 0 " 0 "		
德	興	大院君房	70 " 60 " 4 "	0 "	70 " 60 " 4 "		
光	海	君房	452 " 68 " 6 "	43 " 17 " 7 "	409 " 50 " 9 "		
貞	明	公主房	122 " 92 " 9 "	0 "	122 " 92 " 9 "		
貞	安	翁主房	16 " 30 " 0 "	0 "	16 " 30 " 0 "		
慶	平	君房	62 " 62 " 9 "	35 " 0 " 0 "	97 " 62 " 9 "		
寧	城	君房	35 " 20 " 7 "	6 " 37 " 0 "	41 " 57 " 7 "		
貞	和	翁主房	2 " 87 " 9 "	96 " 50 " 6 "	99 " 38 " 5 "		
麟	平	大君房	421 " 97 " 6 "	187 " 11 " 1 "	609 " 8 " 7 "		
慶	淑	君主房	1 " 28 " 2 "	198 " 72 " 5 "	200 " 0 " 7 "		
慶	善	宮房	1 " 0 " 0 "	49 " 0 " 0 "	50 " 0 " 0 "		

(59) 이 사실은 〈1894年農民革命〉이 全羅道에서 발발한 諸要因의 하나를 시사해주는 것으로서 주목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

崇善宮房	93" 20" 8"	100" 0" 0"	193" 20" 8"
淑安公主房	5" 17" 8"	144" 82" 5"	150" 0" 3"
淑明公主房	101" 42" 2"	42" 56" 8"	143" 98" 0"
淑徽公主房	145" 17" 0"	0"	145" 17" 0"
淑靜公主房	81" 35" 8"	69" 30" 2"	150" 66" 0"
淑敬公主房	25" 36" 5"	124" 56" 3"	149" 92" 8"
淑寧翁主房	145" 4" 7"	54" 95" 0"	199" 99" 7"
明安公主房	161" 56" 2"	15" 40" 2"	176" 96" 4"
寧寶房	5" 27" 7"	10" 0" 0"	15" 27" 7"
貴人房	82" 79" 3"	723" 28" 4"	806" 7" 7"
延齡君房	428" 14" 1"	356" 30" 5"	784" 44" 6"
和順翁主房	189" 42" 3"	1,025" 86" 1"	1,215" 28" 4"
和平翁主房	415" 98" 4"	846" 87" 7"	1,262" 86" 1"
和協翁主房	142" 76" 2"	1,500" 21" 4"	1,642" 97" 6"
和柔翁主房	19" 73" 9"	780" 19" 2"	799" 93" 1"
和寧翁主房	95" 27" 7"	1,151" 21" 6"	1,246" 49" 3"
和吉翁主房	27" 31" 5"	1,075" 40" 3"	1,102" 74" 8"
清衍翁主房	427" 24" 3"	673" 1" 2"	1,100" 25" 5"
清璿翁主房	244" 64" 3"	974" 8" 0"	1,218" 72" 3"
貞瑾翁主房	45" 61" 3"	29" 97" 7"	75" 59" 0"
清瑾縣主房	0"	100" 0" 0"	100" 0" 0"
恩信宮房	0"	60" 0" 0"	60" 0" 0"
淑善翁主房	0"	800" 0" 0"	800" 0" 0"
慶恩府院君房	13" 37" 0"	0"	13" 37" 0"
岑城府夫人房	6" 51" 6"	0"	6" 51" 6"
合計	11,380結 47負 0束	26,547結 13負 1束	37,927結 60負 1束

資料：『萬機要覽』〈財用篇〉2，免稅條

〈丑 10〉 十九世紀初 宮庄土の 道別 面積，1807年頃

道 別	有 土	無 土	合 計	合計百分比(%)
京畿道	1,320結 37負 6束	4,619結 59負 4束	5,939結 97負 0束	15.66
忠清道	902" 58" 5"	5,651" 11" 5"	6,553" 70" 0"	17.27
全羅道	4,488" 27" 5"	8,484" 83" 0"	12,973" 10" 5"	34.21
慶尙道	1,441" 15" 2"	4,123" 32" 3"	5,564" 47" 5"	14.67
黃海道	2,395" 71" 2"	3,276" 24" 0"	5,671" 95" 2"	14.96
江原道	304" 48" 6"	392" 2" 9"	696" 51" 5"	1.84
平安道	370" 72" 9"	0"	370" 72" 9"	0.98
水原府	72" 22" 2"	0"	72" 22" 2"	0.19
廣州府	67" 10" 0"	0"	67" 10" 0"	0.18
開城府	4" 84" 5"	0"	4" 84" 5"	0.01

江 華 府	12〃 98〃 8〃	0〃	12〃 98〃 8〃	0.03
合 計	11,380結 47負 0束	26,547結 13負 1束	37,927結 60負 1束	100.00

資料 : 『萬機要覽』 財用篇 2, 免稅條에서 작성.

7,126結 56負 8束,<sup>(60)</sup> 〈無土宮庄土〉가 21,474結 91負 7束,<sup>(61)</sup> 合計 28,601結 48負 5束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때에도 여전히 〈無土宮庄土〉가 〈有土宮庄土〉보다 약 3배나 더 광대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앞서 본 약 88년전(1807년경)의 宮庄土面積과 비교해 보면 〈有土宮庄土〉가 4,253結 90負 2束 減少하고, 〈無土宮庄土〉가 5,072結 21負 4束 減少하여, 合計 9,326結 11負 6束 減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1) 宮庄土의 面積은 〈有土〉 〈無土〉를 막론하고 19세기에는 減少했으며, 그 減少率은 相對적으로 〈有土宮庄土〉가 〈無土宮庄土〉보다 더 높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有土宮庄土〉에서도 私有地化가 進展되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당시 모든 免稅地에서 〈有土〉와 〈無土〉의 精確한 區分이 불가능했는데, 宮庄土에서는 이것이 가능했으며, 日帝의 「朝鮮土地調査事業」의 시기에 가장 가까운 시기의 〈有土〉와 〈無土〉의 區分을 가능케 해주는 統計는 甲午陞摠・乙未查辦때의 〈宮庄土〉의 통계라는 사실이다. 甲午更張 무렵 宮庄土의 〈有土〉對 〈無土〉의 比率은 24.92% 對 75.08%이었다.<sup>(62)</sup>

(3) 甲午更張 무렵에는 一兩六宮과 몇개의 大君・公主房만이 〈有土宮庄土〉가 계속 존재하고 있고 나머지 많은 大君・公主房의 〈有土宮庄土〉는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 〈有土宮庄土〉가 정부나 다른 官衙에 移屬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宮房의 子孫의 私有地로 轉化되어 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無土宮庄土〉는 여전히 각 宮房에 널리 분급되어 甲午更張 때까지 내려온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各宮房이 〈有土宮庄土〉는 일부 私有地化한 반면에 〈無土宮庄土〉의 收稅權은 계속 완강하게 유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새로 出閣하여 형성되는 宮房의 宮庄土 확보는 19세기에 들어와서는 거의 전적으로 소규모의 〈無土宮庄土〉에 의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때 이미 宮庄土의 팽창이

(60) 『結戶貨法稅則』 p. 17 참조.

(61) 『結戶貨法稅則』 p. 20 참조.

(62) 이 比率은 日帝가 「朝鮮土地調査事業」에 의하여 소위 「國有地」로 強制編入한 土地에 있어서의 〈有土〉 〈無土〉의 比率을 間接적으로 推定할 수 있는 가장 近接한 時期의 精確한 唯一의 資料라고 말할 수 있다.

〈丑 11〉「甲午陞摠・乙未查辦」叫의 各宮房有土免稅結(有土宮庄土)

宮 房	結 負	宮 房	結 負
內 需 司	1,691結 98負 3束	益 安 大 君 房	5結 0負 0束
壽 寺 利	377" 12" 8"	讓 寧 大 君 房	9" 0" 0"
壽 進 宮	1,989" 36" 4"	德 興 大 院 君 房	70" 60" 4"
壽 寺 利	30" 31" 9"	貞 明 公 主 房	40" 0" 0"
於 義 宮	399" 13" 4"	麟 平 大 君 房	50" 0" 0"
明 禮 宮	1,046" 13" 9"	延 齡 君 房	304" 52" 7"
明 寺 利	9" 5" 9"	和 平 翁 主 房	19" 59" 0"
龍 洞 宮	581" 76" 7"	清 璿 翁 主 房	8" 96" 7"
毓 祥 宮	455" 27" 1"	淑 善 翁 主 房	24" 80" 7"
景 祐 宮	13" 87" 3"	計(田番並)	7,126結 56負 8束

資料：『結戶貨法稅則』

〈丑 12〉「甲午陞摠・乙未查辦」叫의 各宮房無土免稅結(無土宮庄土)

宮 房	結 負	宮 房	結 負
內 需 司	1,253結 77負 6束	全 溪 大 院 君 房	940結 0負 0束
壽 進 宮	1,215" 47" 5"	君 房	800" 0" 0"
於 義 宮	1,908" 0" 0"	義 和 君 房	800" 0" 0"
明 禮 宮	1,435" 89" 7"	明 溫 公 主 房	739" 0" 0"
龍 洞 宮	1,904" 9" 6"	福 溫 公 主 房	739" 0" 0"
毓 祥 宮	1,345" 85" 9"	德 溫 公 主 房	739" 0" 0"
宜 禮 宮	100" 0" 0"	和 協 翁 主 房	200" 0" 0"
景 祐 宮	1,000" 0" 0"	和 柔 翁 主 房	150" 0" 0"
順 和 宮	900" 0" 0"	和 寧 翁 主 房	200" 0" 0"
宜 嬪 房	100" 0" 0"	和 吉 翁 主 房	200" 0" 0"
鄭 房	829" 51" 5"	淑 善 翁 主 房	670" 65" 1"
鎮 安 大 君 房	3" 0" 0"	永 惠 翁 主 房	800" 0" 0"
益 安 大 君 房	4" 0" 0"	清 衍 郡 主 房	200" 0" 0"
孝 寧 大 君 房	7" 58" 0"	清 璿 郡 主 房	191" 3" 3"
光 海 君 房	275" 3" 5"	清 璿 縣 主 房	100" 0" 0"
慶 善 君 房	49" 0" 0"	朴 貴 人 房	600" 0" 0"
延 齡 君 房	38" 0" 0"	趙 貴 人 房	50" 0" 0"
義 安 大 君 房	5" 0" 0"	朴 淑 儀 房	100" 0" 0"
恩 彥 君 房	400" 0" 0"	方 淑 儀 房	50" 0" 0"
恩 全 君 房	320" 0" 0"	范 淑 儀 房	50" 0" 0"
恩 信 君 房	60" 0" 0"	計	21,474結 91負 7束

資料：『結戶貨法稅則』



일정의 한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며, 더 이상의 팽창은 바로 國家財政에 대한 압박과 農民收奪의 강화를 의미하는 단계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甲午更張 때 宮庄土에 대해서는 <有土> <無土>를 막론하고 종래의 <免稅>를 폐지하고 一般農地와 마찬가지로 田稅를 징수하였으므로 의견상으로는 <無土宮庄土>는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有土宮庄土>만 남게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甲午更張의 추진자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추정했던 것 같다.<sup>(63)</sup> 또한 日帝의 調査資料도 甲午更張에 의하여 모든 <免稅地>가 폐지됨으로써 <無土宮庄土>도 자연히 폐지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sup>(64)</sup>

그러나 실제로는 甲午更張 이후에도 <無土宮庄土>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다. <光武査檢>의 資料임에 틀림이 없는 『各宮房折受無土免稅結總數』라는 책에는 各宮房別 <無土宮庄土>의 結稅收入을 상세히 기록하고 끝에서 다음과 같이 합계를 내고있다.<sup>(65)</sup>

① 計 1萬 3,527結 58負內

① 錢結 6,761結 58負, 代錢 5萬 1,388兩(每結 7兩 6錢)

② 米結 6,766結, 代錢 13萬 5,320兩(每結 20兩)

② 合計錢 18萬 6,708兩

위의 자료에 의거하면, 甲午更張 후 光武年間에도 약 13,527結 58負의 <無土宮庄土>가 존재한 것으로 증명된다. 이것을 甲午更張때의 <無土宮庄土>의 면적과 비교하면 7,899結 11負 7束이 減少된 것이다. 이것은 현저한 減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光武年間에 아직도 13,527結 58負의 매우 광대한 면적의 <無土宮庄土>가 殘存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日帝가 國有地의 創出과 調査를 하기 直前의 宮庄土의 실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 (1) 無土宮庄土

(63) 『結戶貨法稅則』 p. 23 참조.

(64)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 p. 148에서, 和田一郎은 「이로서 開國五百四年의 稅制整理에 當하여 所謂 無土稅에 屬하는 部分은 모두 陸總되어 一般民有地와 함께 結稅의 徵收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土地에 대한 司宮의 收租權은 自然 消滅하여 有土免稅地에 投托地 混奪入地만 殘存하는 結果가 되었으며, 그리하여 이들의 庄土는 帝室有가 되어 宮內府에 歸屬되었다」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事實과 一致하지 않는 주장이다. 이것은 日帝가 소위 「帝室財產整理」를 시작한 1907년까지 아직도 광대하게 남아 있던 <無土宮庄土>를 國有地에 編入한 事實을 糊塗하고 合理化하기 위하여 주장한 기록에 불과하다. 和田은 日帝의 소위 「國有財產整理」에도 참가하고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總務課長이었으며 日帝의 「朝鮮土地調査事業」의 實務下手責任者로서, 본질적으로 「朝鮮土地調査事業」의 植民地의 掠奪性을 糊塗하고 合理化하기 위하여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를 썼다. 이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史料批判과 다른 자료와의 交叉檢證을 요한다.

(65) 『各宮房折受無土免稅結總數』(奎章閣未整理圖書, No. 16612) 참조. 이 資料에는 甲午更張 때의 <甲午陸摠·乙未査辦>의 자료인 『結戶貨法稅則』에도 없는 <雲峴宮>등 몇개의 그 후의 새로운 宮房들이 追加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서 光武年間에 작성된 資料임이 틀림 없으며, <光武量田·査檢>에 整理하여 기록해 둔 資料임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宮房이 土地 그 자체의 所有權을 갖는 것이 아니라 民有地의 收稅權만을 가진 宮庄土이다. 이 경우에는 農民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私有地의 田稅를 政府 대신 私宮房에 납부할 뿐 기본적으로 일반농지와 다름이 없었으며, 오직 宮房이 權勢가 커서 田稅를 약간 과다하게 부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그 負擔의 輕重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다. <無土宮庄土>는 다시 이를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輪廻無土宮庄土

이것은 <輪廻結>이라고도 불리는 民人의 私有地로서 宮房의 收稅地를 固定시키지 않고 一定期間(3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移定하는 無土宮庄土이다.<sup>(66)</sup> 예컨대 3년의 期限을 定하여 그간은 茂長郡의 民有地에서 宮房이 田稅를 징수하다가, 그 후에는 古阜郡의 民有地에서 해당의 田稅를 징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sup>(67)</sup>

② 非輪廻無土宮庄土

이것은 民人의 私有地로서 원래 輪廻하도록된 <輪廻結>이 실제로는 輪廻하지 않고 一定의 區域內의 土地에 대하여 所定の 輪廻期限을 넘어서 宮房이 收稅權을 가졌던 실제로 非輪廻되었던 無土宮庄土이다.<sup>(68)</sup> 이 때 그 土地는 民人의 私有地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規則적으로 輪廻하지 못하고 <비교적> 長期間 固定되어 田稅를 宮房에 납부하여 오다가 宮房의 濫徵과 수탈을 받아오는 동안에 <無土> <有土>의 구별이 모호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非輪廻無土宮庄土>에는 民有地로서 宮房에 <混雜入>된 土地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無土宮庄土>는 <免稅免賦>이었으며, 이를 <無土免稅> 또는 <元結免稅>라고 불렀다. 宮房이 農民으로부터 징수하는 田稅는 일반농지와 마찬가지로 1結에 物納이면 米 23斗, 金納이면, 錢 7兩 6錢 7分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sup>(69)</sup> 실제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宮房의 과건지의 각종 약탈이 부가되었으므로 농민들은 비록 輪廻無土宮庄土일지라도 이에 포함되는 것을 극력 기피하였다.

(2) 有土宮庄土

(66) 『萬機要覽』〈財用篇〉3, 免稅式條에는, 輪廻宮庄土의 期限을 처음에는 3年으로 정했다가 正祖朝에 다시 10年으로 정했다고 한다.  
 (67) 『大典通編』의 規定에 의하여 이 <輪廻無土宮庄土>의 結稅는 宮房이 직접 징수하지 않고 該邑이 징수하여 戶曹을 통해서 各宮房에 出給된 것으로 보인다.  
 (68) 「無土宮庄土」는 본질적으로 <移定>할 수 있는 것이어서 <輪廻>가 특징이었으며 원칙적으로 <非輪廻>의 無土宮庄土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資料에는 規則적으로 所定期限후에 輪廻하지 못하고 長期間 <無土宮庄土>의 상태를 持續하는 것이 존재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별도로 구분할 것이다.  
 (69) 『大典通編』 田賦 諸田條, 『朝鮮王朝法典集』(前掲版) 第3卷, p. 50 참조.

이것은 〈永作宮屯〉이라고도 불리던 것으로서 그 土地所有權의 귀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개의 종류로 나누어 볼수 있다.

① 第一種有土宮庄土

이것은 宮房이 실제로 土地所有權을 갖고 있는 土地이다. 즉 본래의 의미의 〈永作宮屯〉이다. 따라서 이 土地에서는 宮房이 농민으로부터 田稅를 징수한 것이 아니라 小作料를 징수하였다. 그 小作料는 法典에는 1負에 2斗(1結에 200斗)라 하여 일반농지의 小作料와 대체로 일치하도록 설정하고 있다.<sup>(70)</sup> 그러나 이것은 上限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그 土地 설정의 과정의 차이에 따라 小作料와 小作制度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sup>(71)</sup>

〈第一種有土宮庄土〉의 설정방법의 종류를 보면 ① 陳荒地를 開墾한 것(즉 宮房이 王·政府로부터 陳荒地·未墾地의 所有權을 미리 賜與 또는 立案折受하여 農民으로 하여금 開墾케 해서 有土宮庄土를 설치한 것) ② 各營衙門의 屯田등을 移屬한 것 ③ 民有地를 給買價土한 것 ④ 相續者가 없는 內需司奴의 私有地를 屬公한 것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일반농지와 마찬가지로의 것은 ③과 ④뿐이었으며 이러한 종류의 土地의 面積은 第一種有土宮庄土 중에서도 매우 작았다. ②의 경우에는 그 대부분이 이미 〈賭地權〉이 설정된 土地이어서 小作料는 일반 농지 보다 현저히 절하되었다. 〈第一種有土宮庄土〉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①의 경우에는 起墾者가 開墾에 막대한 資金과 勞動力을 投入했으므로 대체로 〈賭地權〉이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小作料率이 총생산량의 25% 정도였다.<sup>(72)</sup>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는 起墾에의 資本과 勞動力의 投入의 정도에 따라 田稅 정도만을 小作料로 납부하는 토지도 많이 있었다.<sup>(73)</sup>

〈第一種有土宮庄土〉의 所有權은 공식적으로 宮房이 갖고 있었고 宮房의 산하에서 이 土地의 支配權과 管理權을 갖인 民人은 〈導掌〉이라고 불리었다. 導掌은 스스로 耕作者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거의 모두가 그 土地를 농민에게 小作 주었으며, 자기 밑에 솜팠을 거느린 것이 보통이었다. 이 경우에 導掌은 中間地主가 되는 일이 많았으며, 농민들 사이에서는 導掌은 때때로 〈中畝主〉라고 불리기도 하였다.<sup>(74)</sup> 이러한 경우에 導掌은 小作農民으로부터 일반 소작지에서와 같은 비율의 小作料를 수취하여 그 중 일부를 宮房에 납부하고

(70) 『續大典』戶典, 諸田條, 『朝鮮王朝法典集』(前掲版) pp. 141~142 「宮家免稅田……一結收稅 無過米二十三斗 永作宮屯處 則每負收稅租二斗 船馬價雜備 皆出其中。」 참조.

(71) 金容燮〈司宮庄土의 佃戶經濟〉『亞細亞研究』第19號, 1965 및 安秉珪『朝鮮近代經濟史研究』1975, 日本 東京, 中の 第二章 〈宮房田〉 참조.

(72) 愼鍾廈「李朝末期의 『賭地權』과 日帝下의 「永小作」의 關係—小作農賭地權의 成長과 沒落에 대하여—」『經濟論集』第6卷 第1號, 1967. 참조.

(73) 『參考書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701), 〈導掌賠償金算出表〉中の 宮上納額 참조.

(74)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 1932 參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 425 참조.

그 나머지를 자기가 수취하였다.

㉔ 第二種有土宮庄土

이것은 형식상 〈有土宮庄土〉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民人의 私有地가 되어 〈無土宮庄土〉와 마찬가지로 〈田稅〉만 宮房에 납부하고 있던 土地이다. 이러한 종류의 土地의 형성과정은 ① 원래 〈無土宮庄土〉이던 것이 宮房 또는 官衙의 錯誤로 〈有土〉宮庄土로 잘못 처리되어 내더오게 된 것 ② 宮房의 誘引에 끌리어 民人이 자기의 土地를 宮房에 〈獻納〉〈寄附〉하고 그 耕作人으로서 田稅를 납부하여오던 것 ③ 甲午更張 때 〈非輪廻無土宮庄土〉의 所有者가 宮房의 요청에 눌리어 更張후 〈有土宮庄土〉로 移入한 것 등이었다. 〈第二種有土宮庄土〉는 비록 〈有土〉의 이름이 있으나 그 내용은 실제로 〈無土宮庄土〉로서 民人의 私有地였고, 그 負擔도 〈無土宮庄土〉와 마찬가지로 宮房에 〈田稅〉를 납부하는 것이었다.<sup>(75)</sup> 이 종류의 宮庄土의 면적은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다.

(3) 投托地

이것은 民人이 자기의 私有地를 宮房에 〈投托〉한 것으로서 外觀상 宮庄土로 假裝되어 있는 土地를 말한다. 이러한 형위는 법률에 의해 禁止되어 있었으므로 처음 〈投托〉은 宮房과 民人 사이에 隱密히 행해졌으나 뒤에 오면 公然히 행해지게 되었다. 宮房에의 〈投托〉이 盛行하게 된 배경을 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요인부터 차례로 들면 다음과 같다.<sup>(76)</sup>

① 賦役의 회피등 負擔을 輕減하기 위한 것.<sup>(77)</sup>

宮庄土는 실제로 〈免稅免賦〉이었으므로 宮房과 民人 사이에 賦役의 負擔 부분을 면제하고 田稅의 負擔 부분만 징수하기로 內約되면 이것은 宮房의 收入을 늘리어 宮房에게도 利益이 되고 民人에게는 避役이 되어 民人의 負擔도 輕減되었으므로 용이하게 〈投托〉이 이루어졌다. 이 때 宮房 쪽에서 주도적으로 民人을 誘引한 경우와 民人이 自發的으로 投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權勢있는 宮房이 결국 宮稅를 賦役의 負擔 부분까지 포함하는 수준으로 올렸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殘弱한 民人이 強豪와 官吏의 侵奪을 避하기 위한 것.<sup>(78)</sup>

농민이 地方官吏의 不法的 侵奪이나 強豪의 侵奪을 받지 않기 위하여 宮房에 자기의 私

(75) 『參考書綴』〈投托導掌及混奪入地還付並=其換算表·別表〉 및 〈混奪入地還給一覽表〉 참조.

(76) 『朝鮮土地稅制度調查報告書』 pp. 131~134 참조. 이 자료는 投托의 發生原因을 대체로 모두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 남아있는 事例들을 참조하여 약간 內容과 比重을 수정하였다.

(77) 『各道請願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300) 및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026) 第2冊, 〈鄭學潤條〉 참조.

(78) 『京畿訴狀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787) 〈閔泳瓚條〉〈韓致圭條〉 및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667) 〈下鍾獻條〉 참조.

有地를 스스로 投托하고 導掌이 되는 경우이다. 특히 農民이 無主閒曠地나 未墾地를 開墾하였을 경우에 이것은 그 起墾者의 私有地가 되지만 만일 強豪나 地方官吏가 閒曠地·未墾地의 所有權 그 자체를 주장하고 나올 때에는 이것은 殘弱한 농민이 對抗하기에 벅차게 될 수 있었다. 이 때 強豪·官吏의 侵奪을 우려하는 閒曠地·未墾地를 開墾한 農民은 新開墾地를 官房에 投托하여 그 侵奪을 미리 避하려고 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投托된 新開墾地가 실제로 民人의 私有地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③ 強豪者가 不法으로 占有된 土地의 合法的 所有를 假托하기 위한 것.<sup>(79)</sup>

이것은 強豪나 地方官吏가 民人이 이미 新開墾한 土地가 포함된 未墾地를 開墾한다하여 이를 侵奪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民人의 私有地를 侵奪하게 되는 경우 國法의 制裁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土地를 官房에 投托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強豪나 地方官이 종래의 官有田을 私占化할 때에도 종종 이용되었다. 어느 경우에도 모두 國法의 적용이 官房에 대해서는 解弛하게 되는 약점을 이용한 것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④ 官房에 관련되었던 民人이 安全을 위하여 投托한 것.<sup>(80)</sup>

이것은 內需司奴 또는 宮奴로서 私有地를 가지고 있었거나(官奴는 朝鮮朝末期에는 私有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公奴婢革罷(1801년) 및 私奴婢革罷(1894년)후 私有地를 갖게된 司宮奴 출신의 民人이나 導掌이 安全을 위하여 옛 身分의 緣故가 있는 官房에 자기의 土地를 投托하는 경우이다. 이때 導掌이 된 土地所有者는 대부분 옛 身分 때문에 그 후 <投托導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⑤ 官房에 관련된 宮家系가 緣故로 投托한 것.<sup>(81)</sup>

이것은 宮家の 後孫 또는 王家의 外戚이 원래 宮家로 부터 相續 받은 土地나 또는 자기 私有地의 일부를 緣故가 있는 官房에 投托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대체로 자기의 필요보다 緣故있는 宮家の 收益을 증대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다. 導掌을 정리할 때의 명단에 의외로 宮家系統과 王室의 外戚의 이름이 종종 보이는 것은 주로 이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⑥ 民人이 子孫의 土地轉賣를 막고 土地遺産을 永久히 保障하기 위하여 投托한 것.<sup>(82)</sup>

이것은 民人이 자기의 子孫 중에서 浪費者가 있는 경우에 父祖의 遺産을 蕩盡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土地賣買의 절차가 복잡한 官房에 자기의 私有地를 投托함으로써 자기의 土地

(79) 『書類閱覽及抄寫申請書』(奎章閣未整理圖書 No. 20731) <閱泳翊條> 참조.

(80) 『各道請願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300) <金仁極·金貞鉉條> 및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295) <閱裕植條> 참조.

(81)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0723) <閱泳翊條> 참조.

(82) 『各道請願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300) <崔榮旭條> 및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669) <金重演條> 참조.

遺産을 子子孫孫에 傳하려고 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의문이다.

위의 모든 경우에 명백한 것은, 投托地의 發生의 原因이 이상과 같이 다양하나 할지라도, 宮庄土종의 投托地는 모두 民人의 私用地였다는 사실이다.

(4) 混奪入地

이것은 民人의 私用地를 宮房이나 官吏가 意圖의으로 또는 錯誤로 인하여 民人의 意思에 反해서 宮庄土에 編入시킨 토지이다. 混奪入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몇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sup>(83)</sup>

① 內需司 및 宮房의 宮庄土 설치 과정에서 宮房과 官吏의 侵奪이나 錯誤로 인하여 民人의 私用地가 宮庄土에 混入된 것.

② 無主閒曠地·未墾地를 民人이 起墾하여 新開墾地로서의 民人의 私用地가 신설된 것을 宮房이 意圖의으로 후에 그 閒曠地·陳荒地·未墾地를 立案授受하여 民田을 奪入시킨 것.

③ 宮房의 權勢를 이용하여 殘民의 私用地를 公然인히 侵奪하여 奪入시킨 것.

混奪入地에는 따라서 <無土>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光武查檢>에 混奪入이 심하게 자행되어 <無土>宮庄土가 다시 약간 증가했으며, <無土>의 경우에는 民人이 그 混奪入의 更正을 요구하는 紛爭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宮房이나 內藏院은 (國家와 宮房에 납부하는) 田稅의 同率을 들어 처음부터 民人의 요구를 적대로 접수하지도 않은 채 韓末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宮房田 중의 混奪入地는 모든 경우에 民人의 私用地였음은 처음부터 自明한 것이었다.

朝鮮王朝末期의 宮庄土의 實相이 이러하였으므로 日帝의 土地調査는 그들의 原則대로 따르더라도 당연히 다음과 같이 되었어야 할 것이었다.

첫째, 無土宮庄土, 有土宮庄土 중의 <第二種有土宮庄土>, 投托地, 混奪入地 등은 民人의 私用地임이 분명하므로 이것은 당연히 그 실제의 所有자인 民人의 私用地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었다.

둘째, 九宮의 宮庄土는 宮房의 私有的財產이 분명하므로 이것은 그 宮房의 相續人, 또는 後孫이 있는 경우에는 <皇室財產管理局>의 私用地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었다.

셋째, 內需司의 宮庄土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現狀의 皇室을 尊嚴하여 厚待하려면 <皇室財產管理局>의 私用地로 처리해야 했으며, 皇室을 尊重하지 않으려면 內需寺庄土를 細分하여 官有的 性格을 갖는 것은 國有地로 編入하고 宮房所有의 性격을 갖는 것은 <皇室財產

(83) 『往復書類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0610) <全羅北道茂朱郡居民陳炳義請願書>, 『參考書綴』 <投托導學及混奪入地還付並=其換算表·別表>, 『導學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667) <安定根條> 및 『各道謂願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300) <金志根條> 등 참고.

管理局)의 私有地로 구분하여 分給해야 할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日帝의 「國有地」調査整理와 日帝朝鮮總督府의 土地調査는 「驛土」과 「屯土」에 서와는 달리 「宮庄土」에서는 원칙적으로 <有土>와 <無土>를 구분하여 <無土宮庄土>는 民有地로 간주한 것처럼 때때로 보크하고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甲午更張 때 이미 <無土宮庄土>는 廢止되었다고 假定하고 國有地調査 당시에는 <有土宮庄土>만이 남아있었다고 前提했기 때문에 이것은 事實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前提 때문에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無土宮庄土>들이 모두 <有土宮庄土>로 日帝에 의하여 처리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甲午更張後 光武年間에도 <無土宮庄土>는 減少되기는 했으나 매우 광대하게 남아 있었다.<sup>(84)</sup> 日帝의 宮庄土에 대한 조사처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특징을 가진 것이었다.

첫째, 日帝는 甲午更張 때 朝鮮政府가 <無土宮庄土>도 田稅를 政府에 납부하도록 조치함으로써 消滅된 宮庄土를 <無土宮庄土>로 간주하고, 당시 (1907년)까지 消滅되지 않은 宮庄土는 모두 <有土宮庄土>로 간주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甲午更張>의 改革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無土宮庄土>는 모두 消滅되었다는 것을 前提로 한 것인데, 실제로 모두 消滅된 것은 <輪廻無土宮庄土>의 一部이고 <非輪廻無土宮庄土>는 모두 消滅되지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많은 부분이 1907년 日帝의 「國有地」整理 調査 때까지 존속하였다.

日帝는 國有地의 強制創出을 위해서 당시까지 소멸되지 않은 <輪廻無土宮庄土>의 一部와 <非輪廻無土宮庄土>의 전부를 이것이 民人의 私有地임에도 불구하고, 빼앗아 國有地에 強制編入시켜 버린 것이었다.<sup>(85)</sup>

둘째, <有土宮庄土> 중에서 <第一種>은 <有土>이었으나, <第二種>은 <非輪廻無土宮庄土>와 다름없는 民人의 私有地였다. 日帝는 그 차이를 잘 알면서도 이를 區分하지 않고 <第二種有土宮庄土>를 한국 農民으로부터 빼앗아 國有地에 強制編入시켜 버렸다.

日帝의 각종 調查報告書는 1907년 당시 남아있던 宮庄土등의 <有土> <無土>의 구분이 불가능하였다고 때때로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1907년 당시 서울의 册床 위에 앉아서 알기는 불가능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1909년의 소위 「驛屯土實地調查」와 1910년 이후의 「朝鮮土地調査事業」의 과정에서도 그 區分을 할 수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土地調

(84) 註 65의 『各宮房折受無土免稅結總數』(奎章閣未整理圖書, No. 16612) 참조.

(85) 日帝가 宮庄土 조사처리에 있어서 <有土>와 <無土>를 구분했다고한 公言은 甲午更張 때 <無土> 宮庄土는 모두 廢止되었고 남은 것은 모두 <有土> 宮庄土라고 前提했기 때문에 전혀 空言이었다. 이러한 事實과 다른 報告는 日帝가 <無土宮庄土>를 소위 「國有地」에 強制編入한 事實을 糊塗하고 合理化하기 위하여 事後에 만든 虛偽報告임을 거듭 강조하여 지적해두는 바이다.

查)는 바로 이러한 區分을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당시로부터 過去 수년간의 田稅率과 農民側 또는 證人들의 說明만 들어도 충분히 區分이 가능한 것이었다.

세제, 一司九宮의 宮庄土는 皇室을 尊重하는 경우에는 모두 皇室의 私有財産으로 처리되어야 했으며, 皇室을 尊重치 않는 경우에는 內需司의 宮庄土만이 문제되어야 했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九宮의 宮庄土는 그것이 皇室의 私有財産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므로, 耕作者에게 所有權을 주지 않는 한 당연히 이를 皇室의 私有財産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었다. 당시 日帝의 土地調査 實務者까지도 이러한 宮庄土들이 皇室의 私有財産이었음을 인정하였다.<sup>(86)</sup>

日帝도 1906년경에는 이들 宮庄土를 皇室의 私有財産으로 處理할 가능성의 징후를 보이었다. 그러나 1907년 6월 <헤이그密使事件>이 있고 그 國權恢復運動의 資金의 일부가 高宗의 私庫에서 나간 것이 밝혀지자 高宗을 讓位시킴과 동시에 이를 구신로 하여 皇室의 私有財産을 대폭 빼앗아 國有地에 編入시키는 정책이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집행되었다.<sup>(87)</sup>

日帝는 內需司의 庄土는 모두 일괄적으로 國有地에 編入시켜 버렸다.

또한 日帝는 九宮의 宮庄土에 대해서는 7宮(壽進宮 明禮宮 於義宮 龍洞宮 毓祥宮 宣禧宮 景祐宮)의 宮庄土는 모두 이를 國有地에 編入시켜 버렸다. 慶善宮과 英親王宮 소속의 宮庄土는 그것이 現皇인 純宗과 그 太子인 英親王의 庄土이므로 이를 다음 제13표와 같이 그 약 31%를 떼어 國有로 編入시켜 버리고 69%를 慶善宮과 英親王宮의 私有地로 처리하였다가 日帝強占後인 1910년 9월에 31%의 國有地에 編入한 土地를 다시 돌려주었다.<sup>(88)</sup>

慶善宮·英親王宮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日帝가 特定 宮房의 宮庄土를 任意로 國有地와 皇室의 私有地로 나누어 처리했다가, 國有地로 編入한 宮庄土를 뒤에 다시 皇室의 私有地로 되돌려 주는 事例에서처럼, 日帝의 소위 宮庄土의 調査整理는 어떠한 法律的 基準이나 客觀的 基準에 의거하여 실행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日帝의 植民地政策上的

<표 13> 慶善宮·英親王宮庄土의 國有·私有比率

區 分	番 反 別	田 反 別	合 計 面 積	百 分 比
國有地化한 것	567町 8700	52町 6700	620町 5400	31.0
私有를 承認한 것	892" 5700	488" 3400	1,380" 9100	69.0
合 計	1,460町 4400	541町 0100	2,001町 4500	100.0

資料 : 『臨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 p.39에서 작성

(86)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 pp. 579~580 참조.

(87) 『朝鮮의 保護及 併合』 <前掲史料> 第3卷 pp. 167~168 참조. 여기서는 民間의 國權恢復運動家들이 宮中の 勢力家와 提携하여 排日의 暴動을 하므로 宮中の 禍亂의 根源이라고 하여 그 經濟的 基盤을 除去하기 위한 日帝의 政策이 설명되고 있다.

(88) 『臨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 pp. 39~40 참조.



目的에 따라 恣意로 처리한 것이었다.

宮庄土와 관련하여 日帝가 皇室의 私有財産을 대폭 빼앗아서 日帝朝鮮總督府의 所有가 됨을 의미하는 「國有地」로 編入시킨 사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네째, 日帝는 投托地가 民人의 私有地임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明白한 <文書>上的 證明이 있는 경우에 단 한장하여 이를 인정한다고 함으로써 수많은 民人의 投托地를 빼앗아 「國有地」에 編入시켜 버렸다.

원래 投托은 隱密히 시작된 것이고, 후에 公公연히 行될 때에도 여전히 <不法>인 것이기 때문에 <文書>를 갖추어 두기는 어리운 일이었다. 따라서 宮庄土 안에는 民人의 私有地가 매우 相대하게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證憑書類를 갖출 수 없어서 私有地임을 認定받지 못하였다. 또한 證憑書類를 갖추는 경우에도 日帝가 이를 不充分하다거나 認定해 주지 않으면 投托地는 「國有地」로 強制編入되었다. 심지어 日帝는 投托文券을 一次調査한다고 거두어 간 다음 돌려주지 않고 證憑書類不足으로 처리하여 投托地를 빼앗은 경우도 있었다.<sup>(89)</sup>

(가) 많은 投托地가 證憑書類가 없거나, 不充分하거나, 認定될 수 없다고 日帝에 의하여 결정되어 國有地에 強制編入되었다. 몇가지 남아 있는 事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事例：1** 黃海道 白川郡 童海面등에 있는 畓 8石 15斗落과 田 2日 3息 9合耕은 본래 民有地로서 農民이 勢力家의 侵奪을 두려워하여 金貴人房에 投托했던 것을 丙申年(1776年) 다시 內需司에 移托하여 100여년간 轉相買賣 되어오던 土地로서 柳漢秀의 父 柳遠聲이 光緒 14年(1888年) 10월에 李泰鎮으로부터 이를 買得하여 그의 아들 柳漢秀에 相續한 土地로서 證憑書類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이를 否認하고 內需司庄土로 처리해 버리고 말았다.<sup>(90)</sup>

**事例：2** 金洛汝는 忠淸南道 沔川郡 非芳面등에 있는 畓 1石 17斗落, 垜 6斗落, 畓 7斗落, 畓 16斗落, 畓 8斗落, 畓 6斗落, 畓 12斗落, 5升落, 田 14斗落 5升落의 所有主로서 이 土地를 毓祥宮에 投托했었으며, 그에 대한 相대한 證憑書類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이를 인정치 않고 毓祥宮庄土로 처리해 버리고 말았다.<sup>(91)</sup>

**事例：3** 忠淸南道 溫陽郡 邑內面등에 있는 畓 5石 17斗落과 田 1石 5斗落, 및 燕岐郡 北一面등에 있는 畓 1石 2斗落과 田 9斗落은 金重演의 5代祖 金富潤이 李興門으로부터 買得하여 壽進宮에 投托한 土地로서 金이 證憑書類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이를 否認하고 壽進宮庄土로 처리해 버리고 말았다.<sup>(92)</sup>

**事例：4** 慶尙南道 昆陽郡 兩浦面에 있는 畓 341斗落과 田 2斗 3升落은 원래 延祚君時에 林之茂가 自費로 開墾하여 內需司에 投托한 土地로서 轉相買賣되어 오다가 趙永鎬가 給價買得한 것으로서 證憑書類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內需司庄土로 처리해 버리고

(89) 『京畿訴狀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787) <南陽郡長安面, 金永圭條> 참조.

(90) 『各道請願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301) 및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669) <柳漢秀條> 참조.

(91)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669) <金洛汝代 劉雲老條> 참조.

(92)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669) <金重演條> 참조.

말았다. (93)

事例：5 咸存淳은 黃海道 延安郡 東部面동에 있는 畓 15石 11斗落과 田 10日 4息耕의 所有主로서 이를 壽進宮에 投托하여 매년 55兩과 牽 8石 4斗를 投托料로서 納付하던 投托地인데 謄憑書類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壽進宮庄土로 처리해 버리고 말았다. (94)

事例：6 崔萬植은 黃海道 信川郡 東部面に 있는 畓 31石 18斗落과 田 2日耕의 所有主로서 이 土地는 光武 10년 4월에 崔哲愚로부터 給價買得한 土地인데 그 前부터 於義宮에 投托되어 있던 土地로서 民有地임이 분명하며, 謄憑書類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이 중에서 畓 35石 11斗落은 따로 떼어 於義宮庄土로 처리해 버리고 말았다. (95)

(나) 民人이 일부의 土地를 投托하고 다른 일부의 土地는 投托하지 않았을 때에는 投托地가 宮庄土로 처리된 경우에 다른 私有地까지 宮庄土로 처리되어 國有地에 強制編入되었다. 이것은 投托地를 國有地化함과 동시에 다른 私有地도 國有地에 混奪入시킨 것이었다. (96)

事例：7 金時鉉은 黃海道 長淵郡 秋花面に 있는 土地를 開墾하여 景福宮에 投托하였고, 碑淵坪에 있는 畓 23石 8斗 6升落과 田 6日耕, 貸田 3石 9斗落은 投托한 일이 없는 土地인데 帝室財産整理 때 金은 이 사실을 증명하는 謄憑書類와 證人의 證言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이를 否認하고 投托地 뿐만 아니라 投托한 일이 없는 土地까지 景福宮 소속의 宮庄土로 편입시키고 金은 作導掌으로 결정해 버리고 말았다. (97)

事例：8 卞鍾獻은 黃海道 黃州郡 靑龍面に 있는(甲)畓 38石落과 廬田 2坂 및 (乙)畓 13石落의 所有主인데 甲畓은 원래 民有地로서 結稅와 雜役을 減하고 勢力家の 侵奪을 免하기 위하여 親孃房에 投托하였다가 內需司에 轉托한 民有地이며, 乙畓은 甲畓에 인접해있는 荒無地를 光武 11년 7월에 宮內府令에 따라 作畜한 것인데 日帝는 이를 모두 內需司庄土로 처리하고 卞은 作導掌으로 결정해 버리고 말았다. (98)

事例：9 閔益植은 黃海道 鳳山郡 西湖面に 있는 畓 18石 9斗 9升落, 田 16日 52耕 貸 14作의 所有主인데 이 土地가 모두 投托地였을 뿐 아니라, 이 중에서 畓 4石落과 田 1日半息耕은 閔의 私有地로서 內需司에 投托한 것이고, 原因은 수백년전부터 私相賣買되어 오던 것을 癸卯年에 朴來勲으로부터 買得한 것으로 賣買文記 등 謄憑書類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이를 投托地와 함께 宣禧宮庄土로 결정하여 버리고 말았다. (99)

事例：10 劉秉堯은 江原道 原州郡 板梯面に 있는 於義宮소속의 宮庄土의 導掌으로서 宮庄土 외에 私有地 5石 9斗落을 買得하여 이를 宮房에 함께 投托하였다. 劉는 帝室財産整理 때에 위의 사실의 謄憑書類를 제출하였으나, 日帝는 이를 부인하고 그의 私有地도 宮庄土에 포함시켜 버렸다. (100)

(93) 『各道請願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301) 및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669) <鎔永鎬條> 참조.

(94)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668) <咸存淳條> 참조.

(95) 『各道請願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301) 및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667) <崔萬植條> 참조.

(96) 따라서 이것은 日帝가 종래의 宮庄土에 포함된 民人의 <投托地>를 國有地에 強制編入시켰을 뿐 아니라, 종래 특히 內需司가 때때로 행해오던 바와 같이 日帝가 國有地 調査整理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民人의 私有地를 다시 『國有地』에 <混奪入>시킨 것이었다.

(97) 『各道請願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301) 및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019) 第1冊, <金時鉉條> 참조.

(98) 『各道請願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301) 및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667) <卞鍾獻條> 참조.

(99) 『各道請願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301) 및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295) <閔益植條> 참조.

(100)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031) <劉秉堯條> 참조.

(다) 日帝는 民人의 投托地임이 分明한 土地로서 證憑書類를 제출하여 이를 否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證憑書類를 「不充分」하다거나 「否認」하고 그 대신 그 土地의 所有主를 각종 「導掌」으로 인정 하였다. 이 경우에는 日帝는 약간의 導掌賠償金을 支給하고 投托地를 國有地에 強制編入할 수 있었다.

**事例 : 11** 閔泳翹은 黃海道 信川郡 加串面 및 文化郡 葛山面 소재 畓 287石落 및 田 2石 1斗 3升 1合落과 長淵郡 秋花面 및 龍湖面 소재 畓 2石 3斗 5升落, 田 15斗 7升落, 袋 2升落을 光緒 16年 (1890年) 辛泰元·辛肯錫등으로부터 買得하여 이를 壽進宮과 於義宮에 投托하였다. 이 土地는 閔泳翹의 私有地이므로 帝室財産整理때에 閔泳翹을 대신하여 (閔泳翹은 이 때 上海에 亡命中이었다) 閔泳翹母가 辯護士까지 고용하여 證憑書類와 地圖까지 첨부하면서 이를 投托地인 民有地이므로 還給하여 줄 것을 請願하였으나, 日帝는 證憑書類 不足을 구실로 閔을 1910년 3월 8일 導掌으로 결정하고 말았다(『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0723)에는 閔泳翹이 제출한 방대한 證憑書類의 寫本이 綴해져 있는 비, 小作人까지 合勢하여 閔泳翹母와 日帝와의 紛爭이 긴기간 지속되었으나 결국 日帝는 이를 官庄土로 처리하고 閔泳翹을 단순히 導掌으로 결정하였다. <sup>(101)</sup>

**事例 : 12** 郭柱鉉은 黃海道 松禾郡 龍門面の 畓 1石 5斗落 및 田 16斗落과 文化郡 葦川面の 畓 1石 13斗 5升落 및 田 2石 8斗落의 所有主로서 당시로부터 약 100여년전에 이를 壽進宮에 投托하여 매년 葉坪 35兩錢을 宮稅로 納付해 있는데, 帝室財産整理 때에 郭은 證憑書類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證憑書類의 부족을 내세워 이를 否認하고 郭을 導掌으로 결정하여 버리고 말았다. <sup>(102)</sup>

**事例 : 13** 朴基弘은 黃海道 安岳郡 文化面·龍門面과 段栗郡 東面に 있는 畓 13石 7斗落과 田 7斗落의 所有主인 바, 이 土地는 원래 民有地로 賣買文卷이 自在한 것을 壽進宮에 投托하였던 土地로서 證憑書類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壽進宮文書에도 「無土」라는 2字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作導掌으로 처리하여 버리고 말았다. <sup>(104)</sup>

**事例 : 14** 申泰僎는 黃海道 延安郡 龍川面 弓下面에 있는 畓 17石 3斗落의 所有主인데 이 토지는 당시로부터 35年前 乙亥에 內下淸錢 1萬으로 給價買土하여 龍洞宮에 投托하였던 토지로서 證憑書類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이를 부인하고 이를 龍洞宮庄土로 처리하고 申을 導掌의 役을한 者로 처리해 버리고 말았다. <sup>(104)</sup>

**事例 : 15** 李元植은 黃海道 長淵郡 海晏面에 있는 畓 69石 15斗 2升落과 田 1斗 5升落의 所有主로서 이 토지는 金始豐으로부터 買得한 投托地인데 帝室財産整理 때 李는 그 證憑書類를 완벽하게 제출하고 實地調査員까지 그 土地가 投托地임이 分明하다고 報告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최종결정단계에서 이를 內需司 소속의 官庄土로 편입하고 李를 단순한 導掌으로 처리해 버리고 말았다. <sup>(105)</sup>

**事例 : 16** 李鵬來은 黃海道 長淵郡 侯山面에 있는 畓 36石 19斗 6升落과 田 12石 6斗 2升落의 所有主로서 이 토지는 景祐宮에 投托되어 轉相賣買되어 오던 土地인데 帝室財産整理 때 李는 그 證憑書類를 제출하였으나 日帝는 證憑書類 不足이라고 하여 이를 景祐宮 소속의 官庄土로 편입시켜 버리고 李를 作導掌으로 결정해 버리고 말았다. <sup>(106)</sup>

(101) 『書類閱覽及抄寫申請書』(奎章閣未整理圖書, No. 20731) <閔泳翹條> 및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0723) 및 『各道請願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301) <閔泳翹條> 참조.

(102)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031) <郭柱鉉條> 참조.

(103)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667) 및 『各道請願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301) <朴基弘條> 참조.

(104)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668) 및 『各道請願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301) <申泰僎條> 참조.

(105) 『各道請願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031) 및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019) 第1冊, <李元植條> 참조.

(106)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019) 第1冊, <李鵬來條> 참조.

**事例 : 17** 金圭錫은 黃海道 海州郡 新面등에 있는 畓 15石 19斗落과 田 21日 1朝耕의 所有主로서 이 土地는 於義宮에 投托된 土地를 당시로부터 21년전인 乙丑 1월에 李進士로부터 買得한 것으로 證憑書類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이를 인정치 않고 이 토지를 於義宮庄土로 처리하고 金을 導掌으로만 인정하여 처리해 버리고 말았다.<sup>(107)</sup>

**事例 : 18** 朴明煥은 忠清南道 鴻山郡 郡內面등에 있는 畓 831斗升落과 田 45斗 5升落 및 恩津郡 金浦面에 있는 畓 123斗 7升落의 所有主로서 이를 壽進宮에 投托하여 累代 傳承해 오던 것을 證憑書類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토지를 壽進宮庄土로 처리하고 朴을 導掌으로 처리해 버리고 말았다.<sup>(108)</sup>

**事例 : 19** 金秉燾는 平安南道 平壤郡 古順和面, 稔串面, 大同江面, 江西郡 務次串面에 있는 畓 35斗落의 所有主인데 이 土地는 金의 6代祖가 金知事로부터 5,500兩을 給價하고 買得한 私有地로서 內需司에 投托했던 토지이므로 金이 그 證憑書類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이를 內需司庄土라고 처리하고 金을 單순한 導掌으로 결정해 버리고 말았다.<sup>(109)</sup>

**事例 : 20** 康駿鎬는 黃海道 黃州郡 靑龍面 大也島에 있는 畓 2石 5斗落과 田 畓 6日耕과 芦田 72坂의 所有主인데 이 土地는 원래 明溫公主房으로부터 200兩을 給價하고 未墾地는 구입해서 開墾하여 私有地로서 轉買하여 오다가 內需司에 投托한 土地로서 證憑書類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康을 納價導掌으로 처리하여 버리고 말았다.<sup>(110)</sup>

日帝가 民人으로부터 投托地를 얼마나 빼앗아 國有地에 強制編入했는가 라는 사실은 日帝가 「導掌」을 처리할 때 인정한 〈投托導掌〉과 日帝가 投托地일을 최종단계까지 否認할 때 부분이 投托民으로 구성된 〈否認導掌〉을 對比해 보면 그 일단을 알 수 있다.

〈표 14〉 投托導掌과 否認導掌의 對比

區 分	導 掌 數	件 數	比 率(%)	
			導 掌 數	件 數
投 托 導 掌	8	21	9.3	15.6
否 認 導 掌	78	114	90.7	84.4
計	86	135	100.0	100.0

資料 : 『臨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에서 작성

즉, 日帝에 의하여 〈投托導掌〉이라고 인정된 것은 8名 21件에 불과하고, 導掌으로 認定할 수 없다고 否認된 것이 78名 114件이었다.<sup>(111)</sup> 이것은 導掌數의 비율로 보면 제14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投托導掌〉으로 인정된 것이 오직 9.3%, 〈否認導掌〉으로 처리된 것이 90.7%이었다.<sup>(112)</sup> 즉 投托地는 거의 日帝에 의하여 認定받지 못하고 그 거의 모두가 國

(107)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668) 〈金圭錫條〉 참조.

(108)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669) 〈朴明燦條〉 참조.

(109)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026) 第1冊 〈金秉燾條〉 참조.

(110) 『各道請願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300) 및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667) 〈康駿鎬條〉 참조.

(111) 『臨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 pp. 75~77 및 pp. 118~127 참조.

(112) 〈奎章閣未整理圖書〉로 보관되어있는 수많은 「導掌決定案」과 「請願書綴」에서 보면 〈否認導掌〉의

有地에 強制編入된 것이었다.

다섯째, 日帝는 混奪入地에 對해서도 投托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文書>上的 證明을 요구하면서 다수의 民人의 私有地로서의 混奪入地를 <國有地>에 強制編入시켜 버렸다.<sup>(113)</sup>

日帝가 韓國民人으로부터 混奪入地를 빼앗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에 의거하였다.

(1) 日帝는 混奪入地에 대해서는 「그 混奪入地의 還付는 請願書提出의 日부터 起算하여 其混奪入地의 事實이 20個年까지의 것에 限할 것」<sup>(114)</sup>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결정에 의하여 日帝의 調査당시도 부터 20年以前에 混奪入된 것은 審査에서 처음부터 除外하여 日帝는 수많은 混奪入地를 國有地化하였다.

(2) 日帝는 證憑書類에 대하여 民人이 제출한 <文記>는 <私文記>이므로 여기에 의존하는 것은 危險하다는 구실로 官衙文書에 의거하도록 하였다.<sup>(115)</sup> 당시 韓國民人의 土地所有權文書는 대부분이 <私文記>이었으므로 이 원칙은 <混奪入地>의 所有者로 하여금 證憑書類를 갖추지 못하도록하여 수많은 混奪入地를 國有地化하였다.

(3) 이상의 두개의 條件을 다 갖추어 <請願書>를 낸 <混奪入地>에 대해서는 實地調査를 하도록 하여 高等官會議의 審議에서 請願人 주장의 當否를 判定하도록 하였다.<sup>(116)</sup> 日帝의 臨時財産整理局은 導掌의 實地調査를 할 때 동시에 混奪入地(請願者)의 實地調査도 하도록 하고, 局員의 派遣이 불된한 지역에 대해서는 日本人이 主管하고 있는 所轄 財務監督局에 委囑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시 다수의 <混奪入地>를 國有地로 強制編入시켜버렸다.

(4) 日帝는 投托地의 所有者에 대하여 그 投托의 事實을 否認決定하는 경우에는 그 民人의 다른 私有地까지 「國有地」에 強制編入함으로써 새로운 <混奪入地>를 만들어 내었다.<sup>(117)</sup>

日帝에 의하여 1909년까지 처리된 混奪入地의 내용은 다음 제15표와 같다.

즉 日帝는 그들이 規制한 모든 條件을 갖추어 私有地로 確認해 줄 것을 請願한 韓國民人의 <混奪入地> 110件 중에서 46件(41.82%)만을 私有地로 인정하고, 46件(41.82%)은 國有

대부분은 <投托>에 대한 否認이고 其他導掌에 대한 否認은 그 數가 매우 적다. 반면에 「投托導掌」을 그 <投托>임을 否認하고 다른 종류의 導掌(役價導掌・納價導掌・作導掌)으로 처리한 것은 매우 많으므로 <投托地>에 대한 <否認導掌>의 比率은 실제로는 이 보다 높았다.

(113) 『下調査類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792) <導掌・混奪入> 및 『各道請願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300) <崔榮錄集> 참조.

(114) 『例規類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0987) 1910年 2月 4日條<投托導掌地及混奪入地還付ニ關スル決定何件>

(115) 『臨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 p. 129 참조.

(116) 例『規類綴』 1910年 2月 4日條<投托導掌地及混奪入地還付ニ關スル決定何件> 참조.

(117) 앞의 <投托地>에 대한 事例 7, 8, 9, 10 및 (註96) 참조.

〈표 15〉 混奪入地(證憑書類完備請願者)의 國有地編入比率

區 分	件 數	比 率(%)
國有地에 編入된 것	46	41.82
私有地로 認定된 것	46	41.82
未決로 된 것	18	16.36
計	110	100.00

資料：『臨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 pp. 129~143에서 작성

地로 編入하였으며, 18件(16.36%)은 財務監督局의 回答이 없다는 구실로 未決로 두었다가 그후의 土地調査事業에서 國有地로 편입하여 버렸다.

그러나 日帝가 國有地로 強制編入한 〈混奪入地〉중에는 日帝가 요구한 20年以內의 混奪入地로서 證憑書類를 완전히 갖춘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日帝는 그들을 「導掌」으로 처리하여 약간의 賠償金을 지불하고 매우 無理하게 〈混奪入地〉를 掠奪하였다. 이제 몇가지 事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事例：1 李鳳來는 江原道 原州郡 板梯面에 있는 본래부녀의 民有地 畝 43石 18斗 七升 5合落, 田 74日 3息畝, 垌 56落, 家舍 14坐를 지난 乙巳年(1905년)에 吳鎮遜으로 부녀 代金 30萬兩으로 買得하여 그 民有地임의 각종 證憑書類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吳鎮遜이 景祐宮의 導掌을 한적이 있다고 주장하여 李가 買得한 土地도 導掌權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土地를 國有地로 強制編入하고 李를 導掌으로 결정해 버리고 말았다.<sup>(118)</sup>

事例：2 金容鎮은 平安南道 中和郡 永洋面에 있는 私有地 畝 42斗落, 田 60斗 5升落, 蓋田 1個所以의 所有主로서 그 買賣文記와 각종 證憑書類를 완전히 갖추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이 土地가 明禮宮과 관련된 土地라하여 그 土地를 國有地로 強制編入하고 金은 導掌으로 決定해 버리고 말았다.<sup>(119)</sup>

事例：3 閔泳喆은 平安南道 永柔郡 蘇湖面에 있는 民有地 畝 1,048斗落의 所有主인데, 이 土地는 원래 私有地로서 閔이 그 前所有主로부터 買得하여 民有地로시의 證憑書類가 完全히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國有地整理 때 康熙量案(당시로부터 191年前 癸巳, 즉 康熙 52年)에 昭儀房이 金三萬外 1명에게 錢文 122兩을 受取하고 納價導掌을 認許한 帖文이 있다는 구실로, 日帝는 同房 폐지후 이 토지가 私有地化되어 오랫동안 私相轉賣된 사실을 否認하고 이를 內需司 소속의 宮庄土로 편입함과 동시에 閔을 作導掌으로 결정해 버리고 말았다.<sup>(120)</sup>

事例：4 安定根은 黃海道 信川郡 月川面에 있는 畝 5石 2斗落과 田 1斗落의 所有主로서, 이 土地는 원래 於義宮 소속의 陳荒地를 安岳郡居 柳宗赫이 購入하여 起墾해서 田畝으로 만들었다가 安定根에게 賣渡하고, 安은 700~800圓을 들여 築垌하여 所有해 오던 土地로서 證憑書類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이를 於義宮庄土로 처리하고 安을 役價導掌으로 처리해 버리고 말았다.<sup>(121)</sup>

(118)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031) 第2冊, 〈李鳳來條〉 참조.

(119)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026) 第1冊, 〈金容鎮條〉 참조.

(120)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026) 第1冊 〈閔泳喆條〉 참조.

(121) 『各道請願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300) 및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667) 〈安定根條〉 참조.

뿐만 아니라 宮庄土의 〈混奪入地〉중에서 民人이 그 矯正을 請願하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았으므로 실제로 國有地에 強制編入된 〈混奪入地〉는 日帝의 公式統計보다 훨씬 많았을 것임은 물론이다.

日帝가 宮庄土를 國有地에 編入시킨 것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民人의 私有地와 皇室의 私有地로 귀속되어야 할 土地를 그들의 「國有地」 強制創出의 정책 목표에 따라 의도적으로 國有地化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國有地紛爭〉중에서 〈宮庄土紛爭〉이 14,232筆이나 되어 總國有地分爭의 33.1%로서 〈屯土紛爭〉다음으로 둘째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sup>(122)</sup>

## V. 牧場土, 其他土地의 國有地化

日帝는 위에서 고찰한 驛土, 屯土, 宮庄土 이외에도 牧場土 堤堰畝 陵園墓位土등 기타 다수의 土地를 國有地에 강제로 編入시켜 國有地를 創出하였다. 이하 차례로 몇가지 종류의 土地를 고찰하기로 한다.

### (1) 牧場土

우리나라의 牧場土는 일찍이 新羅時代부터 있어오던 것인데 高麗를 거쳐 朝鮮王朝時代에도 軍防·驛遞·輸送에 비추어 重要視되어 전국에 걸쳐 설치되었다.

牧場土는 ① 牧子位田(牧子の 給料을 주기 위한 土地) ② 內牧場(馬畜司育을 위한 土地) ③ 外牧場(牧場의 附屬地) ④ 牧位田(牧場의 經費를 充當하기 위하여 附屬시킨 土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所有關係로 보면 대체로 ② 內牧場(과 때로는 ③ 外牧場)만이 〈有土牧場土〉이고 그밖의 牧場은 단지 〈民結〉로서 民人의 私有地를 그 田稅만 牧場에 납부하도록 한 〈無土牧場土〉이었다.

甲午更張 때 朝鮮政府는 전국각지의 貢馬및 牧場을 廢止하고 各牧場의 土地는 1894년에 司僕寺를 太僕寺로 고침과 동시에 이를 宮內府에서 管轄하도록 移屬하였는데, 全羅南道 智島의 民結牧場土의 전형적 사례와 같이, 그 후 1908년에 日帝가 모든 牧場土를 〈有土〉〈民結〉〈無土〉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國有地로 強制 編入하여 小作料를 징수하였다.<sup>(123)</sup>

日帝의 이러한 民有地의 掠奪에 대하여 〈民結〉을 가진 民人들이 복종할 리가 없었다. 牧場土에 대한 土地紛爭은 매우 많고 광대해서 전국에 걸쳐 2,164件, 4,722筆에 달하였는데,

(122) 慎鍾廈〈前揭論文〉의 第7表 참조.

(123) 『增補文獻備考』卷 125, 兵考 17, 馬政條〈前揭版〉中卷 pp. 452~466,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pp. 561~571 및 『各道請願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300)〈朴鍾喆·黃演周·朴鍾燮條〉 참조.

그 내용은 대체로 民有地를 日帝가 國有地에 強制 編入시켜 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124)

### (2) 堤堰畓

堤堰畓은 壬辰倭亂 이후에 주로 宮房이 堤堰을 立案折受하거나 占取하여 開畓함으로써 만들어진 耕作地였다. (125) 堤堰畓의 設置는 水利施設을 파괴하면서 開畓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生産力의 파괴를 동시에 수반하는 것이었으나 宮房에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이것이 설치되었다. 그 후 朝鮮王朝末期에 오던 宮房이 점차 貧困化되고 堤堰畓은 肥沃했기 때문에 農民으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므로 宮房은 거의 모든 堤堰畓을 民人에게 販賣하여 民人의 私有地로 되었다.

日帝는 「國有地」의 整理・調査를 함에 있어서, 堤堰과 漲는 원래 國有이오 民有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堤堰畓은 民人의 私有地임과 宮庄土임을 가리지 않고 모두 國有地에 強制 編入시켜 버렸다. (126) 이 때문에 다수의 民人의 私有地인 堤堰畓이 아무런 報償도 없이 國有地化되어 農民은 자기의 土地를 빼앗기게 되었다. 이제 두가지 事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事例：1** 庇仁郡 縣內面 新基坪에 있는 金昌鉉의 畓 8斗落은 원래 陳荒地로서 당시로부터 30年前 郡守의 認許를 얻어서 起墾하여 그 이후 轉相賣買하여 오던 것인데 光武 2年 內藏院의 派員이 이를 堤堰畓으로서 國有에 沒入했다가 그후 農民의 清願에 따라 이를 民有에 還給시켜주겠다고 한 토지였다. 金은 郡守의 認許狀과 賣買文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이를 永小作權의 賣買라고 하여 否認하고 金의 土地를 堤堰畓이라고 하여 國有地에 強制 編入시켜버렸다. (127)

**事例：2** 振威郡에 있어서의 一堤堰畓은 光武 7年에 內藏院 收租官이 振威郡廳의 『事例冊』에 堤堰이라는 記載가 있음을 이유로 들어서 國有地로하여 1斗落에 穀 3斗씩을 徵收하였다. 그 후 日帝의 國有地調査이래 1911년부터 日帝는 小作料를 強徵했다. 그러나 이 土地는 본래는 堤堰임이 다물 바 없는 사실이지만 中途에 崇善宮房에 下賜되어 同房의 子孫은 이를 人民에게 賣渡하였으며, 그 이래 100年間 轉讓賣買되어오던 民有地로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이를 國有地에 強制 編入시켜 버리고 말았다. (128)

이상과 같은 日帝의 堤堰畓에 대한 두차별한 國有地化 정책으로 말미암아 堤堰畓에 대한 國有地所有權紛爭이 203件 49筆 발생하였다. (129)

### (3) 陵園墓位土와 內外垓子

陵은 朝鮮王朝의 王및 王妃의 墳墓를 말하고, 園은 王太子・王太子妃・王太孫・王太孫妃 및 王의 生母인 嬪宮의 墳墓를 말하며, 墓는 諸嬪및 諸王子의 墳墓를 말한다. 日帝는 1908

(124) 『報告書』 pp. 155~156, 愼鏞廈〈前掲論文〉의 事例 20, 참조.

(125) 『增補文獻備考』卷 144, 田賦考 4, 諸田條, 〈前掲版〉中卷 p. 658 참조.

(126) 『報告書』 pp. 89~90, p. 69 및 pp. 161~165 참조.

(127) 『往復書類綴』1909年 6月 21日條, 〈驛屯土ニ關スル未決請願事件〉 참조.

(128) 『報告書』 pp. 161~165, 愼鏞廈〈前掲論文〉의 事例 22, 참조.

(129) 『報告書』 p. 165 참조.



년에 朝鮮王朝 이전의 陵園墓는 이를 모두 國有로 移屬하였다.<sup>(130)</sup>

그런데, 陵園墓에는 位土 각 80結 이하를 부속시켜서 그 收益으로 享祀의 費用을 充當하고 直長 參奉등 守衛官의 經費에 充當하도록 하였다.<sup>(131)</sup> 日帝는 1908년 이 陵園墓位土를 조 사하여 國有地에 編入시켜 버렸다.<sup>(132)</sup>

또한 陵園墓는 棺槨을 安置하는 곳을 主山이라고 칭하고, 그 左右를 포위하는 山脈을 靑龍 및 白虎라고 부르며 主山과 相對하는 山岳을 案山이라고 부르면서, 이들 主山·靑龍·白虎·案山의 分水線에 의하여 포위되는 場所를 內孩子라고 칭하고, 그 外郭을 이루는 土地를 外孩子라고 칭하였다. 內外孩子의 面積은 土地의 形狀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으나 外孩子 中에는 周圍延長이 十數里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

日帝는 陵園墓位土 뿐만 아니라 內孩子의 土地를 國有地에 編入시키고, 또한 外孩子의 山林으로서 宮內府의 所管에 있던 것도 모두 國有地化하였다.<sup>(133)</sup>

日帝의 이러한 強制措置에 대하여 民人들이 內外孩子에 포함된 民人의 私有地의 인정을 요구하게 되었다.<sup>(134)</sup> 이에 日帝는 內孩子에 대하여서는 이를 일축하고, 外孩子에 대해서는 外孩子에 編入되기 이전에 民有地임을 證明하는 文書를 갖고 請願하는 경우에 日帝가 審査하여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566件의 陵園墓 外孩子내의 民有地의 인정 請願이 있었는데, 日帝는 그 중에서 288件(50.88%)만을 民有地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國有地에 強制編入시켜 버렸다.<sup>(135)</sup>

이에 不服하여 이루어진 陵園墓位土 및 內外孩子에 대한 土地紛爭은 43件 85筆에 달하였다.<sup>(136)</sup>

이외에도 ① 學田의 일부, ② 廢寺田畓 및 寺刹基址 ③ 公廩基址田등 기타 종래 官衙에 관련된 소규모의 각종 土地들이 모두 日帝에 의하여 國有地에 強制 編入되었다.

日帝가 「國有地」에 編入할 土地를 強制創出하기 위해서 얼마나 광분했는가 하는 사실은 日帝의 『臨時財產整理局事務要綱』에 기록해 둔 「廣告」에 의한 기만 방법에서도 그 일단을

(130) 『臨時財產整理局事務要綱』 p. 29 참조.

(131) 『萬機要覽』〈財用篇〉2, 免稅條의 〈八道四都免稅田畓結數〉에 의하면, 1807年頃의 各廟陵園墓位土의 面積은 2,018結 91負 3束이다. 日帝의 「朝鮮土地調査事業」때 國有地化한 陵園墓位土의 面積이 정확히 얼마나 되었는지는 資料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이 보다 약간 광 대했을 것임은 통론이다. 왜냐하면 그 후 1世紀에 걸쳐 陵園墓의 數가 增加했기 때문이다.

(132) 『陵園殿廟(負役·香炭·位土)調査書』(奎章閣未整理圖書, No. 2053) 참조.

(133) 『臨時財產整理局事務要綱』 p. 30 참조.

(134) 『金谷山陵外孩字ニ關スル書類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0737, No. 20738, No. 21013) 및 「陵園墓外孩字所管ニ關スル書類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791)에는 여기서는 번잡한 것 같아 일 일이 事例의 내용을 들지 않으나 다수의 이러한 要求와 紛爭의 事例가 수록되어 있다.

(135) 『臨時財產整理局事務要綱』 pp. 38~39 참조.

(136) 『報告書』 pp. 141~142 및 愼鋪廈〈前揭論文〉의 事例 9, 참조.

알 수 있다. 즉 日帝는 驛土 屯土 宮庄土를 除外한 「國有地」에 編入할 다른 宮內府所管 土地의 文書를 갖고 있거나 所在를 알고 있지 못했으므로 이를 發見하기 위한 便宜法으로서 官報와 新聞에 다음과 같은 廣告를 내었다고 한다.

「宮內府所管不動產의 利用을 願하는 者는 그 目的物과 利用方法과를 表示하는 測量圖型을 添附하여 帝室財產整理局長官에 申請할 것」

이 廣告에 응하여 請願을 낸 것이 540件에 달했으나, 日帝의 目的은 이 廣告를 통하여 宮內府所管土地를 發見해내는데 있었으므로, 그 중에서 70件을 利用許可해 주고 나머지는 未決로 처리해 버렸다고 한다.<sup>(137)</sup>

日帝는 光武政權이 宮內府內藏院所管에 조금이라도 관련시켰던 〈有土〉〈無土〉의 各種土地는 民人의 私有地까지 이를 알면서도 모두 「國有地」에 強制編入하는 정책을 집행하였다.

## VI. 未墾地의 國有地化

日帝는 지금까지 고찰한 既耕地 이외에도 방대한 未墾地를 占有하여 國有地化하였다.

여기서 未墾地란 원칙적으로 傾斜 15度 이하의 土地로서 要存林이 아닌 未耕地를 말하는 것이었다. 未墾地에는 舊韓末당시 ① 民有, ② 國有(官有), ③ 皇室有, ④ 無主閒曠地의 소유별 구별이 있었다.

民有未墾地는 특정한 이유로 民人의 私有權이 확립되어 있는 未墾地이었다. 國有未墾地는 특정한 연고로 官衙가 所有權을 갖고 있는 未墾地이었으며, 皇室有未墾地는 立案折受에 의하여 皇室이 所有權을 갖고 있는 未墾地 였다. 한편 無主閒曠地는 私有가 確定되지 않은 未墾地이었다.

未墾地는 林野(原野)・荒蕪地・草生地・沼澤地・干濕地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도 대부분이 林野의 형태로 되어 있었다. 林野 중에서도 未墾地는 要存林을 제외한 不要存林 중에서 傾斜 15度이하의 不要存林단 포함하는 것이었는데, 國有的 林野는 대부분이 要存林이었고,<sup>(138)</sup> 皇室有는 처음부터 면적이 적었으므로, 이를 빼면, 不要存林의 未墾地는 그 대부분이 無主閒曠地와 民有未墾地로 되어있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

未墾地의 面積은 1910년 4월 현재 120萬 397町步에 달하였다.<sup>(139)</sup> 이것은 당시의 既墾地

(137) 『臨時財產整理局事務要綱』 pp. 34~35 참조.

(138) 朝鮮王朝時代의 國(官)有의 林野는 軍事的 目的이나 王室의 使用目的으로 「封山」 또는 「禁山」이라 하여 特定林野의 民間人伐採를 禁止하고 정책적으로 이른바 「禁養」래는 林野이므로 당연히 「要存林」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139) 『皇城新聞』(第3357號) 1910年 4月 30日宇<雜報(耕地面積統計表)> 참조.

面積인 180萬 6,327町步의 66.5%에 해당하는 광대한 면적의 것이었다.

未墾地面積을 道別로 보면, 제16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全羅南道 ② 京畿道 ③ 咸鏡北道 ④ 慶尙南道 ⑤ 黃海道 ⑥ 平安北道에 많았고, 다음으로 ⑦ 平安南道 ⑧ 咸鏡南道 ⑨ 慶尙北道 ⑩ 全羅北道 ⑪ 忠清南道 ⑫ 江原道 ⑬ 忠清北道の 순위로 되어있다.

〈丑 16〉 1910年 土地調査直前の 未墾地面積과 道別分布

道 別	既墾地面積	未墾地面積	未墾地 道別分布(%)
京 畿	144,980町步	132,378町步	10.95
忠 南	171,577	63,635	5.26
忠 北	90,173	15,322	1.28
全 南	240,266	146,722	12.13
全 北	191,632	73,867	6.11
慶 南	194,143	116,473	9.63
慶 北	249,302	83,698	6.92
江 原	36,422	52,489	4.34
咸 南	77,770	85,804	7.09
咸 北	43,896	123,642	10.22
黃 海	162,827	118,352	9.79
平 南	127,005	86,500	7.15
平 北	76,334	110,505	9.13
計	1,806,327	1,200,397	100.00

資料: 『皇城新聞』 1910年 4月 30日字에서 작성.

註: 위의 資料에서는 道別統計와 全國合計가 一致하지 않는데, 道別統計에 誤植이 있는것 같으나 찾을 수 없다. 百分比는 道別合計인 1,209,387町步를 全國總計로 가정하고 算出하였다. 그러나 이 比率는 全國合計 1,200,397町步를 기준으로 算出한 比率와 거의 差異가 없다.

위의 통계는 日帝가 要存林을 설정한 후인 1910년 4월의 統計이므로, 이 統計에서 나온 120萬 397町步의 未墾地는 거의 모두가 無主開墾未墾地와 民有未墾地로 구성되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 그 構成比率는 현재의 자료로서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林野의 경우에 근거하여 間接的으로 推定해 보면 <無主開墾未墾地> 對 <民有未墾地>의 比率는 49.6% 對 50.4%이다.<sup>(140)</sup> 이 기준에 의거하면 <無主開墾未墾地>가 약 59萬 5,400町步로 推定되고,

(140) 朝鮮山林會編 『朝鮮林業逸誌』 1933, p. 53에는 1910年 3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걸쳐 실시한 이른바 「林籍調査事業」의 結果를 표로 수록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無主開墾地가 726萬 8,001町步, 寺刹林이 16萬 5,402町步, 私有林이 738萬 843町步, 國有林이 103萬 5,373 町步로 概算되고 있다. 國有林을 제외하면 無主開墾地對 私有林(寺刹林 除外)의 比率는 49.6% 對 50.4%이다. 未墾地는 「要存林」을 除外한 傾斜 15度以下の 「林野」와 荒蕪地・草生地・沼澤地・干潟地등을 의미하므로, 위의 각종 「林野」의 比率는, (다른 正確한 資料가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未墾地의 所有別比率에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자료의 p.54의 百分比는 소유별 구분에 혼란이 있어서 推定성과 재해석을 요한다고 생각된다.

〈民有未墾地〉가 약 60萬 5,000町步로 推定된다.

여기서 먼저 지적해 두어야 할 사실은 朝鮮王朝末期까지 朝鮮農民은 〈開墾權〉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문제와 관련하여 종래 朝鮮農民이 〈入會權〉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적되었지만,<sup>(141)</sup> 〈開墾權〉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최근까지 지적되지 못하였다.<sup>(142)</sup>

朝鮮王朝의 慣習과 法規는 農民이 「無主開曠地」를 開墾할 경우에는 그 開墾地의 所有주가 되는 것이 오래된 慣習이고 法規이었다. 가장 가까운 시기의 法規定을 보면, 「續大典」田宅條에서 「무릇 間曠處는 起耕한 者를 主人으로 한다」<sup>(143)</sup>고 명백히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그 후의 大典會通에도 그대로 제수목되어 朝鮮王朝末期까지 준수되어 왔다. 그러므로 朝鮮農民은 대부분의 未墾地였던 〈無主開曠地〉에 대한 〈開墾權〉을 명백히 갖고 있었던 것이다.

間曠地가 〈有主〉인 경우<sup>(144)</sup> 農民은 官에 告하여 起墾後 3년간 免稅를 받도록 하였다. 만일 陳田을 起墾했는데 그후 田主가 나타나서 그 所有權을 주장할 때에는 그의 私有가 명확한 경우에 起墾 3년 후 부터 처음에는 收穫의 3分の 1을 田主에게 支給하고 3分の 2는 起墾者가 갖다가 10년이 지나면 一般小作地에서와 같이 收穫을 半分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45)</sup>

만일 〈無主開曠地〉를 미리 立案을 내어 〈起耕〉하겠다고 해서 所有地化한 者가 스스로 起耕하지않고 두었다가 〈立案〉을 빙자하여 남이 起耕한 것을 占奪하거나 〈立案〉을 私相賣買한 者는 侵占田宅律에 의거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sup>(146)</sup>

이것은 朝鮮王朝 後期에 있어서 農民의 〈開墾權〉을 法律에 의하여 확고히 보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朝鮮王朝末期에 있어서는 〈開墾權〉은 農民의 土地에 대한 중요한 權利의 하나여서 農民들은 이 〈開墾權〉에 의하여 〈無主開曠地〉 〈未墾地〉에 「農民的 土地所有」로서의 자기의 私有地를 성립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地主制度의 전개에 따라 土地의 集中과 自作農의 小作農으로의 沒落이 진행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民人들의 無主開曠地의 開墾에 의하여 農民的 土地所有가 성립되어 부분적으로나마 이를 보전하여 가고 있었다. 〈無主開曠地〉・〈未墾地〉는 약간의

(141) 朴文圭〈前揭論文〉 참조.

(142) 慎鍾慶〈前揭論文〉 참조.

(143) 『續大典』戶典, 田宅條, 『朝鮮王朝法典集』(前揭版) 第3卷 p.143 「凡開曠處 以起耕者爲主…」 참조.

(144) 이 경우는 ① 陳田이라하여 廣耕地로서 원래의 所有주가 있는 경우 ② 宮房이 立案折受하여 所有權을 갖고 있는 경우등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145) 『大典會通』戶典, 收稅條, 『朝鮮王朝法典集』(前揭版) 第4卷, p. 251, 「陳田起耕者 許民告官耕種 三年後 始令納稅. 或曰主來爭則 以所耕三分一給田主 三分二給起墾者 耕食十年方許均分.」 참조.

(146) 『續大典』戶典, 田宅條. 『朝鮮王朝法典集』(前揭版) 第3卷 p. 143, 註에서 「其或豫出立案 不自起耕而憑籍據奪者 及其立案 私相賣買者 依侵佔田宅律論」 참조.

資本과 勞動의 投入에 의하여 民有地로 전환할 수 있는 民人の <潛在的> 私有地였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未墾地 안에는 課稅를 피하기 위하여 申告되지 않은 民人の 「新規開墾地」 「遷起地」 등이 수다히 포함되어 있었다. (147)

日帝는 「乙巳條約」 이전에 일찍 이러한 無主開墾地・未墾地の 開墾・占有에 착안하였다가 한국민중의 격렬한 反抗運動에 부딪쳐 실패한 적이 있었다. (148) 日帝는 統監府 설치후인 1906년 7월에 우선 宮房 소속의 荒蕪地開墾을 民人에게 일체 認許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149) 이것은 日帝가 그들의 未墾地占奪을 전제로 하고 우선 宮房 소속의 未墾地가 民人の 開墾에 의하여 民人の 私有地化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緊急措置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광대한 <無主開墾地>의 開墾은 制限하지 못한 것이었다.

日帝는 뒤이어 1907년에 7월에 「國有未墾地利用法」과 「國有未墾地利用法施行細則」을 발표하여, 民有 이외의 原野 荒蕪地 草生地 沼澤地 干潟地는 모두 이를 國有未墾地로 하고, 國有未墾地의 開墾은 이를 政府의 許可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였다. (150) 이 「國有未墾地利用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것이었다.

- ① 民有이외의 原野 荒蕪地 草生地 沼澤地 干潟地를 國有未墾地로 規定함으로써 종래의 <無主開墾地>를 國有(官有) 및 皇室有 未墾地와 함께 「國有」로 포함시켰다는 점. (第1條)
- ② 國有未墾地(대부분이 無主開墾地)를 開墾貸與등 利用하고자 하는 者는 農商工部大臣에게 請願하여 許可를 얻어야 하도록 하였다. (第4條)
- ③ 國有未墾地의 貸與를 받은 者는 農商工部大臣이 지정한 貸與料를 사전에 納付하도록 하였다. (第5條)
- ④ 農商工部大臣은 特定한 경우에 따라서는 貸與를 取消할 수 있게 했다는 점. (第8條)
- ⑤ 「國有未墾地利用法」을 위반한 者는 罰料金 등 處罰을 받도록 규정했다는 점. (第11條)
- ⑥ 3町步이내의 國有未墾地의 利用에 대해서는 當分間 舊慣에 의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거하지 아니할 수도 있게 잠간 유보했다는 점. (151)

(147) 度支部 『財務彙報』 第20號(1909年 8月 10日) <作佚에 關한報告> p. 41 참조.

(148) 尹炳奭 「日本人의 荒蕪地開拓權要求에 對하여」—1904年 長森名儀의 委任契約企圖를 中心으로— 『歷史學報』 第22輯, 1964. 참조.

(149) 『宮內府官制』 1906. pp. 161~162 참조.

(150) 『高宗實錄』 光武 11年 7月 4日條, 『奏議』 第118冊, 光武 11年 7月 4日條 및 『官報』 (第381號) 光武 11年 7月 6日字 <法律第4號 國有未墾地利用法> 참조. 이 法은 全文 17條로서 1907년 9월 15일 부디 施行토록 규정되었다. 「國有未墾地利用法施行細則」은 農商工部令第50號로서 1907년 7월 10일 公布되었는데 全文 25條로서 國有未墾地의 利用을 주로 日本人이 請願할 것을 前提로하여 자세한 施行細則을 마련한 것이다. 『官報』 (第381號), 光武 11年 7月 10日條 <農商工部令第50號 國有未墾地利用法施行細則> 참조.

(151) 이 規定은 「森林法」이 제정 공포될 때까지 약 6개월간 有効했는데, 「國有未墾地利用法」의 공포에

이 「國有未墾地利用法」의 공포에 의하여 실로 방대한 面積의 〈無主開墾地〉가 〈國有未墾地〉로 되었으며, 종래 이를 자유롭게 開墾하여 그 開墾地에 자기의 所有權을 확립시킬 수 있었던 民人들은 이제는 그 開墾에 農商工部大臣의 許可를 요하게 되고 貸與料를 先納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法律에 의하여 開墾이 禁止된 것이었다.<sup>(152)</sup> 뿐만 아니라 이 「國有未墾地利用法」은 開墾을 許可받고 貸與料를 先納하여 起墾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는 그 新開墾地에 자기의 所有權이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所有權은 원칙적으로 國家가 갖고 起墾者는 자기가 開墾한 土地의 小作人이 되도록 한 것이었다. 즉 日帝가 만든 「國有未墾地利用法」은 종래의 民人의 〈開墾權〉을 박탈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國有未墾地利用法」에 의하여 日帝가 그들의 정책목적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 즉 民有未墾地와 國有未墾地(주로 無主開墾地)의 區分의 문제였다.

日帝는 이 문제를 1908년 1월 「森林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民有未墾地〉문제를 〈民有林〉문제와 함께 3個年以內에 證憑書類와 地籍圖를 첨부하여 申告토록해서 官認받은 것만을 〈民有〉로 認定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sup>(153)</sup> 1908년의 「森林法」의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森林法」은 「森林山野의 所有者는 本法施行日로부터 三個年以內에 森林山野의 地積及 面積의 略圖를 添付하여 農商工部大臣에게 申告되 期間內에 申告치 안이호 者는 總히 國有로 見做함」(第19條)이라고 하여 1908년 1월 21일부터 1911년 1월 20일까지 自己所有의 森林山野와 함께 未墾地의 地積及 面積의 略圖를 申告하지 않으면 私有地일지라도 國有地로 看做할 것을 규정 한 것이었다.

이 조항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① 法律에는 公證하지 않고 證憑書類를 첨부하도록 하던 「官文記」만을 인정하고 「私文記」는 이를 證憑書類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森林山野와 未墾地의 私有權이 「文記」가 없거나 「私文記」로 증명되었던 많은 民有未墾地와 私有林이 「官文記」가 없어 民有未墾地와 私有林으로 申告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그 부분이 모두 國有未墾地와

대한 民人의 抵抗을 緩和시키기 위한 항목인 것으로 보인다. 이 規定이 그대로 實施되지 않았다 는 사실은 그 후 土地調査의 國有地紛爭 때 이 規定에 근거한 開墾地도 國有地로 強制編入된 곳에서 이를 알 수 있다. 『導掌決定原案』(全章開未整理圖書, No. 21667) 〈下鍾獻條〉 참조.

(152) 度支部 『韓國財務經過報告』 第1回(1908年上半期) pp. 54~5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國有未墾地를 利用하려는 民人은 事前에 貸與料를 支拂하고 그 利用許可를 얻도록 했으며, 그 貸與料의 徵收는 「鐵業賦課徵收順序」(1908年 3月 度支部訓令第68號)에 준하도록 하였다.

(153) 『承政院日記』 隆熙 2年 1月 21日條, 『純宗實錄』 隆熙 2年 1月 21日條, 『奏議』 第128册, 隆熙 2年 1月 21日條 및 『官報』(第3979號) 隆熙 2年 1月 24日條(法律第1號 森林法) 참조. 이 法律은 全文 22條로서 頒布日(1908년 1월 21일)부터 施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國有林으로 看做되게 되었다.

② 民有未墾地와 私有林의 申告者에게 대하여 제작에 다수의 費用이 드는 地積과 面積의 略圖를 製作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中·大 民有未墾地와 山林所有者는 이에 응하였으나, 小面積의 民有未墾地와 山林所有者는 略圖製作의 費用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③ 「森林法」의 심각성이 民間人에게 충분히 周知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는 아직 명목상 大韓帝國이 존속하던 때이므로 이를 무시하거나 알지 못하고 申告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民有未墾地와 私有林의 실로 거대한 부분이 「國有未墾地」와 「國有林」으로 간주되어, 벌써 이 때에 서류상으로는 民有未墾地와 私有林의 強奪에 의한 國有未墾地와 國有林의 強制 創出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둘째, 「森林法」은 民人의 無主開曠地의 <開墾權>을 「農商工部大臣의 許可가 無하면 森林山野의 開墾함을 不得함」(第12條)이라고 부인하고, 入會權을 부인함으로써(第13, 14, 15條), 無主開曠地와 公有林(無主空山)을 國有未墾地와 國有林化하였다.

이것은 종래의 광대한 면적의 無主開曠地를 모두 國有未墾地化하고, 「國有未墾地利用法」에서 舊慣을 존중하여 3町步以內의 無主開曠地의 開墾은 民人의 所有地로 許容한다는 예외 조항도 否定한 것이었다. 日帝는 이 법령에 의하여 실로 광대한 면적의 모든 無主開曠地와 森林山野를 《無償》으로 획득하였었다. 반면에 民人은 종래 無主開曠地에서 開墾하던 그 開墾地의 所有者가 될 수 있던 <開墾權>을 完全히 잃고 開墾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農商工部大臣의 허가를 얻어 開墾하는 경우에도 開墾地의 所有主가 되지 못하고 國有地의 小作人으로 되게 되었다. 또한 종래의 無主空山에 入山하여 그 主副產物을 採取하는 것도 刑法으로 禁止되었으며(第15條) 모든 종류의 入會權을 소멸당하게 되었다. 심지어 종래의 無主開曠地에서의 採石마저도 금지되었다.<sup>(154)</sup>

세째, 「森林法」은 「農商工部大臣은 左에 記載한 箇所를 保安林에 編入함을 得함」(第5條)이라고 규정하여 日帝가 필요한 경우는 民有未墾地와 私有地도 「保安林」에 編入하여 「실질적으로」 國有未墾地와 國有林化할 수 있도록 하고, 「保安林」에 編入된 未墾地와 森林山野의 私有權者의 伐木·開墾…등 모든 權利를 禁止하였나.(第6, 7, 10條)

실제로 「保安林」에 編入된 民有未墾地와 森林山野의 면적은 많은 것 같지는 않으나, 이

(154) 『承政院日記』 隆熙 2年 8月 11日條, 『純宗實錄』 隆熙 2年 8月 11日條, 『奏議』 第139冊, 隆熙 2年 8月 11日條, 『官報』(第4151號) 隆熙 2年 8月 13日字<勅令第58號 國有土石採取規則> 참조.

조치는 日帝가 앞으로 그들의 植民地政策上 필요한 民有未墾地와 森林山野는 強權으로 이를 接受하여 國有地化할 것을 선언한 略奪的 조항이었다.

네째, 「農商工部大臣은 造林者와 그 收益을 分收하는 條件으로써 國有森林과 山野에 部分林을 設定함을 得함」(第3條)이라고 규정하여 「部分林」제도를 설정함으로써 日帝資本의 國有未墾地와 森林山野占有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 「部分林」제도와 「森林法」그 자체가 日帝資本의 韓國未墾地와 林野의 侵奪을 준비한 것으로서, 「森林法」이 공포됨과 발을 맞추어 日本에서는 韓國未墾地占有가 日本各界에서 논의 되었음을 『大韓每日申報』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日本에서 韓國各地 陳荒地開墾事에 대하여 該資本金을 모집하는데 全國實業家에서는 一千萬圓을 捐付하고 政府에서는 三十萬圓을 捐付하기로 決議하였더라.」<sup>(155)</sup>

또한 신문들은 大韓帝國政府의 農相 宋秉畷등 親日官僚들이 日本資本의 未墾地占有政策에 迎合하고 있음을 보도하였다.<sup>(156)</sup>

뿐만 아니라 日帝는 大韓帝國政府의 이름으로 日本資本의 森林山野占有에 편의를 주기 위하여 1908년 3월 5일 全文 31條로 된 「國有森林山野部分林規則」을 農商工部令第63號로 제정 공포하였다.<sup>(157)</sup>

日帝가 처음부터 國有未墾地와 國有林의 強制 創出을 위하여 제정 공포한 「森林法」중에서 韓國民의 民有未墾地所有者가 가장 고통을 받은 것은, 주어진 3년 이내에 「私文記」가 아닌 「官文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地積 및 面積의 略圖를 작성하여 申告하라는 규정이었다. 15세기부터 農耕地에서 私有制度가 확립된과 병행하여 그에 뒤따르면서 未墾地와 林野에도 特定の事由에 의거하여 私有權이 성립되어 발견되었으나, 未墾地와 林野에는 〈租稅〉가 없었으므로 土地와는 달리 官衙에서 〈呈案〉등 臺帳을 만들지 않고 〈私文記〉로서만 賣買되거나 〈文記〉없이 相續되어 왔다. 〈官文記〉가 있는 未墾地의 경우는 山訟에 걸려 裁判을 거친 林野이거나 또는 賜牌地와 같이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이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日帝가 〈官文記〉만을 증빙서류로 인정한 것은 처음부터 民有未墾地를 國有未墾地化하여 略奪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日帝의 이러한 制限措置로 인하여 所定期限인 1911년 1월 20일까지 民有未墾地로서 申告된 면적은 實際의 民有未墾地 보다 훨씬 적은 것이었다. 그 확실한 면적은 알 길이 없으나,

(155) 『大韓每日申報』(第6卷 第727號) 1908年 2月 11日字〈雜報(資本鳩集)〉.

(156) 『大韓每日申報』(第6卷 第728號) 1908年 2月 12日字〈雜報(陳荒許日)〉 참조.

(157) 『官報』(第4024號) 隆熙 2年 3月 18日字〈農商工部令第63號 國有森林山野部分林規則〉 全文 31條 및 3月 24日, 3月 25日, 4月 2日, 4月 8日字, 第1號~第9號 樣式 참조.



「林野」전반을 통하여 추정하여 보면 實際의 民有未墾地의 약 29.8%만이 申告된 것으로 보인다. (158)

이를 기준으로 推算하여 보면, 약 120萬町步의 未墾地중에서 日帝는 이 「森林法」의 집행을 통하여 無主閒曠未墾地 약 59萬 5,000町步와 民有未墾地 약 42萬 5,000町步를 國有地化(國有未墾地化)한 것으로 推定된다. 즉 日帝는 약 102萬町步의 未墾地를 國有地化한 것이었다. 이 때 民有未墾地로 申告 접수된 것은 약 18萬町步로 推定된다.

日帝는 1911년 1월 20일로 民有未墾地와 私有林의 申告가 끝나자 이를 査定하여 國有未墾地와 國有林의 強制 創出을 일단 완료 한 다음, 1911년 6월에 「森林法」을 廢止하고 그 대신 이와 동시에 「森林令」과 「森林令施行規則」을 제정 공포하였다. (159) 새로운 「森林令」은 「森林法」에 의하여 官廳의 證憑書類를 첨부해서 申告하여 査定된 民有未墾地와 私有林이외의 더 이상의 追加申告를 禁止하면서 未墾地와 林野에 대한 植民地掠奪政策을 強化한 것이었다. (160)

(158) 朝鮮總督府 『朝鮮林野調査事業報告』 1938, p. 9에 의하면 이 「森林法」에 의하여 「申告」접수된 私有林은 약 220萬町步이었다. 이것은 앞서(註140)에서 든 바 日帝가 1910년 3월~8월에 실시한 「林籍調査」에서 概算한 私有林(寺刹林제외) 738萬 843町步에 대하여 29.8%에 불과한 것이다. 未墾地의 大宗은 傾斜 15度以下の 「林野」이므로 현재 더욱 正確한 資料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 林野全般의 比率는 未墾地의 경우에도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59) 朝鮮總督府 『朝鮮法令輯覽』 1920, 第10輯, pp. 9~11 참조.

(160) 日帝의 「森林令」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未墾地와 林野에 대한 日帝의 植民地掠奪政策을 強化한 것이었다.

첫째, 「森林法」에 의하여 申告되고 접수된 官文記의 證憑書類를 첨부한 民有未墾地와 私有林만을 日帝가 法認한 民有未墾地와 私有林으로 인정하여 이를 既確定된 사실로 하고, 더 이상의 申告나 私有林의 調査는 중지하여 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것은 아직 申告하지 못한 民有未墾地와 私有林의 〈申告〉의 길을 막아버린 것이었다.

둘째, 새로이 強制創出한 소위 國有未墾地와 國有林을 日本資本과 移民들에게 分讓(또는 拂下)해 주기 위한 준비로 종래의 「部分林」제도를 폐지하고 「造林貸付」제도를 창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森林令」은 日本資本의 林野占有과 투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혜를 설정하였다.

① 「森林令」 第7條에서 「朝鮮總督은 造林을 위해 國有森林의 貸付를 받은 者에 대하여 事業에 成功한 경우에 있어서 특히 그 森林을 讓與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第11條에서 「朝鮮總督은 公用 또는 公益事業을 위하여 또는 移民團體의 用에 供하기 위하여 必要할 때에는 國有森林을 讓與할 수 있다」고 하여 「造林貸付」가 讓與의 前段階임을 천명하였다.

② 「森林令施行細則」 第14條에서 「造林의 目的을 갖고 國有森林의 貸付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森林의 天然稚樹는 成林한 때에는 借受人의 所有로 한다」고 하여 概存의 天然稚樹(樹年齡 표시가 없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의 所有權을 이양하였다.

셋째, 國有林 및 그 產物의 賣却을 시작하였다. 「森林令施行細則」 第18~34條에 걸쳐서 日帝는 朝鮮總督府가 實業家(주로 日帝資本)와 隨意契約하여 10年分割償還으로 森林 또는 그 產物(주로 木材)을 賣却할 수 있도록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保護措置를 설정하였다. 이것은 朝鮮總督府와 日帝資本이 結托하여 森林을 拂下받거나 木材를 拂下받아 막대한 販賣代金과 利潤을 양측이 分配하는 法制를 만든 것이었다.

네째, 「森林令」은 第1條~第3條에서 「森林法」의 「保安林」編入 조항을 강화하여, 朝鮮總督府가 國土의 保安……등 각종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有者의 의사와 관계없이 一方으로 保安林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所有主의 伐採, 開墾, 落葉·切芝·土石·樹根·草根의 採

日帝朝鮮總督府의 「森林令」이 「森林法」에 의하여 申告되지 못한 民有未墾地와 私有林을 國有地에 強制編入한 掠奪的인 것이었기 때문에 日帝의 가혹한 武力彈壓 밑에서도 「朝鮮土地調查事業」도중에 未墾地와 林野의 所有權紛爭이 폭발하였다. 원칙적으로 「朝鮮土地調查事業」은 林野調査는 除外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土地調查事業 실시 도중에 調査對象土地 사이에 介在하는 5萬坪以下の 未墾地와 林野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하니 이를 土地와 함께 調査 測量하도록 한 것이 紛爭 表出의 통로가 되었다. 이 때 日帝가 未墾地와 林野의 所有權紛爭을 未然에 防止하기 위하여 제정한 法規가 1912년 2월 3일에 日帝朝鮮總督府訓令第4號로 공포된 「森林山野及未墾地國有私有區分標準」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森林山野及未墾地國有私有의 區分은 左記標準에 의하여 取扱하여야 한다.

森林山野及未墾地國有私有區分標準

左記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森林山野 또는 未墾地는 이를 私有로 한다. 但 舊森林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届出은 하지 않은 森林山野는 比限에 在하지 않는다.

一. 結數連名簿에 登載된 土地 및 이에 登載되지 않았을 지라도 現在 地稅를 賦課하거나 또는 일찌기 地稅를 賦課한 土地.

火田(結數連名簿에 火田의 名稱을 附하였을지라도 事實熟田이라고 認定되는 것은 除外한)及 일찌기 地稅를 賦課했을지라도 永久히 그 利用은 廢한 土地는 이를 私有로 認定하지 않음.

二. 土地家屋證明規則 施行 以前에 官廳에서 私有임을 認定한 土地.

三. 土地家屋證明規則 또는 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의 證明에 의하여 私有임을 認定한 土地.

四. 確定判決 또는 土地調查法의 處分에 의하여 私有임을 認定한 土地.

五. 確證있는 賜牌地

六. 官廳의 還付, 付與 또는 讓渡한 確證있는 土地.

七. 隆熙 2年 勅令 第39號 施行 以前에 宮內府에서 私인에게 還付, 付與 또는 讓渡한 確證있는 土地.

八. 永年 樹木을 禁養한 土地.

九. 前各號의 外에 朝鮮總督이 특히 私有로 認定한 土地.

前項에 該當하지않는 森林山野及 未墾地는 이를 國有로 한.

舊森林法 施行前에 公山이라 칭한 國有森林山野에 墳墓를 설치한 者는 墳墓의 存在하는 限에 그 墳墓區域을 從來대로 使用할 수 있음」<sup>(161)</sup>

取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섯째, 「森林令」 第5條, 第15條, 第16條……등에서 朝鮮總督府의 私有林에 대한 命令權을 강화하고, 朝鮮總督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開墾의 禁止, 使用用益, 造林등을 所有主에게 命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종래의 私有林으로서 證憑書類가 不足하여 國有林으로 편입된 林野에 대해서는 그 원래의 所有者를 「地元住民」으로하여 종래의 「入會慣行」을 허가하여 副產物採取와 放牧을 허가함으로써 이의 所有權紛爭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森林令」 第8條, 및 「森林令施行細則」 第35條).

일곱째, 그 외의 民間人의 國有林의 使用·入會에 대해서는 엄중한 罰則을 강화하였다. (森林令 第19~23條. 「森林令施行細則」 第42~43條).

(161) 『朝鮮法令輯覽』 第10輯, p. 27.

여기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朝鮮土地調査事業」시행에 당하여 森林山野・未墾地의 國有・私有를 判別하기 위한 「森林山野及未墾地國有私有區分標準」은 앞서본 1908년의 「森林法」第19條에 의하여 申告된 220萬町步(이중에서 未墾地는 약 18萬町步)의 森林・山野未墾地에 限해서 다시 「國有・私有」를 再審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지, 그 때에 申告에 누락되거나 〈文記〉가 없거나 〈官文記〉의 證憑書類를 갖추지 못하여 私有林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國有林으로 強制 編入된 林野의 申告를 받아 再審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森林法」第19條에 의해 申告를 끝낸 220萬町步의 森林・山野・未墾地의 「國有・私有區分」再審에서 적용된 기준은, ① 火田 및 陳田 除外, ② 官文記證明要求 ③ 賜牌地 ④ 永年森養林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標準」을 통하여 私有林으로 인정된 것은 220萬町步 보다 감소되면 되었지 增加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掠奪의인 方法에 의하여 日帝의 未墾地의 國有地化 정책이 진행된 결과 종래의 民人에게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발생하였다.

(1) 農民들은 이미 民有로 된 다수의 未墾地를 충분한 증빙서류를 갖추진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日帝에게 강제로 빼앗기게 되었다.

(2) 農民들은 종래의 無主閒曠地 사이 사이에 이미 開墾했던 耕作地를 日帝에 의하여 빼앗기고 자기의 私有地의 小作人이 되도록 되었다.

(3) 農民들은 종래의 無主閒曠地를 자유롭게 開墾하여 자기의 私有地를 만들수 있는 〈開墾權〉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다.

반면에 日帝는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植民地統治權力에 의거해서 《無償》으로 未墾地들 사이에 있는 既墾地와 약 102萬町步에 달하는 실로 광대한 면적의 未墾地를 國有地化하여 國有地를 強制 創出하였으며, 이것은 朝鮮總督府의 所有가 되어 日本移民과 日帝資本에게의 拂下의 준비가 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日帝의 未墾地占奪에 대하여 朝鮮農民은 완강하게 反抗하였다. 日帝의 가혹한 武力彈壓에도 불구하고 이를 뚫고 「朝鮮土地調査事業」 도중에 農耕地사이에 끼어있는 未墾地에 한해서만도 최종적으로 表出된 未墾地에 관한 土地紛爭은 1,087件, 2,814筆에 달하는 광대한 것이었으며, 全國에 걸쳐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 紛爭의 내용은 民有未墾地를 日帝가 國有地에 強制 編入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었다.<sup>(162)</sup>

(162) 『報告書』 pp. 157~161, 慎鏞廈〈前掲論文〉의 事例 21, 참조.

## VII. 導掌과 農民權利的 處理

## (1) 導掌의 處理

日帝가 植民地政策의 노선에 따라 國有地化한 土地 위에는 때에 따라 管理者와 農民의 權利가 성장되어 있어서 日帝로서는 이의 처리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日帝가 부딪친 문제 중의 하나는 宮庄土에 있어서의 導掌의 처리문제였다. 日帝는 1907년 6월 宮庄土등을 國有地化함에 있어서 導掌을 廢止하기로 결정하였다.<sup>(163)</sup>

導掌은 宮庄土의 收租와 管理를 담당하는 者를 총칭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一般農地의 舍賻과는 달리 그 보다 社會經濟的 地位가 한층 上位의 것이었으며 導掌權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中畚主」 즉 中間地主의 성격을 갖인 특수한 것이었다. 導掌은 자기 밑에 現지에서 자기를 代理하는 「監官」 또는 「舍賻」을 두는 것이 보통이었다.<sup>(164)</sup>

朝鮮王朝末期의 宮庄土의 導掌에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종류가 있었으며 日帝도 이 관습적 分類를 일단 도습하였다.<sup>(165)</sup>

① 役價導掌(役導掌)…이것은 宮房에 속해있는 未墾地를 특정인이 自己의 資本이나 勞動力을 投入하여 開墾함으로써 이를 耕作地化하여 農民에게 이를 小作주고 宮房에게는 一定한 稅를 납부하던 導掌을 말하는 것이었다. 비단 開墾 뿐이 아니라 堤堰修築이나 水利施設 補修등으로 導掌이 自己의 資本이나 勞動力을 投入하였을 때도 동일한 結果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의 役價導掌은 宮稅는 小額인데 小作農으로부터 收納하는 小作料는 並作法에 의하여 生産量의 2分の 1이 지배적이이기 때문에 막대한 差額을 收取할 수 있었으며, 導掌은 自己의 資本이나 勞動力을 土地에 投入하여 土地에 대한 支配權을 획득했으므로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中畚主」 즉 中間地主의 성격을 가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納價導掌(納導掌)…이것은 宮房에 一定한 金額을 납부하여 導掌으로 差定받고 매년 宮房에 一定한 稅를 납부하고 小作農으로부터 小作料를 收納하여 그 差額을 收取하는 導掌이었다. 즉 비유하면 宮房에 金額을 支拂하여 導掌權을 구득한 導掌을 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納價導掌도 役價導掌과 마찬가지로 「中畚主」 즉 中間地主의 성격이 강하였다고 볼

(163) 『高宗實錄』光武 11年 6月 5日條 및 『官報』(第3786號), 1907年 6月 7日字 <宮內府令第1號 內需司 및 各宮所屬庄土 導掌을 廢止하는 件> 참조.

(164) 『例規類綴』1907年 6月 5日條<宮內府令 第1號> 참조.

(165) 『臨時財產整理局事務要綱』pp. 63~65 및 『例規類綴』1908年 2月 29日條<前作導掌, 納導掌, 役導掌, 投托導掌ニ關スル閣議決定>. 참조.

수 있다.

3) 作導掌...이것은 宮房에 功勞가 있거나 宮房이 信任하는 者를 差定하여 宮庄土의 收租와 管理를 담당케한 導掌이다. 따라서 作導掌은 「中番主」나 中間地主의 성격은 없고, 宮房이 부여한 特權으로서의 導掌權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投托導掌...이것은 土地所有者가 자기의 所有地를 宮房에 投托하여 마치 宮庄土인 것으로 假裝한 것으로서 그 投托者를 導掌으로 差定한 것이다. 따라서 投托導掌은 실제의 의미에서 導掌이라고 볼 수 없고 投托地의 所有主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宮房이 導掌을 差定할 때에는, 불법적인 投托導掌을 제외하고는, 「帖文」이라는 文書를 교부했으며, 그 宮稅率등에 대해서는 「完文」이라는 文書를 첨부하고, 이들 文書에는 「圖書」라고 부르는 宮印을 찍었으며, 이러한 宮印이 찍힌 文書를 「圖書文牒」이라고 불렀다.

朝鮮王朝末期에는 宮房은 負債를 짊어진 상태에 있었다.<sup>(166)</sup> 따라서 宮房은 宮庄土의 導掌들에게 先金을 받고 土地에 대한 支配權의 많은 부분을 사실상 買渡한 형편이었으므로 宮庄土에 있어서의 導掌의 權利는 상당히 強大하였다.

導掌은 宮房에 一定의 金額 또는 現物의 宮稅를 납부하고, 小作農으로부터 받은 小作料에서 막대한 差額을 收取할 수 있었으므로, 특히 役價導掌과 納價導掌의 경우는 이것이 큰 財產權이 되어 공식적으로 〈賣買〉되었다. 즉 導掌은 매년 一定의 宮稅를 납부하는 의에는 宮房에 대하여 하등 義務를 부담하는 것이 없고, 스스로 宮庄土의 收租를 담당할 權利를 가졌을 뿐 아니라, 이를 子孫에게 傳授하거나 이를 자유롭게 他人에게 賣買 讓與할 수 있었다. 導掌의 賣買은 土地의 賣買와 同一한 形式으로써 〈文記〉를 작성하여 帖文 및 完文에 첨부해서 이를 授受하였으며, 文記는 보통 記名式으로서 買收人의 氏名을 기재하는 것이 관례이었다.<sup>(167)</sup>

宮庄土의 導掌의 성격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日帝는 宮庄土를 國有化함에 있어서 이 導掌의 財產權의 처지의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役價導掌」과 「納價導掌」과 「作導掌」에 대해서는 그들의 導掌權이 강력한 「財產權」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賠償을 하였다. 이에 앞서 日帝는 賠償對象이 될 導掌의 數를 줄이기 위해서 ① 證據書類가 있는 것 민을 導掌으로 認定하도록 하였으며<sup>(168)</sup> ② 다음으로 〈導掌實地調査〉를 행하여 이를 再確認하고<sup>(169)</sup> ③ 導掌實地調査에 있어

(166) 『帝室債務整理之現況』(奎章閣未整理圖書 No. 22157) 및 『朝鮮の保護及併合』(前掲史料) 第3卷, pp. 178~180 참조. 이 자료에 의하면, 1906年 6月 현재 一司五宮(內需司 明禮宮 壽進宮 於義宮 毓祥宮 龍洞宮)의 負債額은 약 61萬餘圓에 달했다고 한다.

(167) 『臨時財產整理局事務要綱』 pp. 70~71 참조.

(168) 『例規類編』〈導掌處分ニ關スル事務處理順序〉 참조.

서는 솜팍과 小作人을 入會시켜 確認하도록 하였다.<sup>(170)</sup>

導掌에 대한 賠償方法은 ① 各導掌의 1개년의 純收益을 調査하여 결정하고, 그 3개년분을 賠償金으로 하며, ② 그 賠償金은 現金이 아니라 「導掌公債」(證券)로서 10年分割로 지급하도록 하고 ③ 賠償은 導掌의 종류를 구별치 아니하고 同一케 하였다.<sup>(171)</sup>

이것은 종래의 導掌에게는 큰 재산상의 손실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래에는 매년의 純收益을 영구히 취득할 수 있었는데 반하여, 이제는 오직 3개년분의 純收益만을 賠償받게 되었으며, 그것도 現金이 아닌 公債로 分割償還 받은 다음 모든 權利가 消滅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導掌의 每年的 純收益은 日帝側의 計算에 의하여 低評價되었다.<sup>(172)</sup> 日帝는 導掌에 대한 賠償價格을 처음에 지나치게 低評價하여 計算上으로 純收入이 없는 「損失」을 본 導掌이 나오고 不合理성이 노정되자, 다시 제2차로 導掌의 純收益을 再査定하여 92件을 上向調整하고 23件을 형식적으로 약간 下向調整하였다.<sup>(173)</sup> 이것이 최종적으로 確定된 導掌 賠償金이었다.<sup>(174)</sup> 그러나 이것도 역시 低評價된 賠償金額이었다. 그 증거로서는 이러한 第2次再調整에도 불구하고 ① 京畿道 坡州郡의 成樂遠과 ② 安山郡의 金在元의 2명의 導掌의 純收入이 각각 ① 18圓 73錢 5厘와 ③ 43錢의 缺損으로 나와서 特別處理되었는데 도대체 〈實際〉로 純收入이 缺損을 본 導掌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sup>(175)</sup>

이렇게해서 소위 〈賠償金〉을 받은 導掌은 모두 123件이고, 그 총액은 11萬 6,809圓 90錢 4厘이었다. 日帝는 이 賠償金을 거소유계도 「賜金」이라고 불리 마차 施惠를 베푸는 것 같이가장하였다.<sup>(176)</sup>

한편 日帝는 投托導掌에 대해서는 이를 무리하게 否認하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投托導掌은 성격상 그 土地의 실질적 私所有者였으므로 投托導掌을 인정하면 國有地화된 土地에서 그 投托地부분을 私有地로 돌려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日帝는 「投托導掌은 그 投托인 것을 明記하는 文書를 所持하는 者에 限할 것」<sup>(177)</sup>

(169) 『例規類綴』〈導掌實地調査心得〉 참조.

(170) 『例規類綴』〈實地調査員ノ一般心得〉 참조.

(171) 『例規類綴』1908年 2月 29日條〈閣議決定〉 참조.

(172) 『參考書綴』〈導掌地秋收穀價格算出表〉 및 〈導掌賠償金算出表(1)〉 참조.

(173) 『例規類綴』1910年 5月 17日條〈導掌賠償金其他決定ノ件何件〉 참조.

(174) 『參考書綴』〈導掌賠償金算出表(2)〉 참조. 이것이 『臨時財產整理局事務要綱』에 발표된 賠償金表이다.

(175) 『例規類綴』〈純收入不足의 導掌에 대한 賠償額決定表〉 및 〈導掌賠償日其他決定ノ件何件〉 참조.

(176) 『臨時財產整理局事務要綱』 pp. 77~94에는 〈賠償金〉을 받은 導掌의 名單과 賠償額이 表로 제시되어 있다.

(177) 『臨時財產整理局事務要綱』 pp. 73~74.

이라고 규정하여 投托의 證憑文書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投托의 특징은 바로 證憑文書 없이 은밀히 不法으로 행해지는 것이었고, 證憑文書가 있는 것이 例外的인 것이었다. 이를 잘 알고도 日帝가 고의로 投托地의 國有地化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만든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投托의 證憑書類를 갖추는 경우에는 다시 實地調査를 하도록 하여 그 査定을 일방적으로 日帝가 判定하도록 하였다.<sup>(178)</sup> 이 과정을 통하여 日帝는 다수의 投托地를 다음과 같이 否認하였다.

(1) 證憑書類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가 恣意的으로 그書類를 不充分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를 否認함으로써 다수의 投托地가 國有地에 強制 編入되고 投托導掌은 그 認定을 받지 못하였다.<sup>(179)</sup>

(2) 證憑書類를 完全히 갖추어 日帝의 입장에서 投托地임을 도저히 否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投托導掌으로 認定하지 않고, 役價導掌·納價導掌·作導掌으로 바꾸어 認定하였다. 왜냐하면 投托導掌임을 認定하면 그 投托地를 還給해주어야 하며 따라서 民有地가 되어버리지만, 다른종류의 導掌으로 바꾸어 認定하면 약간의 <賠償金>을 支給하고 投托地를 國有地에 強制 編入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實際의 投托導掌이 役價導掌·納價導掌·作導掌등에 편입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sup>(180)</sup> 이제 몇가지 事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事例：1** 安商一은 平安南道 安州郡 平湖面에 있는 畝 42石 6斗 4升落의 所有主로서, 이를 壽進宮에 投托했던 것인데, 帝室財産整理 때 安은 그 證憑書類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證憑書類 부족을 내세워 이를 壽進宮 소속의 宮庄土로 처리하고 安을 단순히 作導掌으로 결정해 버리고 말았다.<sup>(181)</sup>

**事例：2** 鄭學潤은 平安南道 安州郡 平湖面 靑山面에 있는 畝 261斗 6升落의 所有主로서, 이 土地는 원래 奉善寺僧이 私畝를 免稅기 위하여 明禮宮에 投托한 것이었는데, 帝室財産整理 때 鄭은 그 證憑書類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이를 否認하고 이를 明禮宮 소속의 宮庄土로 편입하였으며, 鄭을 納價導掌과 作導掌으로 결정해 버리고 말았다.<sup>(182)</sup>

**事例：3** 申錫賢은 黃海道 鳳山郡 城浦에 있는 投托地所有主로서, 이토지는 당시로부터 약 200년 전에 海邊空閒地를 鄉民이 自備築堰하여 作畝한 것이 12石落이요 泥生處作畝이 4石落으로서 合計 16石落을 壽進宮에 投托하여 每年39兩씩을 壽進宮에 上納하던 投托民有地였다. 申은 證憑書類와 內藏院中 賭支捧上冊을 제출하였으나 日帝는 證憑書類 不足은 이유로 申을 役價導掌으로 결정하고 말았다.<sup>(183)</sup>

(178) 『例規類綴』중의 <導掌實地調査心得> 第4項 및 第7項 참조.

(179) 『下調書類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792) <導掌混奪入>條에는 否認된 投托導掌과 混奪入地의 事例가 統計表에 朱書되어 있다.

(180) 따라서 『臨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 pp. 77~94에 수록되어 있는 導掌의 名單中에는 「投托地」의 所有者로서의 「投托導掌」이 實際로는 많이 포함되어 있다.

(181)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026) 第1冊, <安商一條> 참조.

(182)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026) 第2冊, <鄭學潤條> 참조.

(183) 『書類閱覽及抄寫申請書』(奎章閣未整理圖書, No. 20732) 및 『各道請願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301) <申錫賢條> 참조.

**事例：4** 河肯一은 黃海道 載寧郡 餘勿坪에 390石 17斗 5升落의 田畝를 당시로부터 약 300년전에 起墾하여 壽進宮에 投托하였으며 그후 자유롭게 轉相賣買하여 왔는데 日帝는 證憑書類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認定하지 아니하고 河를 役價導掌으로 결정하여 버리고 말았다.<sup>(184)</sup>

**事例：5** 高應源은 黃海道 載寧郡 牛頭川面과 外三面에 民有地로서 轉相賣買되어 오던 民有地 田 21日半耕을 光緒 10년 10월 李毅嶺과 光緒 11년(1885년) 2월 金詮으로부터 買得하여 壽進宮에 投托하였던 바, 高는 證憑書類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이를 무시하고 高를 作導掌으로 결정하여 버리고 말았다.<sup>(185)</sup>

이러한 事例는 매우 많아서 앞서 든 宮庄土에 있어서의 投托地의 國有地化의 事例들도 이와 같은 것이다.<sup>(186)</sup>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日帝는 投托地를 거의 모두 強奪해 버리고 말았으며, 日帝가 投托導掌으로 認定한 것은 오직 8件 뿐이었다.<sup>(187)</sup> 이것은 投托地에 대한 공공인한 掠奪이었다.

또한 日帝는 證憑書類 不充分등 온갖 이유를 붙여서 104명의 導掌의 導掌權을 否認하였다.<sup>(188)</sup> 日帝에 의하여 소위 「否認導掌」이라고 불리는 이 104명은 證憑書類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理由로 一分의 賠償도 받지 못하고 말았다. 이 들 중에는 投托導掌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이유는 投托民이 가장 證憑書類를 갖추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수의 投托導掌이 소위 「否認導掌」으로 되고 다수의 投托地가 日帝의 武力에 의하여 〈無償〉으로 國有地에 強制 編入되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

日帝의 「投托導掌」의 否認과 「投托地」의 掠奪은 물론 즉각 投托地 所有主의 反抗과 紛爭을 일으켰으나, 이것은 모두 日帝의 武力으로 彈壓되었다. 또한 이러한 彈壓은 적은 賠償額에 不滿을 품은 다른 役價導掌 納價導掌 作導掌의 不平和, 投托導掌이면서 不當하게 위의 다른 종류의 導掌으로 처리된 投托導掌의 反抗을 統制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日帝는 導掌 이외에 그 밑에 있던 「監官」이나 「舍音」에 대해서는 그들이 賠償의 請願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어떠한 賠償도 하지 않았다.<sup>(189)</sup> 「監官」과 「舍音」은 賠償 없이 日帝에 의하여 解任된 것이었다.

## (2) 農民權利의 處理

日帝는 그들이 國有地에 強制 編入한 土地에 있어서의 農民의 權利는 이룬 어떠한 賠償

(184)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031) 第1册, 〈河肯一條〉 참조.

(185) 『各道請願綴』(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301) 및 「導掌決定原案」(奎章閣未整理圖書, No. 21631) 第1册, 〈高應源條〉 참조.

(186) 第四章 『宮庄土의 國有地化』 중의 事例 참조.

(187) 『臨時財產整理局事務要綱』 p. 75 참조.

(188) 『臨時財產整理局事務要綱』 pp. 118~127에는 소위 「否認導掌」의 名單과 그 面積이 수록되어 있다.

(189) 『不明文券』(奎章閣未整理圖書, No. 20955)에는 日帝의 〈國有財產整理〉에 당하여 賠償을 요구하는 소위 〈國有地〉의 〈監官〉 〈舍音〉의 請願書가 다수 첩해져 있다.



도 없이 부정하여 소멸시켰다. 이 점은 다섯가지 차원에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國有地에 강제 편입된 農民의 私有地의 私有權의 否認이다.

日帝가 國有地에 強制編入한 驛土·屯土·宮庄土·牧場土등 기타 土地·未墾地등의 土地에는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다수의 農民의 私有地가 부당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日帝는 國有地의 強制 創出을 그들의 土地調査事業의 기본정책의 하나로 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國有地에 강제 편입된 農民의 私有地에 대해서는 물론 그 私有權을 認定하지 않고 어떠한 賠償措置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土地는 日帝가 強制 創出한 國有地 全부는 아니었으나, 그 중의 매우 많은 부분에 걸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農民의 土地를 부당하게 強奪하고 農民의 權利를 침탈한 처리이었다. 이러한 土地의 一部는 그 후 紛爭地로 되어 소위 「朝鮮土地調査事業」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었다.

둘째, 官有地에 성립되어 있는 「賭地權」의 否認이다.

당시 모든 종류의 〈有土〉의 官有地·宮庄土…등에는 朝鮮王朝後朝—末期에 걸쳐 「賭地權」이라고 부르는 小作農의 自己小作地에 대한 一部의 「所有權」이 성립되어 成長하고 있었다. 당시 「賭地權」은 小作農의 小作地에 대한 所有權의 一種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당시의 農民들도 이것을 所有權으로서 物權의 일종으로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賭地權은 地主의 所有權을 排除하고 排他的 私有權으로 申告될 수 있을 만큼은 성장하지 못하고 總所有權의 약 3분의 1 정도까지 성장되어 있었다. 朝鮮王朝末期에 「賭地權」이 자유로이 賣買될 때 賭地權賣買價格이 全土地價格의 3분의 1 정도이었고 地主의 所有權價格이 全土地價格의 3분의 2 정도이었다. 따라서 「賭地權」이 성립된 土地를 특정인이 購入하려면 그 土地價格의 3분의 2를 地主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반드시 賭地權所有者農民에게 지불하여야 이를 完全히 구입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賭地權이 성립된 土地에서는 小作料率은 현저히 減少되어 一般小作地에서는 총생산량의 50%가 지배적이었는데 비하여, 賭地權이 성립된 土地에서는 25%~33%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小作農이 小作料를 아무리 怠納하는 경우에도 地主는 賭地權을 消滅시킬 수 없었고, 이를 소멸시키려면 반드시 이를 購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賭地權의 所有權의 성격에 대해서는 독립논문을 발표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한다.<sup>(190)</sup>

일제는 國有地에 강제 편입한 官有地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成立하여 發展하고 있던 小作農의 「賭地權」에 대하여 어떠한 賠償도 하지 않고 이 성장하는 所有權의 權利를 무시하여

(190) 愼鏞慶「李朝末期의 『賭地權』과 日帝下의 『永小作』의 關係—小作農 賭地權의 所有權으로의 成長과 沒落에 대하여—」『經濟論集』第6卷 第1號, 1967 참조.

소멸시키려고 하였다. 이 문제는 賭地權紛爭으로 되어 그 후 「朝鮮土地調查事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세제, 官有地에 있어서의 종래의 小作農의 慣習上의 耕作權의 否認이다.<sup>(191)</sup>

朝鮮王朝末期에는 모든 小作地에 대해서 小作農의 「慣習上의 耕作權」이 형성되어, 특별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이 이 權利가 지속되고 세습되기까지하였다.<sup>(192)</sup> 그러나 日帝는 官有地에서의 이러한 小作農의 「慣習上의 耕作權」을 일찌기 否認하였으며, 그 후 「朝鮮土地調查事業」에서는 私有地小作地에 있어서의 小作農의 「慣習上의 耕作權」도 否認하였다. 이것은 農民의 重大한 權利에 대한 부당한 侵奪이었다.

네제, 未墾地에 있어서의 農民의 「開墾權」의 否認이다.<sup>(193)</sup>

종래 國有地·公有地중의 森林·林野·未墾地에 대해서는 朝鮮農民은 누구든지 이를 開墾하면 그 開墾地의 所有權者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農民이 保有한 「開墾權」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중요한 權利이었다. 그리고 農民들은 이 「開墾權」을 통하여, 한편으로 地主制度의 전개에 따라 自作地를 잃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開墾을 함으로써 自作地를 새로 만들 수 있었다.

日帝는 그들이 國有地로 강제 편입한 未墾地등에 있어서의 農民의 「開墾權」을 否認하고 開墾을 하는 경우에는 官廳의 許可를 일도록 하되 開墾地는 農民의 所有地가 되지 못하고 所有權은 國家(위에는 朝鮮總督府)가 所有하고 農民은 자기가 開墾한 土地의 小作人이 된다고 규정하였다. 즉 朝鮮王朝時代에는 農民은 開墾地의 所有權者가 되었는데, 日帝治下에서는 開墾地의 小作人이 된 것이었다.

日帝에 의한 未墾地에 있어서의 農民의 「開墾權」의 否認은 農民이 自作地=農民의 土地 所有를 상실할 수 있는 重大한 權利를 침탈한 것이었다.

다섯째, 農民의 「入會權」의 否認이다.<sup>(194)</sup>

朝鮮王朝末期에는 농민은 國有地·公有地에서 자유롭게 薪炭의 採取, 採石·採草·放牧 등을 할 權利를 갖고 있었다.

日帝는 그들이 國有地로 강제 편입한 森林·林野에서의 農民의 入會權을 否認하고, 그들이 私有林을 國有林으로 약탈한 森林·林野에 대해서만 紛爭 문제에 대한 대응방법의 하나로 종래의 地元住民의 制限된 入會權을 부분적으로 승인한다고 하였다.

(191) 朴文圭〈前掲論文〉참조.

(192) 愼鏞廈「朝鮮王朝末期의 地主制度와 小作農民層」『曉岡崔文煥博士追念論文集』1977. 참조.

(193) 愼鏞廈〈前掲論文〉참조.

(194) 朴文圭〈前掲論文〉참조.

日帝에 의한 農民의 入會權의 否認은 農민이 갖고 있던 중요한 權利를 侵奪한 것이었다. 이상 본 바와 같이 日帝는 農耕地와 未墾地에 걸쳐서 많은 農民의 所有地까지 竊탈하여 소위 「國有地」를 강제 창출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賠償문제에 대해서는 勢力이 약간 강대했던 導掌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약간의 基礎적 賠償을 하였고, 農民에 대해서는 私有權, 賭地權, 慣習上의 耕作權, 開墾權, 入會權을 竊탈 소멸시키면서도 一分의 賠償도 하지 않은채 中대한 權利를 武力彈壓에 의거하여 빼앗은 것이었다.

## VIII. 「驛屯土實地調査」

### (1) 「驛屯土實地調査」의 目的

日帝는 이상과 같이 國有地로 強制 編入한 土地 중에서 森林・林野・未墾地를 제외한 주로 農耕地에 대해서 「驛屯土實地調査」라는 것을 시행하였다.

원래 이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驛屯土實地調査」라고 하지 않고 「國有地實地調査」라고 호칭하였다. 日帝強占(1910년 8월) 직후에 이 조사가 끝난 다음 그 조사결과에 報告書를 내면서 日帝는 이를 「驛屯土實地調査」라고 공식적으로 통일하여 호칭하고, 그 이전에는 混用되던 것을 이로부터 「國有地」를 「驛屯土」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통일하여 부르게 하였다.

「驛屯土實地調査」의 시행에 앞서 日帝는 強制創出한 國有地(소위 「驛屯土」)를 1908년 6월 度支部에 移屬시키어 管掌하도록 하고 그 管理에 대한 臨時對策을 세웠다.<sup>(195)</sup> 그 요점은 ① 國有地의 小作契約의 締結과 小作料의 徵收와 기타 小作地의 管理를 日帝의 各地方財務監督局長이 管轄하도록 하고, ② 小作契約期間은 5年以內로 限定했으며, ③ 國有地小作人의 小作權의 轉賣을 禁止하고, ④ 小作料의 種類와 數量(物納의 경우)과 金額은 종래의 慣例와 부근 類似田畠의 小作料額을 參照하여 所轄財務監督局長이 定하도록 했으며, ⑤ 小作料의 納期는 매년 11月末로 限定하고 ⑥ 小作料를 滯納하는등의 事由가 있을 때에는 小作을 罷하도록 한 것이었다.<sup>(196)</sup>

이러한 임시조치 후에 시행한 이른바 「驛屯土實地調査」는 「朝鮮土地調査事業」을 실시하기에 앞서 日帝가 強制로 創出한 國有地를 미리 일단 調査整理해 놓고 土地調査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둘러 시행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日帝의 財務署는 「驛屯土實地調査」를 「臨

(195) 『承政院日記』 隆熙 2年 6月 25日條, 『純宗實錄』 隆熙 2年 6月 25日條, 『奏議』 第136冊, 隆熙 2年 6月 25日條 및 『官報』(第4112號) 1908年 6月 29日字<勅令第40號 驛屯土管理에 關한 件> 참조.

(196) 『純宗實錄』 隆熙 2年 7月 29日條 및 『官報』(第4150號) 1908年 8月 12日字 <度支部令第27號 驛屯土管理規程> 참조.

時國有地實地調查事業」<sup>(197)</sup>이라고 불렀다. 日帝는 1909년 6월부터 1910년 9월까지 15개월에 걸쳐 日帝의 各地方의 財務監督局이 주체가 되어 총계 27萬 8,940圓(1筆當 43錢)의 경비를 들여 무려 56萬 7,083筆의 國有地「實地調查」를 했는데,<sup>(198)</sup> 이 經費는 年次로 모두 「驛屯土」小作料收入에서 조달된 것이었다.<sup>(199)</sup> 이미 그 경비의 규모에서 들어나는 바와 같이 이름은 「實地調查」이나 精密한 測量調查가 아니라 現地踏査정도의 간이조사에 불과하였다.

驛屯土實地調查의 目的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強制 創出한 소위 「國有地」의 所在와 面積을 實地로 確認하여 「朝鮮土地調查事業」實施 以前에 國有地土地台帳을 만들어 文書化해두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시한 것이 國有地(驛屯土) 地積의 개략적 調査와 소위 「國有地臺帳(驛屯土臺帳)」의 작성이었다.

둘째, 國有地의 小作人을 조사하여 명확히 하고, 國有地에 성립되어 있는 「賭地權」등 각종 農民의 權利나 中畝主의 개채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小作認許證」을 交付하도록 하고<sup>(200)</sup> 「小作人名寄帳」을 調製하러 하였다.

셋째, 小作料를 재조정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金納化함과 동시에 이를 引上하여 小作料收入을 增加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驛屯土實地調查」의 三大目標은 모두 1909년 6월 이전까지 日帝가 強制 創出한 國有地를 文書化·臺帳化하여, 다음에 뒤이어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朝鮮土地調查事業」에 國有地로써 申告되도록 事前措置를 補強하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日帝의 「國有地」強制 創出에 따르는 紛爭問題는 처음부터 다루어지지 않고, 그 후의 土地調查事業으로 계속 미루어 지지만 하였다. 「驛屯土實地調查」의 목적은 「朝鮮土地調查事業」實施 以前에 「國有地」(驛屯土)를 確保하여 이를 明確히 把握하고 文書化·臺帳化하여 놓으려는 곳에 초점이 있었다.

日帝는 「驛屯土實地調查」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60個班의 調査班을 편성하였다.<sup>(201)</sup>

- 漢城財務監督局…………… 8班
- 公州財務監督局……………13 "
- 全州財務監督局…………… 8 "
- 大邱財務監督局……………14 "

(197) 度支部『財務彙報』第19號, 〈國有地調查에 關한施設〉(元山財務監督局長報告) p. 22.

(198) 朝鮮總督府『驛屯土實地調查概要』1911. p.29 참조.

(199) 『奏議』第148冊, 「隆熙三年度歲入歲出追加額」第3款 및 第10款 참조.

(200) 〈國有地實地調查細則〉(大邱財務監督局長報告) 第38條, 『財務彙報』第19號, p.18에 의하면 〈小作認許證〉을 交付할 뿐 만 아니라 國有地實地調查의 監督員은 牽掛할만한 事由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國有地 小作人을 交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01) 『驛屯土實地調查概要』p. 4 참조.

平壤財務監督局……………12 //  
 元山財務監督局…………… 5 //  
 合 計……………60班

(備考：光州財務監督局에는 1910년 2월 全州財務監督局 所屬의 것인 8班을 配屬시켰음.)

各道財務監督局은 各調査班別로 調査對象地域을 配定하였다.

各調査班은 各財務監督局에서 日本人主事 3名씩을 選出하여 18명을 확보하고, 다시 各財務監督局을 통하여 臨時로 日本人主事 42명을 增員하여 道합 60명을 班長으로하고, 各調査班에 技手 1명과 通譯 1명을 두어 各班을 3명으로 편성하였다. 技手는 帝室財産整理局 技手를 차출하여 이를 兼任시켜서 전적으로 測量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 舊舍音등 종래 驛屯土의 小作料 徵收 및 實地의 事情에 精通한 者를 「臨時雇員」이나 「稅務員」으로 採用하였고<sup>(202)</sup> 때에 따라 調査班에 1명씩 配屬시키기도 했으며, 各調査班에 2명의 測量人夫를 부치기로 하였다.<sup>(203)</sup> 日帝는 測量人夫까지도 가능한 한 舊舍音을 雇傭하도록 하였다.<sup>(204)</sup> 또한 이 調査를 단시일에 行하기 위하여 各財務局에 國有地調査係를 新設하여 管内의 「驛屯土實地調査」의 實行 및 督勵를 담당케 하고, 各財務局에 1명 내지 2명의 「監督員」을 두어 항상 실지를 巡回하면서 各調査班을 指導監督하도록 하였다.<sup>(205)</sup>

## (2) 驛屯土面積의 調査

日帝의 驛屯土面積의 調査는 다음의 세가지 作業에 집중되었다.

첫째, 隱結을 發見하여 驛屯土의 面積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驛屯土의 隱結은 단순화하면 주로 두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 바, 그 하나는 驛屯土중에서 陳荒地가 발생하여 이를 臺帳에서 제외했다가 그 후 耕作하여 臺帳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오, 다른 하나는 驛屯土의 耕作者가 그에 인접한 國有 또는 宮房所有의 未墾地를 開墾하여 耕作하는 경우이었다.

日帝는 隱結을 발견하기 위하여 ① 「隱土는 局外에서 容易하게 窺知할 수 없기 때문에 驛屯土의 所在及 그 收租事務에 精通한 舊舍音을 稅務員으로서 採用하여 地方에 있어서 隱土의 有無所在를 調査」<sup>(206)</sup> 시켰다고 쓰고 있는 바와 같이 舊舍音을 「雇員 또는 囑託員」<sup>(207)</sup> 으로 썼고, 때로는 「稅務員」으로 採用하여 隱結을 찾아내도록 하는 方法을 썼으며, ② 이

(202) 「國有地實地調査心得」(公州財務監督局長報告) 第6條 및 第7條, 『財務彙報』 第19號, p. 2 참조.

(203) 『驛屯土實地調査概要』 pp.3~4 참조.

(204) 「國有地實地調査細則」 第6條 『財務彙報』 第19號 p. 12 참조.

(205) 『驛屯土實地調査概要』 pp. 14~15 참조.

(206) 『驛屯土實地調査概要』 pp. 10~11.

(207) 『財務彙報』 第20號<度支部所管國有地實地調査心得>(司稅局報告) 第10條 및 第11條, p. 20 참조.

와 동시에 舊畝音들이 所持한 『收租成冊』의 제출을 命하여 『驛屯土臺帳』과 對照시켰으며, ③ 隱結이 다수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地方에 대해서는 舊帳簿와 每筆地의 對照를 행하여 隱結의 查出을 기도하였으며, ④ 그 한 방법으로서 『收租成冊』所揭의 總結數를 『量案』登錄의 驛屯土總結數와 對照하여 差減을 낳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事由를 調查하도록 하였으며, ⑤ 隱結을 密告하는 者에게는 賞與金이나 小作權을 부여하는 등의 악랄한 방법까지 택하였다. (208) 隱結을 密告하는 者에게 賞與金을 지불하는 방법은 이미 1908년 6월부터 一般土地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있었다. (209) 「國有地」의 隱結發見을 위하여 日帝는 <隱土發見事務處理順序>라는 훈령을 만들어 각지방 財務署와 臨時國有地調查所에게 시달하였다. (210) 隱結의 發見을 위해서 日帝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다. (211)

이러한 隱結의 發見에 의하여 日帝의 驛屯土面積은 현저히 증가하였다. 원래 日帝가 國有地實地調查에 착수할 때 推算한 國有地總筆數는 39萬 1,988筆이었는데, 隱結 등으로 인한 筆數의 急激變경으로 1909年 12月末까지 새로 推算한 國有地 總算數는 두터 86萬 2,990筆로 적증하였다. (212) 그러나 驛屯土부근의 未墾地의 新開墾地를 驛屯土의 隱結로 編入한 것

(208) 『財務彙報』第24號(1909年 10月 10日發行) pp. 3~4 참조. 여기에는 <隱土密告賞與下附申請書>와 <隱土密告小作權附與申請書>의 두개의 樣式이 수록되어 있는 바, 隱土密告者에게 ① 賞與金과 ② 小作權을 주는 방법을 사용했음을 증명해 준다.

(209) 『韓國財務經過報告』第11回, pp.32~42 참조. 日帝는 이를 위하여 全文 5條로 된 <隱土發見者賞與內規>를 제정했는데 그 처음 2個條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第一條. 隱結을 發見하여 密告하는 者에게는 이에 대한 結稅全額 4分の 1에 相當하는 金額을 賞與로서 給與함. 但 그 發見이 至難한 것에 대해서는 特히 結稅金 20分の 1 以內에 相當하는 金額을 贈與할 수 있음.

第二條. 賞與는 財務監督局長의 稟請에 의하여 이를 行함(以下略).

(210) 『財務彙報』第24號, pp 1~2 <隱土發見事務處理順序>(大邱財務監督局長作成)는 다음과 같은 全文 8條의 訓令이었다.

第一條. 隱土라 함은 度支部所管 國有地로 隱漏未陸摠한 土地를 謂함.

第二條. 隱土를 發見할 時는 其發見할 日에 屬한 年度부터 小作料를 徵收함.

第三條. 財務署 又は 調査所掌이 隱土를 發見할 時는 附近國有地에 比準하여 其小作料를 決定함 이 可함.

第四條. 前條의 隱土는 第一號書式 隱土發見報告書를 作成하여 速히 本局에 報告함 이 可함.

第五條. 隱土發見報告書는 其發見에 至하기까지의 狀況及 端緒等 參考될만한 事項을 附記함 이 可함.

第六條. 第二條에 依하여 徵收한 小作料로 驛屯土事務處理順序 第六條의 決定報告書 提出後가 되는 時는 即時 追加決定報告書를 提出함 이 可함.

第七條. 密告에 依하여 發見한 隱土로 左에 該當한 者가 有할 時는 隱土發見報告書와 共に 稟中 함 이 可함.

一. 施賞할 必要가 有한 者는 其密告의 狀況과 施賞의 程度를 詳記하여 第二號에 依함.

二. 小作權의 附與를 必要한 者는 其小作料를 滯納함이 無한가 中間에 小作의 弊를 生케 함이 無한가 善히 稽查하여 妨碍가 無함으로 認할 時는 其理由를 詳記하고 第三號書式에 依함.

附則第八條. 本規定은 隆熙三年 七月一日 以後 發見한 隱土에 適用함.

(211) 「國有地實地調查心得」第20條 『財務彙報』第19號. p. 5 참조.

(212) 『韓國財務經過報告』第4回(1909年 下半年期) pp. 124~125 참조.

은 큰 문제점을 내포한 것이었다.

이 때 日帝가 調査한 驛屯土面積은 東洋拓殖株式會社에의 出資分과 賃貸地를 제외하고 다음 제17표와 같이 총계 11萬 8,947町步에 달하는 것이었다.

<표 17> 「驛屯土實地調査」에 의한 驛屯土地目別面積

地 目 別	面 積	百分比(%)
畓	4萬 4,631町步	37.52
田	4萬 5,778 "	38.49
垵	3,183 "	2.68
其 他	2萬 5,353 "	21.31
合 計	11萬 8,947 町步	100.00

資料：『驛屯土實地調査概要』p.6에서 작성.

註：이 자료에서서도 地目別合計와 日帝가 제시한 合計는 2町步 差異가 있으나 어디에 誤植이 있는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地目別 比率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여기에 大韓帝國政府가 東洋拓殖株式會社에 出資한 2,436町步 및 同會社에 賃貸한 7,485町步를 합하면 驛屯土總面積은 12萬 8,868町步로서, 소위 「驛屯土實地調査」이전의 종래의 驛屯土推算總面積 10萬 3,179町步에 비하여 24.9%가 增加한 것이었다. 그 增加의 주요원인을 日帝는 「隱土의 發見」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다.<sup>(213)</sup>

이 때 調査한 各道別 國有地의 面積, 筆數, 小作人戶數를 보면 다음 제18표와 같다.

둘째, 종래의 面積單位인 斗落·日耕을 坪數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종래의 驛屯土에 대한 정책은 收租만이 목적이었지 그 拂下나 讓與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斗落단위나 結負束단위의 면적 파악으로 조금도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日帝는 驛屯土를 장차 日本移民이나 日帝資本에게 拂下할 것을 전제하고 있었으므로 日本의 土地面積單位인 坪·町으로 환산하여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였다.<sup>(214)</sup>

日帝는 斗落·日耕·結負의 坪·町으로의 환산과정에서 추정했던 것 보다 약간 더 많은 面積의 增加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東洋拓殖株式會社의 경우에는 특히 심하여 大韓帝國政府가 出資한 分에 있어서는 후에 結을 町으로 測定한 결과 78.3%의 面積의 增加를 보았다.<sup>(215)</sup> 때로는 고의로 斗落·日耕으로 표시되어 있으면서 不當히 面積이 넓은 筆地에 대

(213) 『驛屯土實地調査概要』p. 6 참조.

(214) 『財務彙報』第20號〈度支部所管國有地實地調査心得〉第6條, p. 19에 의하면, 日帝는 坪數 외에 실제로는 舊斗落數 結負數 夜味數도 附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5) 東洋拓殖株式會社 『東洋拓殖株式會社十年史』1919, p. 36 및 黑瀬郁二 「日露戰後の『朝鮮經營』と東洋拓殖株式會社」 『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12輯, 1975, 日本 東京. 참조.

〈丑18〉 「驛屯土實地調査」의 各道別 國有地面積・筆數・小作人員表

道 名	畓		田		垓	
	面 積	筆 數	面 積	筆 數	面 積	筆 數
京 畿 道	19,644,295	32,642	16,164,279	39,510	1,310,762	15,236
忠 清 北 道	5,214,898	9,877	3,303,631	7,560	485,357	4,013
忠 清 南 道	13,893,217	18,667	2,655,891	9,032	632,173	4,834
全 羅 北 道	11,061,791	14,576	1,666,873	6,517	347,975	2,888
全 羅 南 道	12,123,613	22,321	3,348,191	12,010	488,074	5,058
慶 尙 北 道	9,284,644	21,103	5,500,680	17,629	933,600	9,851
慶 尙 南 道	9,854,424	24,757	4,512,225	14,784	648,839	7,411
黃 海 道	23,313,281	29,224	29,427,482	38,729	877,709	8,087
江 原 道	6,786,729	11,973	9,582,530	19,456	930,946	8,916
平 安 南 道	10,770,856	9,732	12,191,620	15,871	321,293	3,113
平 安 北 道	7,795,696	8,957	24,837,429	21,791	571,451	7,263
咸 鏡 南 道	3,271,204	5,415	15,523,125	20,894	1,114,300	10,515
咸 鏡 北 道	881,233	883	8,621,535	10,691	876,144	5,708
合 計	133,895,881	210,127	137,335,491	234,474	9,551,623	92,893
道 名	其 他		計		小作人員	小作人 百分比
	面 積	筆 數	面 積	筆 數		
京 畿 道	17,333,440	2,803	54,452,776	90,191	42,535	14.97
忠 清 北 道	282,254	354	9,286,140	21,804	11,859	4.17
忠 清 南 道	3,100,395	831	20,281,676	33,364	18,697	6.58
全 羅 北 道	2,639,623	1,400	15,716,262	25,381	15,772	5.55
全 羅 南 道	796,112	1,489	16,755,990	40,878	24,291	8.55
慶 尙 北 道	1,209,385	1,354	16,928,309	49,937	27,554	9.69
慶 尙 南 道	968,076	1,359	15,983,564	48,311	26,817	9.44
黃 海 道	19,737,359	8,285	73,355,831	84,325	35,532	12.50
江 原 道	4,672,253	1,990	21,972,458	42,335	19,608	6.89
平 安 南 道	15,404,588	3,257	38,698,357	31,973	16,025	5.64
平 安 北 道	8,093,931	3,820	41,301,507	41,831	18,435	6.49
咸 鏡 南 道	1,068,804	1,476	20,977,433	38,300	18,918	6.65
咸 鏡 北 道	753,631	1,168	11,132,543	18,184	8,184	2.88
合 計	76,059,851	29,586	356,842,846	567,080	284,228	100.00

資料：『驛屯土實地調査概要』 p. 7에서 작성.



해서 精密한 量定을 해 본 결과 倍額 이상의 面積增加를 얻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sup>(216)</sup>

세제, 종래 驛屯土의 地圖가 없던 것을 概略的 地圖를 調製하는 것이었다.

日帝는 「驛屯土實地調査」에서 마치 「測量」을 한 것 처럼 보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國有地는 全國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데 技師는 60명 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 때에는 驛屯土에 대한 全面的인 測量을 실시하지 못하고 重要地域과 그들이 문제지역이라고 본 곳만 중점적으로 선택하여 概略的 測量을 하는데 그치었다. 따라서 地籍圖 작성도 정밀한 것은 이 때 전혀 만들 수 없었고, 概略的인 模寫의 스캐치만 작성하여 첨부하는데 그치었다.<sup>(217)</sup> 물론 〈地番〉같은 것도 이 때 붙인 것은 臨時地番에 불과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日帝가 이 때 強制創出한 12萬 8,868町步의 「國有地」중에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 면적의 民有地가 日帝에 의하여 掠奪되어 國有地에 強制編入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남겨진 資料로서는 이것을 正確하게 밝힐 수는 없다. 꼭 알고 싶은 경우에는 間接的 推定을 할 수 밖에 없다. 日帝의 投托地·混奪入地·隱結·未墾地사이의 既墾地 등에 대한 掠奪을 除外하고도 日帝가 民有地를 「國有地」에 強制編入한 기본 원리는 〈有土〉와 〈無土〉를 區分하지 않고 〈無土〉까지도 「國有地」에 編入시킨 곳에 있었으므로, 하나의 方法은 「甲午陸摠·乙未查辦」 때(1894~95년)의 宮庄土의 〈有土〉와 〈無土〉의 比率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다.<sup>(218)</sup> 日帝의 「朝鮮土地調査事業」에 가장 가까운 時期의 〈有土·無土別〉統計를 정확히 낸 것은 이것이 唯一하게 현재 남아서 발견된 자료이다. 이 기준에 의거한다면, 〈無土〉의 比率은 75.08%이 있으므로, 日帝는 약 9萬 7,650町步의 民有地를 소위 「國有地」에 強制編入한 것이 된다. 즉 이 때 日帝가 強制創出한 약 12萬 8800餘町步의 「國有地」 중에서 약 9萬 6,700町步가 民有地를 掠奪한 것이고, 약 3萬 2,100町步가 실체의 〈官有및皇室有〉의 土地였다고 일단 推定해 볼 수 있다.

### (3) 驛屯土小作人의 調査

日帝는 驛屯土의 實地의 小作人을 調査하는 것을 「驛屯土實地調査」의 重要목적의 하나로

(216) 『驛屯土實地調査概要』 p. 10 참조.

(217) 「國有地實地調査心得」第23條「前掲書」p. 5 및 〈國有地實地調査節次〉第47條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日帝는 이때 「目測」 즉 肉眼에 의한 測定까지 인정한 형편이었다.

(218) 이 기준을 사용할 경우의 正確한 計算方法은 ① 甲午陸摠·乙未查辦 때의 〈無土〉의 비율에 의한 日帝의 「國有地」에서의 〈無土〉의 面積을 算出하고 ② 다음 그로부터 甲午更張 때 宮庄土의 免稅措置廢止로 인하여 1907년 까지 사이에 消滅된 無土宮庄土의 面積 7,899結을 差減한 후에 ③ 다시 日帝가 國有地에 編入한 投托地·混奪入地·隱結·未墾地 사이의 既墾地의 面積을 算出하여 加算하는 것이다. 그러나 ③의 計算은 불가능한데 ③의 面積이 ②의 面積을 充分히 相殺할 수 있다고 추정되므로 여기서는 이 과정을 생략하였다. 正確한 資料가 없으므로 여기서 알아보는 것은 여차피 概略的인 推定인 것이다.

삼았다. 왜냐하면 小作料의 徵收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小作人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驛屯土에는 거의 모두 <賭地權>이 형성되어 이 權利가 자유롭게 賣買・讓與・相續되고 있었으며, 이것이 所有權의 性格까지 띠도록 성장하고 있어서 <賭地權> 所有者는 <中筋主>의 기능을 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배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제는 驛屯土에서의 <賭地權>을 否定하고, 이들을 《中間小作》에 불과하다고 하여 처음부터 부인해서 배제하려고 하였다. (219)

日帝는 驛屯土의 小作人으로 하여금 그의 氏名을 記載한 標杭을 小作地에 세우도록 하고 實地調査 때에는 小作人으로 하여금 入會토록 하여 小作人을 확인한 다음 「小作認許證」을 교부하였다. (220)

또한 ① 舊文簿에 의하여 比較的 넓은 면적의 土地를 同一人이 小作하는 者를 가려내어 과연 同一人이 그 土地全部를 小作하는가 아니하는가를 探索하도록 하고, ② 종래의 收租文簿에 의하여 그 小作料額의 總額에 있어서의 小作人의 申立額과를 對照토록 하고 ③ 기타 地方의 事情에 精通한 者및 《稅務員》을 利用하여 事實을 內偵探시키는 방법을 채용하여 <賭地權>을 調査해서 이를 부인하도록 하였다. (221)

日帝의 이러한 방법의 조사로 驛屯土에 있어서의 <賭地權>은 대부분 색출되고 부인되었

(219) 『國有地實地調査細則』第24條, 『財務彙報』第19號, p. 16 참조.

(220) 『官報』(第4432號). 1909年 7月 19日字 <度支部令 第20號 驛屯土管理規定改正> 第2條 참조. <小作認許證>은 그 地方의 財務監督局長이 發給하도록 하고 그 樣式은 다음과 같았다. (第一號書式)

國有地小作認許繳						
表	番 號	第 號	小作期間	自 隆熙何年何月		
	小 作 人 名			至 同 何年何月		
小 居 住 姓 名		何郡何面何洞		何某		
土 地 所 在		地 番	地 目	坪 數	小 作 料	
何 郡 面 洞		—	畝	二百垓	三圓	
契 印						
面	小作認許의 證으로 此書를 授與함					
	隆熙 年 月 日					
何財務監督局 ㉔						

으나 이것은 즉각 <賭地權紛爭>을 야기시켰다. 첫째, <賭地權>을 타인에게 賃貸해 주어 收益을 얻어 오던 <中畝主> 상태의 賭地權 所有者들이 이에 불복하여 紛爭을 일으켰으며, 둘째로 <賭地權>을 가진채 小作人으로서 驛屯土를 경작하던 賭地權所有小作人이 이에 불복하여 紛爭을 일으켰다. 이 문제는 해결을 보지 못하고 「朝鮮土地調査事業」으로 移越되었다.

(4) 驛屯土小作料의 徵收增加

驛屯土의 小作料의 徵收增加는 日帝의 「驛屯土實地調査」의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었다. 日帝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첫째, 종래의 導掌이나 습습이 가지고 있던 『賭租私簿』를 가능한 한 모두 수집하였다. 또한 이 文書가 實額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知事人에게 尋問하도록하였다.<sup>(222)</sup> 小作料 徵收 臺帳에는 때때로 公簿와 私簿가 있었는데, 公簿는 <舊量案>, <新量案> 및 國有地에 대한 政府의 徵收額을 各人別로 揭上한 『收租原簿』 『收租成冊』등으로서 이전의 經理院 및 郡衙에 비치되어있던 것을 말하며, 私簿는 導掌·舊습習 또는 中畝主가 所持한 一種의 備忘錄으로서 小作人으로부터 收納하는 實小作料額을 揭上한 것이었다. 驛屯土의 實小作料額을 알기 위하여 日帝는 私簿의 蒐集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sup>(223)</sup> 이외에 私簿는 ① 隱土의 發見 ② 中畝主의 發見 ③ 驛屯土等級鑑定資料 ④ 土地所有區分 不明瞭한 것의 決定資料 등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수집되었다.

둘째, 驛屯土의 肥沃度의 等級등은 地域과 每筆地에 따라 현저한 差異가 있었기 때문에 公定한 小作料를 징수하려면 每筆地의 收穫高를 調査할 필요가 절실하였다. 그러나 日帝의 「驛屯土實地調査」는 이 작업을 하지 못하고, 驛屯土를 대략 3等級으로 나누어<sup>(224)</sup> 그 各級

裏       面	一 此認許證은 他人에게 放賣 讓與 典當 又は 貸與하야도 無効로 함
	二 小作料는 此認許證에 記載한 額 以外에 徵收호이 無호
	三 小作料의 納付는 每年 月 日을 過호을 不得호
	四 小作人이 每年 小作料를 完納호 時는 小作期間이 滿了호 時에 更히 繼續하야 小作호을 認許호
	五 小作人이 左開의 各所爲가 有호 時는 小作認許를 繳消호
	一 小作料를 不納호 時
	二 土地形狀을 擅히 變更호거나 又は 土地를 荒廢케호 時
	三 小作을 他人에게 讓與 賣買 典當 又は 轉貸호 時
四 此外 不正當호 所爲가 有호 時	

(221) 『驛屯土實地調査概要』 pp. 8~9 참조.

(222) 「國有地實地調査細則」 第17條 『財務彙報』 第19號, p. 14 참조.

(223) 『驛屯土實地調査概要』 pp. 9~10 참조.

(224) 『財務彙報』 第20號 <國有地實地調査에 關한 施設> pp. 15~16 및 <國有地實地調査細則> 第20條,

과 地位品等이 비슷한 民有地를 標準地로 選定해서, 그 民有地의 收穫高, 小作料額 및 그 地方의 小作慣例를 조사하여 이에 準해서, 驛屯土小作額을 類推하도록 하였다. (225)

日帝는 民有地標準地의 收穫高로서 水原勸業模範場이 光武 10年(1906) 水原부근과 群山中에서 畚의 坪測을 한 結果를 참고하도록 지시했는데, 「坪測은 大概 總面積의 實收量에 比하여 多量될을 通常이라 함」(226)이라고 하여 그 結果가 事實 보다 높을 評價될 것을 알면서 이를 參考하도록 지시하였다.

日帝는 等級의 評價는 ① 地味의 肥瘠 ② 水利의 便否 ③ 耕耘의 難易 ④ 運搬의 便否 ⑤ 日光의 射影등을 고려하도록 원칙을 정하였으나(227) 그 실제 적용에서는 극히 非科學的인 鑑別과 評價를 함에 그치었다. 또한 日帝의 地質 肥沃度의 鑑別方法도 科學的 조사가 아니라 주먹구구식의 소위 「簡易鑑別方法」에 의거한 것이었다. (228)

종래 驛屯土小作料는 一般民有地의 小作料率 보다 훨씬 低率이어서 총생산량의 1/4~1/3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一般民有地는 1/2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日帝가 인근 民有地의 小作料額과 小作慣例를 적용하여 驛屯土의 小作料額을 類推한 것은 小作料率과 小作料額을 一舉에 실로 大幅 引上시키는 것이 되었다.

세제, 종래 驛屯土의 小作料는 金納과 物納을 並用하였는데, (229) 日帝는 이를 統一的으로 <定租>의 <金納>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230) 金納制를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穀價의 升降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日帝는 穀價를 1906~1908년까지 3個

『財務彙報』第19號, p. 15 참조.

(225) 『驛屯土實地調查概要』 p. 19 참조.

(226) 『財務彙報』第23號(1909年 9月 25日發行) <國有地實查收穫及地質鑑別法> p. 2.

(227) 「國有地實地調查心得」第18條, 『財務彙報』第19號, p. 4 참조.

(228) 『財務彙報』第23號, <國有地實查收穫及地質鑑別法> pp. 2~3에서는, <韓國耕地의 肥瘠에 關한 簡易鑑別의 方法>이라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지시하고 있다.

(甲) 村落附近은 多히 肥沃하고 就中 門前玉畚이라는 諺과 갖치 人家의 前에 有한 者는 特히 膏腴함.

(乙) 畚은 水漚이 好한 地를 可다함. 濕氣를 含한 低地라도 乾燥에 失한 境遇보다는 遙히 優勝함.

(丙) 底土, 砂層은 有하여 透水力이 強한 畚은 生産力이 多함.

(丁) 邑內洞內의 田畚은 大概 膏腴함.

(戊) 刈株가 大할 處는 田畚 共히 生産이 多함.

(己) 田은 北方 又は 西方을 塞하고 南方 又は 東南方에 開展한 處를 可다함.

(庚) 赭色이오 粘氣가 乏한 土地는 瘠薄하여 겨우 粟의 耕種을 耐함.

(辛) 砂質이오 透水力이 強한 處 又は 重粘質의 田地는 生産力이 少함.

(壬) 一般이 黑味를 帶한 地는 肥하고 鼠色으로부터 灰色에 移하여 漸次 生産力이 減하고 赤赭色土가 最劣함.

(癸) 莎草類外에 繁茂한 處 殊히 其高處는 地味가 瘠惡함.」

(229) 『純宗實錄』隆熙 2年 7月 29日條 及 『官報』(第4150號) 1908年 8月 12日字 <度支部令第27號 驛屯土管理規定> 第6條 참조.

(230) 『官報』(第4432號) 1909年 7月 19日字 <度支部令第20號 驛屯土管理規定改正> 第1條. 참조. 이 때 小作料의 定租金納額은 所轄財務監督局長이 이를 定하도록 하였다.

年間の 平均穀價에 의거하도록하고 附近의 市場 및 面里長에게 가서 이를 調査하여 그 結果를 例年 各財務署에서 賂租를 賣却한 實績과 對比해서 採擇決定하도록 하였다. 또한 穀價는 調査의 時期 如何에 의하여 高低가 생기므로 全國劃一的으로 秋收 3個月後에 있어서의 價格에 의거하도록 하였다.<sup>(231)</sup> 日帝는 만일 과거 3개년간의 平均價格을 判明할 수 없을 때에는 每年 음력 10월의 市場價格에 의거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다.<sup>(232)</sup> 이것은 財務署가 一方的으로 穀價를 採擇決定하여 결과적으로 引上된 定額小作料를 金納으로 農民들에게 부과하도록 한 것이며, 이것은 日帝도 처음부터 공공연히 인정한 것이었다.<sup>(233)</sup> 뿐만 아니라 農民들은 秋收直後에 農產物을 賣却하는데, 日帝는 小作料用 穀價를 秋收 3個月後의 穀價를 적용케 함으로써 小作料金納額이 다시 부당하게 높이 책정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日帝의 「驛屯土實地調査」는 驛屯土의 小作料를 總래의 總生産量의 25~33%로부터 더욱 引上하게 되어 日帝의 小作料收入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日帝의 「驛屯土實地調査」의 事後報告書인 『驛屯土實地調査概要』는 驛屯土實地調査가 一般標準農地의 類地調査의 小作料에 의거하였지만 이를 一定比率로 控除하였으므로 小作料率이 引上되지 않은 것 처럼 기록하고 있다. 즉 民有標準地가 定租일 경우에는 小作料調査決定額의 1割을 控除하여 驛屯土의 小作料額을 결정해서 金納으로 환산하도록 하고, 民有標準地가 打租일 경우에는 1割 9分을 控除하여 金納으로 환산하되 여기에 地稅部分을 加算하였다는 것이다. 日帝는 民有標準地가 定租일 경우 1割을 控除하는 이유로 民有地에서는 地主가 種子를 負擔하고 金融의 便誼를 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으며, 民有標準地가 打租일 경우 1割 9分을 控除한 이유로 打租는 14년에 자동적으로 小作料率이 切下되지만 驛屯土와 같이 定租로 하는 경우는 14년에도 小作料率이 固定하게 되는데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하였다.<sup>(234)</sup> 이렇게 되면 驛屯土의 小作料率이 引上되지 않은 것 같은 印象을 주지만 이것은 事實이 아니었다.

日帝의 「驛屯土實地調査」當時의 報告에 의하면 日帝는 民有標準地가 定租일 경우에는 그 小作料額을 그 대로 驛屯土小作料로서 金納으로 환산하였고, 民有標準地가 打租일 때에는 地稅를 除外하고 1割을 控除했는데 이것은 驛屯土에서는 小作農이 地稅를 負擔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었다. 당시의 日帝의 調査報告는 다음과 같이 위의 사실을 증명하여 기록하고 있다.

(231) 『驛屯土實地調査概要』 p. 20 참조.

(232) 『財務彙報』第19號 〈國有地調査에 關한施設〉(元山財務監督局長報告) (15) p. 25 참조.

(233) 「國有地實地調査細則」第36條, 『財務彙報』第19號, p. 18 참조.

(234) 『驛屯土實地調査概要』 pp. 20~21 참조.

「二. 收穫高及 小作料는 其調査의 結果를 比較해야 正當호 者를 選호되 總히 正當호 時는 此를 平均호 者를 揭호며, 但 打租는 其十分의 一을 減호 者를 小作料로 호고 定租는 直히 其小作料를 記入호.  
三. 小作人의 負擔호 地稅는 其稅額을 小作數量 左方에 併記호이 可호.」<sup>(235)</sup>

당시의 日帝의 다른 報告書도 一般農地(打租)의 一割減을 驛屯土의 小作料로 결정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236)</sup> 一般農地의 打租의 小作料率이 總生産量의 4割이었고, 여기에 地稅가 가중된 것이었다.

당시 地稅는 總生産量의 약 1割이었으므로, 地稅를 小作人이 負擔해야 하는 驛屯土에 있어서는 小作人의 負擔(小作料+地稅)은 日帝의 當時의 報告대로 따르면 總生産量의 5割에 달하여 一般農地의 打租의 小作料率(5割)과 완전히 一致하는 것이다. 이것을 穀價로 환산하여 <代金納>으로 징수한 것이었다. 이것은 종래의 驛屯土小作料率인 總生産量의 25~33%로 부터 50%로 대폭 引上된 것이었다.

日帝도 當時의 調査報告는 一般의 實納小作料를 驛屯土小作料의 기준으로 했으며,<sup>(237)</sup> 「實地에 適應한 引上」이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완곡하게 기록하고 있다.

「小作料設定은 最히 重大호 關係를 有호야 標準으로써 一律에 推치 아니호이 可치 아니호 故로 標準地調査의 決호호 者는 一應 此를 局에 報告호고 尙且 同時에 將來의 小作料에 對호는 比較及 實地에 適應호 引上의 程度 其他의 意見을 報告호이 可호.」<sup>(238)</sup> (傍點一筆者)

명백한 점은 日帝의 「驛屯土實地調査」의 小作料策定方法에 의하여 종래 總生産量의 25~33%의 小作料를 납부해 오던 驛屯土의 小作人들이 이제는 총생산량의 50%정도를 金納으로 납부하게 되어 小作料率이 대폭 引上되고 그만큼 小作人의 負擔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표 19> 「驛屯土實地調査」에 의한 改定小作料收入額 (1910)

地 目 區 分	改定小作料額(圓)	地目別百分比(%)
畓	780,022	67.6
田	327,729	28.4
垡	40,000	3.4
其 他	7,369	0.6
計	1,155,123圓	100.0

資料 : 『驛屯土實地調査概要』 p. 23에서 작성

(235) 「國有地實地調査細則」第21條 2 및 3, 『財務彙報』第19號, p. 15.

(236) 『財務彙報』第20號. <度支部所管國有地實地調査心得> 第14條, p. 20 참조.

(237) 『財務彙報』第19號. <臨時國有地調査에 關호決定事項> 第21, p. 26 참조.

(238) 『財務彙報』第19號 <臨時國有地調査에 關호決定事項> 第26, p. 27.

「驛屯土實地調査」의 결과 改定된 小作料는 1910년의 경우 제19표와 같이 총액 115萬 5,123圓에 달하는 대폭 증가된 것이었다.

驛屯土小作人の 小作料額이 대폭 引上되어 小作人の 負擔이 增加된 것은 바로 日帝의 驛屯土小作料의 收入의 增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907년 11월 宮內府收租官의 廢止와 함께 同年 驛屯土小作料의 徵收는 度支部로 넘어 왔는데, 日帝가 이를 장악하여 특히 驛屯土實地調査를 실시한 1909년부터는 驛屯土 小作料收入은 急増하여, 19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08년에는 185%, 1909년에는 244%, 1910년에

〈표 20〉 「驛屯土實地調査」에 의한 驛屯土(國有地)收入增加

年 度	收 入 金 額	1906年度에 對한 增加額	同 增 加 率
1 9 0 6	300,000圓	圓	%
1 9 0 7	586,804	286,804	95
1 9 0 8	856,957	556,957	185
1 9 0 9	1,034,043	734,043	244
1 9 1 0	1,130,251	830,251	276
1 9 1 1	1,306,821	1,006,821	335

資料：『驛屯土實地調査概要』 p. 32.

備考：① 元宮內府所管 當時에 있어서의 1906年度の 收入은 그 實數가 判明되지 않았을지라도 總額 30萬圓을 넘지 않았으므로 假定하여 30萬圓으로 揭較하였음.

② 1910年度の 收入은 1911年 3月까지의 實數額에 東洋拓殖株會社의 出資地에 대한 配當額及 金庫閉鎖期까지의 推算額을 加算한 것임.

는 276%, 1911년에는 335%나 增加하였다. 이것은 日帝가 驛屯土를 장악한 후 실질적으로 小作人으로부터 小作料를 얼마나 增加徵收시켜 왔는가 하는 사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5) 「驛屯土實地調査」에 대한 農民의 反抗

日帝의 소위 「驛屯土實地調査」는 소위 「朝鮮土地調査事業」 실시 직전에 「國有地(미래의 朝鮮總督府所有地)」를 強制確保하여 이를 文書化함으로써 고착화하고 小作料收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이러한 植民地 收奪政策에 대해서 韓國農民들은 격렬히 反抗하였다. 그 反抗鬪爭의 형태는 주로 세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義兵>의 공격이다. 義兵들이 전국각지에서 日帝의 國有地調査를 반대하고 그 調査員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日本軍隊 또는 警察官憲의 掩護를 받아야만 하였다.<sup>(239)</sup>

이것은 日帝의 「驛屯土實地調査」에 대한 매우 심각한 威脅이었다.<sup>(240)</sup> 특히 江原道 淮陽郡

(239) 『韓國財務經過報告』 第4回, p. 132 참조.

(240) 『財務彙報』 第19號, <國有地調査에 關한 施設> p. 23에서는, 예컨대 調査班에게 다음과 같이 義

및 咸鏡南道 安邊郡 一帶은 調査가 不可能하였으며, 1910년 9월에야 日帝警備機關의 掩護를 받아 調査를 施行할 수 있는 형편이었다. <sup>(241)</sup>

둘째, 한국농민들의 土地調査에 대한 拒否이다. <sup>(242)</sup> 다수의 農民들이 日帝의 「驛屯土地調査」의 본질을 간파하고, 「驛屯土地는 實地調査의 後에 東洋殖株式會社에 전부 交付되어 多數日本人의 來耕을 보게 될 것이다」<sup>(243)</sup> 라고 하여 調査에 끝까지 完강히 不應하였다. 그 결과 日帝는 문서상으로 매우 과잉 추정된 것이긴 하지만, 제21표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약 2萬 353町步餘로 추산되는 國有地에 대하여 調査를 實行하지 못하였다.

〈표 21〉 「驛屯土地調査」 不施行의 筆數 및 面積推定

道 名	筆 數	面		積	
		坪 數	斗 落 數	日 耕 數	結 數
		坪	斗	日	結
京 畿 道	18,611	245,842	6,659	693	606,507
忠 清 北 道	—	—	—	—	—
忠 清 南 道	—	—	—	—	—
全 羅 北 道	—	—	—	—	—
全 羅 南 道	88,660	—	260,296	—	—
慶 尙 北 道	—	—	—	—	—
慶 尙 南 道	18,319	—	31,699	—	—
黃 海 道	3,979	—	285	1,154	—
江 原 道	17,700	—	—	—	175,804
平 安 南 道	660	—	21	660	14,260
平 安 北 道	19,869	—	2,353	7,852	—
咸 鏡 南 道	—	—	—	—	—
咸 鏡 北 道	—	—	—	—	—
合 計	167,798	245,842	301,313	10,359	796,571

資料 : 『驛屯土地調査概要』 pp. 17~18.

備考 : 斗落, 日耕及結數로 揭上된 面積을 坪數로 換算하면 概算 60,814,034坪으로서 不施行地의 全面積 20,353町步餘일.

셋째, 한국농민의 土地所有權紛爭의 제기이다. 日帝의 國有地의 強制 創出 정책에 따라 부당하게 國有地로 編入된 私有地에 대하여 수많은 農民들이 所有權紛爭을 일으키어 訟訴을

兵의 攻撃에 대한 對策을 지시하고 있다. 「各地駐在의 守備憲兵隊及 警察官憲에게 對하여 直接 間接의 保護援助方을 依頼하고 同時에 各調査班長에게 對하여는 到處 此等의 官憲과 常히 圓滿히 聯絡을 保하여서 身邊의 危險을 豫防하고 實地에 係行 行動의 撤活을 可期하기로 訓諭함.」

(241) 『驛屯土地調査概要』 p. 12 참조.

(242) 『韓國財務經濟報告』 第4回, p. 132 참조.

(243) 『驛屯土地調査概要』 p. 16.



제기하거나 異議를 申請하였으며, 國有地의 <賭地權>을 否定당한 賭地權所有者들도 異議를 제기하고 紛爭을 일으키었다.

日帝의 「驛屯土地調查」는 처음부터 所有權紛爭을 해결할 의사는 추호도 없었고, 도리어 私有土地까지도 國有地로 強占하고 紛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各個擊破의 방식으로 차후에 해결하려 하였다.<sup>(244)</sup> 日帝는 調查班에게 오지 장래 國有地로 관정되기에 유리한 가능한 모든 資料의 蒐集과 記載를 지시하였을 뿐이었다.<sup>(245)</sup> 그러므로 이러한 紛爭은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채 「驛屯土地調查」에 의하여 발생하고 격화되어 그 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朝鮮土地調查事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 IX. 「朝鮮土地調查事業」中的 國有地

### (1) 國有地 強制創出의 擴大

日帝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09년 6월부터 1910년 9월에 걸쳐 소위 「驛屯土地調查」를 실시하여 森林·林野·未墾地 이외에도 12萬 8,868町步의 國有地를 強制創出하여 소위 「國有地臺帳」(驛屯土地臺帳)을 만든 다음, 1910년 9월부터 본격적인 소위 「朝鮮土地調查事業」을 실시하였다.

「朝鮮土地調查令」第4條와 第5條는 民有地와 國有地의 所有者가 각각 土地所有申告(또는 通知)를 하도록 규정하였다.<sup>(246)</sup>

이 규정에 따라 日帝朝鮮總督府官廳들은 소위 「驛屯土地調查」에 의하여 民有地를 強制로 編入시켜 만든 「國有地臺帳」(驛屯土地臺帳)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土地를 그것이 실제로 民有地임을 가리지 않고 「國有地」라고 臨時土地調查局長에게 通知하였고, 이와 同時에 실제로 자기의 民有地임을 분명한데 日帝가 國有地로 조사해간 「民有地」의 私有權者인 民人들도 臨時土地調查局長에게 土地所有者임을 申告하게 되었으므로 正面 충돌은 表面化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同一土地에 실제의 民有地의 所有權者인 民人所有主도 자기의 氏名을 적은

(244) 『財務彙報』第19號 <臨時國有地調查에 關한 決定事項> 第 27, p. 27 참조.

(245) 「國有地實地調查細則」第4條, 『財務彙報』第19號, p. 12 참조.

(246) 『朝鮮總督府官報』(第12號) 1912年 8月 13日字<朝鮮土地調查令> 第4條 및 第5條 참조.

「第四條. 土地의 所有者는 朝鮮總督이 定한 期間內에 其의 土地의 住所 氏名 又は 名稱及 所有地의 所在地目 字番號 間標 地籍 等級 結數를 臨時土地調查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但 國有地에 있어서는 保管官廳으로부터 臨時土地調查局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五條. 土地의 所有者 賃借人 其他의 管理人은 朝鮮總督이 定한 期間內에 其의 土地의 四圍의 疆界에 標杭을 建하고, 地目及 字番號와 함께 民有地에 있어서는 氏名 又は 名稱, 國有地에 있어서는 保管官廳名을 이에 記載하여야 한다.」(一線은 筆者)

標杭을 세우고, 이와 同時에 日帝朝鮮總督府官廳도 保管廳名을 적은 標杭을 同一土地에 세우게 되었으므로, 日帝가 民有地를 強制로 國有地에 編入시킨 곳에서는 바로 그 土地表面에서 까지 正面 衝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소위 日帝가 강제 창출한 「國有地」에서 「朝鮮土地調查事業」이 시작되자마자 처음부터 紛爭이 일어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日帝가 1907년이후의 「國有財產整理」 과정과 1909년6월~1910년 9월의 소위 「驛屯土實地調查」의 실지를 통하여 무리하게 다수의 民有地를 國有地로 強制로 編入한 곳에 그 원인이 있었다. 그러므로 日帝의 「朝鮮土地調查事業報告書」가 國有地의 土地紛爭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 것은 日帝의 稅政을 朝鮮王朝에 轉稼한 것이다.

「朝鮮에 있어서의 土地所有權에 關한 紛爭事件은 그의 數가 극히 많으며, 특히 그 大部分이 國有地 또는 宮司權豪의 所有한 土地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은 달리 그 例를 볼 수 없는 特異한 現象인 것이다. 대개 紛爭地事件은 國初以來의 土地에 關한 制度及 稅制의 紊亂에 기인한 것이 많을지라도 다른 反面에 歷代秘政의 積弊가 그 원인을 이루고 있으며, 一般常民의 權利는 항상 權勢 때문에 壓迫되어 或은 何等의 代價를 받음이 없이 바로 그 所有地를 橫占당하거나 或은 政府가 測定한 以外의 稅米를 賦課당하며, 마침내 그 不當의 課稅는 小作關係의 證左로서 全然 土地의 所有權을 剝奪당하기에 이르지라도 此等の 人民은 그 冤枉을 호소함을 容納하지 않은 것은 後年 多數의 紛爭事件을 蓋藏시킨 主要의 原因이 된 것이다.」<sup>(247)</sup>

이것은 日帝의 稅政이 朝鮮王朝의 稅政을 惡用한 것임을 스스로 辯明하고 있는 것이다.

國有地紛爭은 歷史的 發展過程을 통하여 확고하게 정립된 民有地를 전적으로 日帝가 소위 「驛屯土實地調查」를 통하여 國有地에 強制 編入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하나의 例를 들면, 五營各屯에 關한 土地紛爭은 735件, 1,537筆로서 開城, 坡州, 海州, 金海의 各郡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開城의 경우를 보면 이 土地는 古來로 轉相賣買되어 오던 民田으로서 당시로부터 약 320년진 宣祖朝 시대에 訓鍊都監을 설치하고 이에 요하는 經費支辨의 방법으로서 徵稅를 訓鍊都監에 부여한데 불과한 民有地였으며, 公課負擔率 및 權利行使의 事實도 一般民田과 추호도 다를바 없는 民有地였다. 그러나, 光武 4年(1900년) 「光武量田・査檢」때 內藏院은 단지 「訓田」이라는 명칭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結負에 의거하여 不法으로 少額의 賭租를 附加 強徵하였다. 그 후 1909년 日帝의 國有地調查(소위 「驛屯土實地調查」)에 당하여 당시의 日帝開城財務署는 土地의 調查測量은 行政上 보통의 작업으로서 결코 이 土地를 國有地로 編入시키는 의미가 있지 않다고 懇諭했음에도 불구하고 1911년 이 토지를 國有地에 편입시켜서 地主인 小作人임을 不問하고 各地의 耕作者에 대하여

(247) 『報告書』 p. 123.

돌연히 「國有地小作認許證」을 交付하였다. 이 土地의 所有權者들은 극력 이에 대하여 抗議를 제출하였으나 日帝는 이를 묵살하고 이 토지를 國有地에 強制 編入시켜버리고 말았다. (248) 이러한 사례는 비슷한 경우를 모든 종류의 土地에서 발견할 수 있다. (249)

주목해야 할 것은 「光武量田・査檢」은 宮內府의 收入을 增加시키기 위하여 負擔을 增加시킨 稅政을 가했을 뿐 民有地임을 아직 전적으로 否定한 것은 아니었는데, 日帝는 이를 최대로 惡用하여 「光武量田・査檢」 때의 負擔增加를 근거로하여 이를 國有地化하려고 하였으며, 소위 「驛屯土實地調査」를 하면서 調査測量은 行政上의 普通の 作業이지 결코 이 土地를 國有地에 編入시키기 위한 調査가 아니라고 民人을 欺瞞하였고, 「驛屯土實地調査」가 끝난 후 日帝의 強占이 이루어지자 武力을 배경으로 1911년에 「國有地小作認許證」을 모든 耕作者에게 一方的으로 交付하여 이를 國有地에 強制 編入시키고 小作料를 強徵하였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日帝가 朝鮮王朝의 稅政의 殘滓를 얼마나 절저히 惡用하여 國有地를 強制 創出했는가의 한 事例를 볼 수 있다. 이것은 「光武量田・査檢」의 일부 稅政을 근거로 한 것이나, 民有地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日帝의 國有地에 強制 編入된 事例는 비밀비제하였다.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日帝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朝鮮土地調査事業」을 통하여 一部の 特定土地에 다시 더 國有地를 擴大創出하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日帝가 「朝鮮土地調査事業」중에 國有地의 追加擴大를 위하여 취한 기본정책의 요점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첫째, 日帝는 「驛屯土實地調査」의 결과 다수의 民有地가 부당하게 「國有地」로 強制 編入되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朝鮮土地調査事業」을 통하여 모두 國有地로 査定하여 確定지으려고 하였다.

둘째, 「國有未墾地利用法」에 의하여 貸付된 土地는 「國有地」로 編入시키기 위하여 이를 처음부터 「紛爭地」로 取扱해서 별도로 철하도록 하였다. (250)

셋째, 森林・山野・火田과 같이 종래의 無主開墾地(公有地)에 만들어진 民有地는 이를 國有地로 編入시키기 위하여 이를 「紛爭地」에 준하여 별도로 철하도록 하였다. (251)

넷째, 堤堰番과 같이 원래 國有에 沿革하고 있으나 수백년간 民有地로서 轉相賣買되고 耕作되어오던 土地도 이를 國有地로 編入시키기 위하여 「紛爭地」에 준하여 별도로 철하도록 하였다. (252)

(248) 『報告書』 pp. 148~149 및 愼鏞廈〈前掲論文〉의 事例 11 참조.

(249) 『往復書類綴』〈全羅北道茂朱郡居農民陳炳叢請願書〉 및 愼鏞廈〈前掲論文〉의 事例 11~19, 참조.

(250) 『報告書』 p. 67 참조.

(251) 『報告書』 pp. 85~88 참조.

(252) 『報告書』 pp. 89~90 참조.

다섯째, 申告없는 土地 및 草生地 또는 確切의 土地로서 장래의 課稅를 두려워하여 이를 申告하지 않는 土地의 경우에는 이를 國有地에 編入시키기 위하여 철하도록 하였다.<sup>(253)</sup>

그리하여 「朝鮮土地調査事業」실시중에 土地文書는 여섯개의 종류로 분류되었다. 즉 ① 個人私有權者가 申告하여 異議가 발생하지 않은 土地文書의 묶음, ② 利害關係인이 申告한 土地文書의 묶음, ③ 面·洞·屯 法人 및 其他 團體의 申告에 의한 土地文書의 묶음, ④ 國有地로 申告되어 紛爭이 일단 발생하지 않은 土地文書의 묶음, ⑤ 申告가 없는 土地의 土地文書의 묶음, ⑥ 紛爭이 발생했거나 紛爭地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 土地文書의 묶음 등이었다. 이 중에서 ④⑤⑥은 日帝가 처음부터 國有地로 編入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별도로 분류한 것이었다.

日帝는 이러한 土地들을 「朝鮮土地調査事業」을 통하여 모두 「國有地」에 強制編入시킴으로써 「驛屯土實地調査」때의 「國有地」에 다시 또 새로운 「國有地」를 追加하여 擴大하였다. 물론 民人들은 日帝의 이러한 土地占奪政策에 反抗하여 이러한 土地들은 「紛爭地」가 되었으나 그 審査의 結果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보나마나 結論이 나 있는 것이었다. 만일 日帝의 「國有紛爭地調査」가 조금이라도 公正한 것이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日帝의 「國有地面積」은 「驛屯土實地調査」가 강제로 創出한 12萬 8,868町步 보다 1町步라도 減少되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日帝의 「朝鮮土地調査事業」은 위에서 든 바와 같이 國有地의 強制創出의 擴大 정책을 집행한 결과, 이전에 未調査된 면적에 해당하는 정도의 약간의 紛爭地의 民有地에로의 還元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日帝의 「國有地」는 「朝鮮土地調査事業」의 결과 「驛屯土實地調査」 때 보다 더 증가하여 13萬 7,224町步에 달하게 되었다.<sup>(254)</sup> 日帝의 「朝鮮土地調査事業」은 「驛屯土實地調査」가 民有地를 國有地에 強制編入하여 發生한 土地紛爭을 民有地를 둘러줌으로써 해결하기는 커녕 도리어 「驛屯土實地調査」의 결과 國有地에 強制編入된 民有地를 國有地로 固着시켰으며, 그 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이 「國有地 強制創出」을 하여 追加한 것이었다.

이상 든 과정은 주로 農地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고 未墾地·林野에 대한 占奪은 「森林法」후인 「朝鮮土地調査事業」 중에도 더욱 가혹하였다. 하나의 예를 들면 富川郡 德積面(島)의 경우 私有林野(未墾地)의 4割이 日帝가 요구하는 證憑書類를 갖추지 못하여 國有地에 強制編入되었다고 당시의 德積面長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253) 『報告書』 p. 68 참조.

(254)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追錄』(이하 〈報告書追錄〉으로 略함) 1919, p. 45의 全國驛屯土面積總計와 東洋拓殖株式會社에 出資하고 貸付한 驛屯土面積을 合計한 것이다. 愼鍾夏〈前掲論文〉 참조.

(255) 『錦山自叙傳』 1956. p. 27.

「1916년에 林野測量이 實施하게 되었는데 各個人으로 林野(未墾地)에 自己 所有될만한 證憑書類를 添付하여 申告書를 提出한 것을 面에서 ——取纏하여 測量技手에게 넘긴 후에 測量을 實施하는데 林野에 대하여 證憑될만한 文簿가 얼마되지 않아서 面內 全林野의 四割이 國有로 編入되었다. 이것은 土地가 狹少한 우리 面民으로 如干 不幸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當時 面責任者로 있어 前來로 個人이 自己의 것으로 保管하여 오던 것을 一朝에 國有로 된다면 個人에게는 死活問題이다. ...」<sup>(255)</sup>

日帝의 「朝鮮土地調査事業」은 民有地의 調査와 함께 처음부터 소위 「國有地」의 強制 創出과 그 追加를 目的의 하나로 하여 의도적으로 세심한 정책적 配慮를 한 것이었다. 이것은 「國有地」의 土地紛爭을 表面化시키고 더욱 激化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2) 日帝의 國有地紛爭處理와 國有地의 登記.

日帝의 「朝鮮土地調査事業」중의 土地紛爭에 대해서는 이미 그 대강을 밝힌 바 있으므로<sup>(256)</sup> 여기서는 國有地紛爭處理에 대하여 그 문제점 만을 간단히 지적하는데 그치려고 한다.

日帝의 「朝鮮土地調査事業」의 土地調査紛爭 내용을 道別로 보면 다음 제22표와 같다.

〈표 22〉 「朝鮮土地調査事業」중의 各道別 土地紛爭件數 및 筆數

道	別	件 數	筆 數	筆數百分比(%)
京 畿	道	9,412	23,939	25.08
忠 清 北	道	352	711	0.71
忠 清 南	道	1,564	4,810	4.84
全 羅 北	道	2,622	5,442	5.47
全 羅 南	道	8,610	29,830	30.00
慶 尙 北	道	1,095	2,204	2.22
慶 尙 南	道	4,063	10,465	10.52
黃 海	道	3,318	10,979	11.04
平 安 南	道	228	808	0.81
平 安 北	道	736	4,473	4.50
江 原	道	1,197	3,016	3.03
咸 鏡 南	道	651	1,639	1.65
咸 鏡 北	道	89	129	0.13
計		33,937	99,445	100.00

資料: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pp. 190~191에서 작성.

이 土地調査紛爭 내용을 보면 土地紛爭總筆數 99,445筆 중에서 그 99.7%에 해당하는 99,138筆이 所有權紛爭이었다. 이 중에서 다시 그 65.0%에 해당하는 64,449筆이 國有地所有權紛爭이고, 나머지 35.0%에 달하는 34,689筆이 民有地所有權紛爭이었다. 그러나 民有地

(256) 愼鏞慶〈前掲論文〉의 〈六. 土地調査紛爭〉 참조.

所有權紛爭 중에는 大韓帝國政府가 東洋拓殖株式會社에 出資하고 貸付한 驛屯土地의 所有權紛爭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國有地所有權紛爭의 비율은 이 통계 보다 실제로는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國有地紛爭土地의 一筆地의 면적은 매우 넓어서 『특히 國有地에 대한 것(紛爭一筆者)은 一事件으로서 一洞里를 包含하고, 相對方 人民은 數百名에 달하는 集團地』<sup>(257)</sup>에 屬하는 것이 많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所有權紛爭의 대부분이 國有地所有權紛爭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面積은 件數·筆數에 대비해서도 매우 廣大했음을 알 수 있다.

疆界紛爭은 토지조사분쟁총필수의 겨우 0.3%에 해당하는 307筆 뿐이었으므로 거의 문제될만한 것이 아니었다. 이 중에서 39.4%에 해당하는 121筆이 國有地疆界紛爭이고, 60.6%에 해당하는 186筆이 民有地疆界紛爭이었다. 그러나 民有地疆界紛爭도 그 대부분이 日本人土地占有者의 도발에 의한 疆界紛爭이었다. 日帝朝鮮總督府 臨時土地調査局 測量課長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시는 바와 같이 朝鮮에는 土地臺帳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으며, 매우 曖昧한 文記라고 하는 樣式的 것이 있으므로, 境界등은 다분히 다투어 紛爭이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하지만, 事實은 案外에도 朝鮮人間에 있어서 土地所有權의 紛爭이나 境界地의 紛議등은 없고 때때로 있는 것은 民有地對 國有地이든가, 內地人(日本人—引用者)對 朝鮮人間의 境界紛爭등이다. 內地人이 일부러 境界의 曖昧함을 기화로 隣接地를 侵入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은 꺼림직한 일이다.」(一underline—引用者)<sup>(258)</sup>

여기서 朝鮮王朝時代에도 <量案>(土地臺帳)이나 <衿記>(徵稅臺帳)가 있었으므로 土地臺帳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고 境界가 曖昧하다고 한 것은 日帝官吏의 偏見에 차 있는 말이지만, 朝鮮人 사이에서는 所有權紛爭이나 境界紛爭이 없고 所有權紛爭이 朝鮮人民有地對 日帝朝鮮總督府國有地紛爭이며 境界紛爭도 주로 日本人이 朝鮮人所有土地의 境界를 侵入해서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土地調査의 測量課長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土地調査紛爭은 日帝朝鮮總督府의 「朝鮮土地調査事業」에 의한 土地占奪政策에 대한 朝鮮農民의 反抗鬪爭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國有地紛爭은 朝鮮農民의 日帝朝鮮總督府에 대한 直接的인 反抗鬪爭이었으며, 民有地紛爭은 朝鮮農民의 日帝朝鮮總督府에 대한 間接的인 反抗鬪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日帝의 「朝鮮土地調査事業」을 통한 國有地化의 土地占奪政策에 대한 土地紛爭은 위에서

(257) 『報告書』 p. 123.

(258) 李在茂<前揭論文>에서 再引用. 朝鮮總督府『朝鮮』第44號, p. 51. 臨時土地調査局 測量課長 土屋의 談話.

든 99,445筆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실제로는 헤아릴 수 없는多數의 土地紛爭이 最終段階에 올라와 紛爭地로 되기 전에 日帝의 武力에 의하여 「強制和解」되었으며, 한편으로 위의 통계 이외에 日帝裁判所에 직접 訴訟을 제기한 6,976件的 訴訟地가 있었다.

日帝는 「紛爭地」로 처리되기 전에 두 단계의 「彈壓」에 의하여 土地紛爭의 많은 部分을 事전에 紛爭地에서 除外시키었다.

첫째는 「土地申告書」를 受理할 때 「驛屯土地實地調査」에 의하여 만들어진 「驛屯土臺帳」에 國有地로 強制 編入시킨 土地를 그 所有者가 民有地로 土地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紛爭地가 되므로 온갖 방법으로 협박하고 회유하여 이의 受理를 기피하고 土地申告를 포기케 함으로써 土地紛爭을 未然에 防止하였다.<sup>(259)</sup> 이러한 사실이 매우 많았다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정확한 筆數는 현재에 와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둘째는 이미 土地申告를 하여 「紛爭地」가 된 것을 警察官憲을 동원하여 彈壓함으로써 朝鮮農民의 土地申告를 포기케하는 방법이였다.

예컨대, 1912년 朝鮮總督은 各道知事에 대한 訓示 속에서 國有地紛爭은 國有地의 得失에 관한 重大한 문제이라고 하여 「官有紛爭地에 관한 調査는…官有財産의 得喪에 關한 重大한 處分에 屬하는 것으로 十分 資料를 蒐集하여 慎重히 調査」<sup>(260)</sup> 할 것을 指示하고, 警察官을 동원하여 될 수 있는 한 事전에 이를 防止할 것을 다음과 같이 指示하였다.

「近來 國有地編入 小作料徵收 漁業權의 許否及 土地權利關係등에 關하여 地方民이 紛擾를 일으키고 多衆 集合하여 官廳에 請願을 하고 甚하면 多額의 費用을 消費해서 延하여 部落의 疲弊를 招來하는 것도 적지 않다. 그 많은 것은 正當한 理由가 있지 않은 것으로서 二·三名의 일 꾸미려고하는 者의 煽動에 기인한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警察이 相當 取締를 하고 있을지라도 地方官도 항상 이에 注意하여 必要한 경우에 있어서는 警察官에 命하여 될 수 있는 限 事를 未發에 防止하도록 期하라.」<sup>(261)</sup>

이것은 日帝朝鮮總督이 직접 警察力(당시는 憲兵警察)과 地方官을 동원하여 日帝의 國有地化 土地占奪政策에 대한 朝鮮農民의 土地紛爭의 형태의 反抗鬪爭을 事전에 彈壓하도록 指示하여 이것이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日帝朝鮮總督府의 彈壓을 뚫고 올라 온 것이 99,445筆의 土地紛爭인 것이다.

日帝는 이 土地紛爭을 「紛爭地調査委員會」의 審査에 의하여 査定함으로써 그들의 強制

(259) 『報告書』 pp. 68~69 참조.

(260) 朴文圭<前揭論文>에서 再引用. 朝鮮總督府 『總督訓示及指示』 <1912年 4月 22日의 道長官에 대한 總督指示> p. 26.

(261) 朴文圭<前揭論文>에서 再引用. 『總督訓示及指示』 p. 38.

創出한 國有地를 確定시킨 다음 登記制度를 도입하여 登記케 하려고 하였다.

日帝는 처음에는 土地調查紛爭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리라고 예측하지 못하고 朝鮮總督府 臨時土地調查局 總務課 안에 係爭地係를 설치하여 紛爭地調查 從事人員으로서 日本人 判任官 1名을 두었으며 兼務로서 日本人 高等官 1名과 朝鮮人 判任官 1名을 두었다. 그리고 紛爭地의 審査는 各課長의 合議審査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土地調查作業의 진전에 따라 朝鮮農民의 反抗鬪爭과 土地紛爭은 날로 增加하여 견잡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日帝는 1913年 9月에 臨時土地調查局 안에 總務課長(和田一郎)을 委員長으로 하고 高等官 중에서 5名을 선정하여 「紛爭地審査委員會」라는 審査機關을 별도로 조직하였다. 또한 紛爭地에 대해서는 「紛爭地調查班」을 구성토록 하고 이를 外業班과 內業班으로 나누어 대처케 하였다.

外業班은 보통 測地外業班으로 하여금 이를 검무하여 從事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國有地土地紛爭의 규모가 크고 紛爭이 錯雜하거나 격렬한 경우에는 별도로 紛爭地調查外業班을 과전하였다. 이 外業班이 한 역할은 원지에 내려가서 가능한 한 國有地紛爭을 「調停和解」시켜 當事者連署의 「和解調査」를 제출시켜서 朝鮮農民의 反抗을 포기케 하는 것이었으며, 「和解」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國有地로 判定審査하는데 필요한 精密한 資料를 蒐集해 오는 것이었다.<sup>(262)</sup>

內業班은 外業班이 蒐集한 資料를 정리하여 「審査書」를 작성하여 審査委員會에 回付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 때 명목상으로는 調査事項으로서 ① 關係書類의 對照 ② 所有權源 및 占有 ③ 實地의 狀況 ④ 量案 其他 參考簿書 ⑤ 納稅의 事實 ⑥ 參考人의 陳述 ⑦ 法規 또는 慣習을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sup>(263)</sup> 실제로는 이 모든 調査項目이 民有地의 國有地 強制編入에 필요한 資料의 調査를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예컨대, 하나의 사례를 들면, 納稅의 事實은 民有地임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有力한 證明임에도 불구하고 日帝는 韓末 日帝의 財務署가 國民有地의 區分이 明確하지 않은 상태에서 納稅를 일일이 拒絶할 餘裕가 없이 이를 受領하였으므로 納稅證明書도 그 効力を 인정할 수 없다고 判定하는 따위의 것들이었다.<sup>(264)</sup>

紛爭地審査委員會는 外內業班의 이러한 調査結果와 審査를 쌓아놓고 「國有地」라고 「審査判定」하면 이것이 「査定」이 되어 그 紛爭地는 「國有地」로 査定이 끝나는 것이었다.<sup>(265)</sup>

(262) 『報告書』 p. 181 참조.

(263) 『報告書』 pp. 183~187 참조.

(264) 『報告書』 pp. 185~186 참조.

(265) 「紛爭地調査委員會」를 日帝가 「朝鮮土地調査事業」의 實務下手人代表 和田一郎(總務課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日本人高等官(日帝朝鮮總督府高級官吏) 5명 등 6명으로 구성하여, 朝鮮人이나 紛爭



土地所有權의 査定을 法院에서 행하지 않고 臨時土地調査局이라는 行政機關이 行政處分으로서 행하는 것 부터가 「法治」에서 벗어난 植民地政策이었을 뿐 아니라, 「紛爭地」라는 문제의 土地까지 法院에서 審査하지 않고 臨時土地調査局의 日帝의 植民地官吏로만 구성된 一委員會의 行政處分에 의거하도록 한 것은 近代法治國에서는 있을 수 없는 植民地掠奪政策이었다.

일부의 朝鮮農民들은 현명하게도 日帝朝鮮總督府의 「朝鮮土地調査事業」의 「査定」의 不當性을 인지하고 「紛爭地」의 訴訟을 日帝裁判所에 제기하였으며, 그 筆數는 알 수 없으나 그 件數는 6,976件에 달하였다. 다른 사례를 통하여 유추해 보면 筆數는 件數의 약 3倍에 달하였다. 따라서 약 20,000筆을 訴訟에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sup>(266)</sup>

日帝朝鮮總督府 臨時土地調査局은 교활하게도 그들의 土地調査「査定」과 裁判所의 「判決」의 結果가 어긋날 경우를 未然에 防止하기 위하여 양자간의 「結托」을 協定하였다. 즉 ① 土地調査局의 査定期日前에 裁判所의 判決이 確定되지 않은 것은 土地調査當時의 申告人의 名義로 日帝土地調査局이 査定하고, ② 한편 土地調査申告期間의 告示가 있던 當時의 該地域內의 土地所有權에 관해서 당시 訴訟繫屬中의 事件 및 그 후의 査定公示까지의 사이에 제기된 訴訟事件은 그 作名, 番號, 訴訟의 目的物 및 當事者의 住所 氏名을 所轄法院이 臨時土地調査局에 通知하도록 하였으며, ③ 또한 前記의 事件중 臨時土地調査局 査定까지의 사이에 判決確定한 것과 和解, 取下등에 기인하여 判決에 이르지 않고 終局된 것은 바로 각각 所轄法院로부터 臨時土地調査局이 通知를 받고 査定을 하도록 하였으며, ④ 裁判所에서 현재 訴訟繫屬中의 事件이나 臨時土地調査局이 査定을 하고 있는 도중에 土地所有權에 관한 訴訟을 提起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不得已한 事情이 있을 때에는 裁判所의 判決의 結果를 기다리지 않고 臨時土地調査局이 먼저 査定을 하고 그 旨를 臨時土地調査局에서 裁判所로 通知하도록 하였으며, ⑤ 査定期日이 切迫하여 訴訟事件의 通知를 받고 調査를 할 餘裕가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調査不能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⑥ 判決確定前의 査定 및 調査不能의 處理를 한 事件은 査定公示後 바로 所轄法院에 査定을 한 土地査定名義人의 住所 氏名을 通知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確定判決을 기다리지 않고 査定한 것에 대해

當事者인 農民則代表는 단 1명도 참가시키지 않은 것은 完全히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다. 이러한 구성의 「紛爭地調査委員會」는 처음부터 소위 「紛爭」에 걸린 朝鮮農民의 土地를 掠奪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紛爭土地」를 法官이 아닌 行政官이 審査하는 것 부터가 植民地政策이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行政官의 「紛爭地調査委員會」의 組織構成이 이러하니 이것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朝鮮人의 土地를 빼앗기 위한 조직인 것이었다.

(266) 最終的으로 올라온 土地調査紛爭總件數는 33,937件이고, 總筆數는 99,445筆이다. 따라서 1件當 2.93筆의 꼴이 된다. 이것을 類推하면 日帝裁判所에 所訟한 件數는 6,976件이고, 推定되는 筆數는 20,440筆 즉 약 2萬筆이 되는 방대한 것이다.

서는 그 當事者에 이 旨를 通告하여 不服이면 일정한 期間內에 高等土地調查委員會에 不服의 申立을 할 수 있음을 通告하도록 하였다. (267)

臨時土地調查局과 裁判所 사이의 이 「協定」은 形式的으로는 相互通知에 의하여 土地調查局과 裁判所 사이의 査定과 判決의 어긋남을 미연에 防止하고 그 一致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臨時土地調查局과 裁判所가 「結托」하여 土地申告 告示以前에 裁判所가 確定判決한 紛爭地는 裁判所의 判決에 따라 土地調查局이 査定하고, 土地申告告示期間 후까지 確定判決이 되지 않거나 또는 그 후에 訴訟이 제기된 紛爭地에 대해서는 土地調查局이 査定하여 그 결과를 裁判所에 通知하면 그에 따라 判決하도록 完全히 「結托・野合」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268)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처리된 사건은 總數 6,976件으로서 이를 各道別로 보면 慶尙北道の 1,695件이 가장 많고 다음이 慶尙南道の 1,058件이며, 가장 사건수가 적은 것은 咸鏡北道の 50件이었다. 또한 事件處理의 結果를 보면 判決 또는 和解의 結果 土地調查局의 調査와 矛盾이 없다는 것이 2,582件, 訴訟取下를 한 것이 1,054件, 土地調查領域 外 즉 山林等에 屬하는 것이 915件이며, 나머지 2,425件은 判決確定後의 妥協, 申告後의 移動, 土地所在不明等 各종의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보고 되고 있다. (269)

결국 訴訟을 제기한 土地도 日帝土地調查局이 願하는 方向으로 거의 모든 事件이 처리되었으며, 朝鮮農民의 勝訴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이를 위해서 日帝臨時土地調查局과 日帝裁判所가 完全히 結托・野合하였다는 사실이다.

결국 日帝의 「朝鮮土地調查査業」은 日帝의 「驛屯土實地調査」가 強制創出한 「國有地」에 다시 약 8,400정보의 「國有地」를 追加로 強制 創出하여 첨가하고 이를 모두 國有地로 法認하여 登記한 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한 朝鮮農民의 土地紛爭은 심지어 訴訟事件까지도 日帝의 土地調查局과 法院이 상호 긴밀히 사전 連絡을 取하며 野合・結托하여 거의 전부를 國有地로 「査定」 또는 「確定判決」함으로써 日帝의 強制 創出한 國有地를 完全히 既定事實로서 固着化하여 登記시킨 것이었다.

즉 日帝는 1910年 9月부터 國有地査定을 시작하여 1918년 1월까지 사이에 土地調查局과 裁判部가 結托하여 이를 法認하고 登記케 함으로써 國有地強制創出에 따르는 紛爭問題를 結終

(267) 『報告書』 pp.189~190 참조.

(268) <訴訟紛爭地>에 대한 日帝의 行政府인 朝鮮總督府臨時土地查調局과 司法府인 日帝裁判所의 이러한 制度的인 結托・野合은 처음부터 意圖의인 것이었으며, 植民地掠奪政策에서 단 볼 수 있는 特殊한 <訴訟紛爭地> 處理方法이었다.

(269) 『報告書』 p. 190 참조.

지는 것이었다. 日帝의 「國有地」強制創出事業은 農耕地에 대해서는 일단 1918년 1월로써 그 法認作業이 完了되고 소위 「國有地」의 既定事實로서의 登記化가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sup>(270)</sup>

## X. 「驛屯土分筆調査」

### 1) 驛屯土分筆調査의 目的

日帝는 1918년 1월 「紛爭地調査」를 종결하여, 그 이전까지 強制 創出한 소위 「國有地」의 朝鮮總督府所有權을 스스로 「法認」「登記」한 다음, 쉬지 않고 다시 同月(1918년 1월)부터 「驛屯土分筆調査」를 시작하였다.

「驛屯土分筆調査」는 다음에 드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목적을 가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國有地의 小作人을 確定하고 새로 增加시킨 國有地를 포함하여 모든 國有地를 「朝鮮土地調査事業」의 방법에 따라 總整理하는 決算作業이었다.

「驛屯土分筆調査」는 「朝鮮土地調査事業」의 附帶事業으로서 실시되었다. 왜냐하면 「朝鮮土地調査事業」은 1918년 11월로써 完了되어 1918년 11월 5일 勅令 第375號로서 臨時土地調査局官制 및 道地方土地調査委員會官制를 廢止하였는데, 驛屯土分筆調査는 1918년 1월부터 시작하여 1919년 2월까지 臨時土地調査局이 해체된 후에 이르러 完了되도록 계획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驛屯土分筆調査는 1918년 1월에 시작되어 外業은 1918년 10월에 1개월 앞당겨 끝나고, 內業은 1918년 12월에 2개월 앞당겨 끝냄으로써 실질적으로는 臨時土地調査局의 실질적 해체와 시기를 맞추었다.<sup>(271)</sup>

驛屯土分筆調査의 目的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土地臺帳에 登錄된 國有地의 一地番의 土地를 小作人別로 分割調査하여 小作人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

둘째, 土地臺帳에 登錄된 國有地를 地目別로 分割 調査하여 國有地의 地目別 구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

셋째, 종래의 「國有地臺帳」(驛屯土臺帳)에 登錄되지 않은(「朝鮮土地調査事業」에 의하여)

(270) 『報告書』 pp. 191~192 참조.

(271) 「驛屯土分筆調査」의 準備는 그 施行에 앞서 1917년 6월에 朝鮮總督府訓令 第24號로서 示達되어 이 國有地調査의 이름을 「驛屯土分筆調査」로 하도록 하고 「朝鮮土地調査事業」의 「附帶事業」으로서 國有地의 實地調査 및 測量을 행하여 國有地 全部에 대한 地圖, 臺帳, 臺帳集計簿를 調製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 달인 1917년 7월부터 臨時土地調査局內에서 驛屯土分筆調査의 準備가 着手되었었다.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追錄』(이하〈報告書追錄〉으로 略함) 1919. p. 2 참조.

새로이 追加된 國有地를 調査하여 小作人을 명확히 하고 實測圖를 작성하기 위한 것.

네째, 「國有地(驛屯土)實地調査」(1909.6~1910.9)에 의하여 작성된 舊驛屯土臺帳이 「朝鮮土地調査事業」以前에 조제되어 그 地番·地籍및 疆界가 「朝鮮土地調査事業」에 의하여 작성된 「土地臺帳」 및 「地籍圖」와 連絡이 없어서 별도로 작성된 「對照簿」에 의하여 이를 찾아 보는 不便이 있었으므로, 「朝鮮土地調査事業」에 의하여 작성된 土地臺帳 및 地籍圖에 기초하여 地積을 算定해서 새로운 「國有地臺帳」(驛屯土臺帳)을 調製하기 위한 것.

日帝는 驛屯土分筆調査의 調査要項을 여러가지 들고 있지만,<sup>(272)</sup> 크게 볼때, 위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國有地와 國有地小作人을 정확히 파악하는 最終調査作業으로서 이 分筆調査를 실시한 것이었다.

2) 調査班의 編成

驛屯土分筆調査의 調査班은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 職員에서 차출하여 다음과 같이 外業班과 內業班으로 구성하였다.<sup>(273)</sup>

- 外業驛屯土調査班 { 監 查 員……1명  
副監查員 또는 附屬員……1명 또는 2명  
調 查 員……4~8명
- 內 業 { 班 長……1명  
驛屯土班 { 監理分班……主任 1명, 分班員 4~10명  
檢査分班……主任 1명, 分班員 18~81명  
積算分班……主任 1명, 分班員 43~78명  
簿書分班……主任 1명, 分班員 17~35명
- 庶 務 { ……………主任 1명, 所屬員 2~5명

물론 外業班이 「驛屯土調査班」으로 불리면서 그 중심이 되었다. 그 밖에 調査班 編成에 관하여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外業班의 個數는 시기에 따라 增減이 있었으니, ㉠ 1918년 1월~6월까지는 13個班이었고, ㉡ 1918년 7월~9월까지는 16個班이었으며, ㉢ 1918년 10월에는 8個班이었다.
- (2) 外業班의 調査員은 1918년 編成當時부터 同年 7월까지 보통 6명으로 구성하고, 1918년 7월부터는 16班중 13班을 8명으로, 나머지 3班을 5명으로 구성하였다.
- (3) 內業各班員의 最多人員은 주로 外業 終了後에 一時에 從事시킨 것이기 때문에 적은

(272) 『報告書追錄』 p. 8 참조. 여기서 日帝는 「驛屯土分筆調査」의 要項을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들고 있다. 즉 ㉠ 驛屯土管理上一筆地가 되어야 할 土地의 疆界 地目及 小作人의 調査 ㉡ 分割調査를 하는 土地 및 새로이 調査하는 土地에 대한 驛屯土等級의 調査 ㉢ 驛屯土內에 包含하는 道路 溝渠 鐵道線路의 類로서 驛屯土로 貸付를 하지 않으며 또한 地籍整理上 地番을 부치지 않는 土地의 調査 ㉣ 驛屯土로서 河川 湖海가 되어 滅失된 土地의 調査등이다.

(273) 『報告書追錄』 pp. 34~36 참조.

수치가 정상적으로 종사한 인원이었다.

위의 驛屯土分筆調査의 調査班이 日帝의 소위 「朝鮮土地調査事業」의 最後의 調査班이었고 그 從事員들이었다.

### 3) 小作人の 調査

日帝驛屯土分筆調査의 小作人の 調査는 「朝鮮土地調査事業」과 마찬가지로 《申告主義》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申告書는 小作人の 住所 氏名 및 小作地의 所在・地番・地目 등을 기재하여 小作人으로 하여금 다음 그림과 같은 규정된 양식의 「驛屯土小作申告書」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小作人이 없는 國有地에 대해서는 府郡島가 이에 준하여 書面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驛屯土通知書」라고 불렀다. 이 외에 實地調査에서 申告 또는 通知가 脫漏된 것이 있을 때 즉시 이것이 申告 또는 通知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調査官吏가 「便宜申告書」 또는 「便宜通知書」를 작성하여 調査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驛屯土分筆調査에는 원칙적으로 申告에서 脫漏되는 土地는 없도록 조치한 것이었다.

驛屯土小作에 대해서는 「驛屯土實地調査」와 「朝鮮土地調査事業」도중에 所割財務監督局長과 府郡島가 「小作認許證」을 發給하여 小作人을 확인하였었는데, 「驛屯土分筆調査」에서는 그들의 現在小作人の 「分筆」調査의 목적상 「小作認許證」을 무시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申告하도록 하였다.<sup>(274)</sup>

① 申告는 小作認許證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구애되지 말고 現在 小作하는 者가 이를 행하도록 하였다.

② 申告書는 小作認許證의 一地番마다 別紙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但 그 一地番의 土地를 分割하여 現在 2人以上이 小作하는 경우에는 各各 別途로 申告하도록 하였다.

③ 小作認許證의 發給이 없는 土地를 申告할 때에는 申告事項중 番號欄 및 地番欄에 斜線을 긋고 事故欄에 「未認許」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④ 小作人の 氏名은 民籍簿에 登錄된 것과 同一한 文字로써 기재하도록 하였다.

⑤ 小作認許證의 氏名과 現小作人の 氏名이 同一하지 않을 때에는 申告事項欄에 認許證의 氏名을 기재하고 그 事由를 事故欄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한편 驛屯土調査班(外業班)은 現地에 가서 小作人 또는 代理人 또는 小作人總代(小作人總代는 府郡島가 選定하였음)를 入會시키어 申告人이 現在의 小作人임을 確認시키고 이를 是認토록 하였다.

「驛屯土小作申告書」에는 반드시 小作人總代와 面長의 認印을 요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274) 『報告書追錄』 p. 6 참조.

事 由	事 由	事 由	事 由	所 在 地	任 務	驛屯土小作申告書 大正 年 月 日 調面印 代 人
事 由	事 由	事 由	事 由	所 在 地	任 務	
事 由	事 由	事 由	事 由	所 在 地	任 務	
事 由	事 由	事 由	事 由	所 在 地	任 務	
事 由	事 由	事 由	事 由	所 在 地	任 務	
事 由	事 由	事 由	事 由	所 在 地	任 務	
事 由	事 由	事 由	事 由	所 在 地	任 務	
事 由	事 由	事 由	事 由	所 在 地	任 務	
事 由	事 由	事 由	事 由	所 在 地	任 務	
事 由	事 由	事 由	事 由	所 在 地	任 務	

제 1 도 驛屯土小作 申告書

日帝가 國有地 小作料의 徵收의 安全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現在小作人을 파악하기 위한<sup>275)</sup>조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驛屯土分筆調査에 있어서의 小作人의 <申告主義>方法은 「朝鮮土地調査事業」에서와 같은 「効率」은 내지 못하였던 것 같다. 「國有地」에 강제 편입된 土地의 所有權・賭地權에 관련된 農民들의 反抗이 완강하였기 때문에 <小作申告>를 기피하는 농민이 상당히 많았고, 따라서 日帝의 府郡島 官廳이 「通知書」 「便宜申告書」를 제출한 경우가 의외에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4) 小作地의 疆界・地目・地番・等級調査와 帳簿의 調製

[疆界 및 地目調査] 國有地(驛屯土)의 疆界 즉 土地臺帳에 등록된 驛屯土의 外郭은 「朝鮮土地調査事業」의 査定에 의하여 一般民有地와 마찬가지로 이미 確定되었었다. 따라서 「驛屯土分筆調査」의 疆界調査는 ① 一地番의 土地를 驛屯土管理의 必要上 2筆이상으로 分割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各筆의 疆界및 ② 土地臺帳에 登錄되지 않은 새로 追加된 國有地의 疆界를 조사한 것이었다.

驛屯土分筆調査의 疆界및 地目の 調査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시행하였다. (275)

(275) 『報告書追録』 pp. 10~13 참조.

① 一地番의 土地의 田·畓·塚 또는 雜種地(鹽田 또는 鑛泉地에 限함)중에 小作人 2人 이상이 있는 것 또는 小作人이 있는 部分과 小作人이 없는 部分이 있는 것은 各小作地 또는 小作人 없는 土地 마다 이를 分割하도록 하였다.

② 一地番의 土地中에 2種 이상의 地目的 土地를 포함하는 것은 地目이 다를 때마다 이를 分割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但 地籍의 整理上 小地籍의 異地目的 土地는 이를 主된 地目에 포함시키는 것을 관례로 하도록 하였다.

③ 田·畓·塚의 一地番의 土地의 地籍은 平安南道, 平安北道, 咸鏡南道, 咸鏡北道에 있어서는 약 6,000坪, 기타 道에 있어서는 약 3,000坪을 標準으로하여 이를 超過하는 것은 적당히 分割하도록 하였다.

④ 土地臺帳에 地目을 林野로 登錄한 것은 「朝鮮土地調査事業」시행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自然히 開墾되었을 것이므로 모두 그 現狀을 調査하여 그 일부가 田·畓·塚 또는 雜種地중의 鹽田 또는 鑛泉地로 된 것이 있는 때에는 위의 ①~③의 원칙에 準하여 이를 分割하도록 하였다. 但 그 全部가 다른 同一地目的 土地로 된 때에는 다음 ⑦의 원칙에 의하여 土地臺帳登錄事項變更調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⑤ 현재 驛屯土(國有地)로 取及하는 土地로서 土地臺帳에 登錄되지 않은 土地는(但 最近 土地調査地域으로부터 약 1里(4km) 또는 2里(8km) 밖에 있는 것은 除外함)土地調査를 行하지 않았으므로 驛屯土管理上 實況은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全部 實査를 遂行하되 그現狀이 田·畓·塚 또는 雜種地中의 鹽田 또는 鑛泉地인 때에는 그 部分에 限하여 ①~③의 원칙에 準하여 새로이 이를 調査하도록 하였다.

⑥ 田·畓·塚의 一地番의 土地의 一部가 河川 또는 海湖로 되어 現地가 滅失한 土地는 現存地와 滅失地를 區分하여 이를 分割하도록 하였다.

⑦ 一地番의 土地의 全部가 다른 同一地目的 土地 또는 荒蕪地 또는 河川 湖海가 된 것은 荒蕪地가 된 것을 除外하고는, 土地臺帳上 地目變換을 要하는 것이므로 그 現狀에 의하여 「土地臺帳登錄事項變更調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7개 원칙 이외에도 一番地의 土地의 全部를 同一人이 小作하는 것과 또한 小作人 없는 土地로서 地目變換 기타 移動事實의 申告(또는 通知)가 있는데 調査官吏가 그 事實 있음을 知得한 것에 대해서는 實地調査를 하지 않고 申告書 또는 通知書를 驛屯土實測圖및 驛屯土對照簿에 對照調査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sup>(276)</sup>

(276) 이 事實은 「驛屯土分筆調査」가 國有地 小作人의 〈申告〉에 의존하거나 그 呼應을 얻지 못하고 官吏들이 便宜에 따라 매우 疏略하게 시행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은 모두 小作人을 정확히 파악하여 日帝의 小作料收入을 增加시키고 앞으로 驛屯土(國有地)를 拂下處分할 때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두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測量은 「朝鮮土地調查事業」에서와 같이 所有主의 所有權 및 그 疆界의 査定을 위한 것이 아니라 ① 小作人의 小作人別 疆界를 調查하기 위한 것이었고 ② 短期間에 이를 完結하였기 때문에 測量의 精度는 거의 半減된 粗疏한 것이었음을 日帝스스로가 인정하였다.<sup>(277)</sup>

[地番調査] 日帝는 이러한 植民地政策의 目的은 「驛屯土」의 地番의 決定에도 적용하였다. 地番은 驛屯土의 整理番號로서 만드시 土地臺帳에 登錄된 地番을 使用할 필요는 없었지만, 日帝는 土地臺帳과 國有地臺帳(驛屯土臺帳) 및 地簿圖와 驛屯土地圖를 항상 밀접히 연결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실행하였다.<sup>(278)</sup>

① 一地番의 土地를 分割한 것은 土地臺帳의 地番(枝番있는 것을 포함함)에 「○의 一」「○의 二」등의 枝番을 부쳐 이를 驛屯土地番으로 하도록 하였다.

② 一地番의 土地 全部가 驛屯土의 1筆에 該當하는 것은 土地臺帳의 地番을 驛屯土地番으로 하도록 하였다.

③ 새로이 調查한 土地는 土地臺帳의 地番에 구애받지 않고 一洞里마나에 「新」자를 머리 글자로 한 別番號를 부쳐 順次로 「新一番」「新二番」등으로 함으로써 土地臺帳에 登錄되지 않은 土地임을 밝히도록 하였다.

④ 一地番의 土地의 一部 또는 그 全部를 道路, 溝渠, 堤坊, 城堞, 鐵道線路, 또는 水道線路로써 調查한 것, 및 그 土地가 河川 湖海가 되어 現地가 滅失된것 같은 것은 地番을 붙이지 말도록 하였다.

[等級 調査] 驛屯土分筆調査에 있어서의 驛屯土等級調査는 小作料賦課의 等級과 앞으로 驛屯土拂下時의 價格決定을 위한 자료로써 동시에 실시되었다.

等級調査는 驛屯土調査班이 分筆別로 직접 그 肥沃度를 調查하지 않고, 종래 土地臺帳에 登錄된 等級을 기초로하여 「類地比準」<sup>(279)</sup>의 方法을 채용하여 間接調査를 실시하였으며, 疆界 및 地目調査를 할 때 동시에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거하도록 하였다.<sup>(280)</sup>

① 調査에 着手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그 近傍에 있어서 比準될만한 適當한 類地를 選定

(277) 『報告書追錄』 pp. 17~18 참조.

(278) 『報告書追錄』 pp. 13~14 참조.

(279) 「類地比準」의 方法은 實地調査肥沃度調査가 아니기 때문에 名稱은 아무리 「實地」의 이름을 부쳐도 科學性과 精密性이 전혀 없는 疏略한 間接推測의 方法에 불과하였었다.

(280) 『報告書追錄』 p. 15 참조.



할 것.

② 選定되는 類地는 異地目的 土地 또는 不毛地를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

③ 選定된 類地中에서 田과 畓에 대해서는 그 同一等級의 土地中에 있어서 上下 어느 階級에 相當하는 것인가를 決定할 것.

④ 類地를 決定할 때는 等級을 詮訂하려고 하는 土地를 이에 比準하여 그 地位가 同一한 것인가 또는 昇降시켜야 할 것인가를 考査하여 適當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의하여 이를 詮定할 것.

⑤ 類地의 選定 및 그 階級의 決定과 比準에 대해서는 面長 또는 面吏員 기타 立會人의 意見을 參酌할 것.

⑥ 調査를 할 때에는 府郡島에 存置시킨 地位等級圖 또는 市街地地價等級決定圖를 携帶하여 이를 參照할 것.

⑦ 前各號의 외에 前記臨時土地調査局의 調査規程의 各筆地比準의 例에 準據할 것.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驛屯土의 等級調査를 各分筆의 肥沃度의 實地調査를 행하지 않고, 一般民有地中의 同級이라고 간주되는 類地比準의 方法에 의한 臺帳調査 및 聽取調査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等級調査는 극히 不正確한 것이었다. 그것은 1909년의 「驛屯土實地調査」에의 等級調査와 동일한 주먹구구식의 극히 非科學的 調査이었다.<sup>(281)</sup>

따라서 이 等級調査에 의거하여 驛屯土小作料를 부과하였으므로 그 賦課額은 극히 不正確하고 不正確한 認定小作料의 성격을 면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帳簿調製〕 이와 같이 하여 申告書類를 取集하고 部分的으로 測量을 실시해서 「素圖」라고 불렀던 驛屯土地籍圖를 만든 다음 地籍을 算定하고 帳簿를 調製하였다. 帳簿는 새로운 ① 驛屯土臺帳과 ② 驛屯土臺帳集計簿의 2종을 만들었다.<sup>(282)</sup>

「驛屯土臺帳」은 申告書에 기초하여 調製한 것이었다. 이 臺帳에 登錄된 土地는 田·畓·垆·池沼·雜種地의 5종목으로서 一筆마다 이를 謄寫하여 各葉은 洞里마다 地番의 順序에 의하여 取集하고, 또 使用에 便利하도록 하기 위하여 洞里의 區分에는 赤紙를 挿入해서 약 200枚를 一冊으로하여 面마다 成冊하도록 하였다. 이 臺帳에 登錄을 요하는 事項으로는 ① 土地所在의 洞里名 ② 地番 ③ 地目 ④ 等級 ⑤ 地籍 ⑥ 小作人住所及 氏名 또는 名稱(小作人이 없을 때 또는 小作人未定의 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음)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驛屯土臺帳」에는 前記事項 外에 貸付料, 小作認許年月日 및 小作期間을 기재하도록 규정

(281) 『財務集報』第23號 〈國有地實査收穫及地價濫別法〉 pp. 2~3. (註228) 참조.

(282) 『報告書追錄』 pp. 26~28 참조.

하였으나, 이들은 府郡島가 決定한 후 기재해야 할 事項에 속하는 것이었기때문에 驛屯土臺帳 調製 때에는 위의 어느것도 이를 空欄으로 두었다. 새로이 만든 驛屯土臺帳은 面을 單位로하여 驛屯土小作人과 小作地를 個別的으로 완전히 장악한 圖簿이었다고 볼 수 있다.

「驛屯土臺帳集計簿」는 驛屯土臺帳을 面 또는 府마다 「地目別」로 集計하여 다시 郡島의 合計를 붙인 것으로서 府郡島마다 成冊을 하였다. 驛屯土臺帳集計簿는 ① 有料借地 ② 無料借地 ③ 未貸付地로 區分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有料無料의 구별은 臺帳에 貸付料를 기재시킨 결과 무의미하게 되었으므로 실제로는 이 구별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臺帳의 小作人은 現耕作者를 기재한데 불과하고 그후의 그 土地의 貸付의 許否는 이론상 府郡島의 決定을 기다려 決定하여야 할 것이므로 貸付未貸付도 역시 이를 구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고, 결국 地目別 地籍의 合計를 集計하는데 그치었다. 이상과 같이 소무한 것이기는 하나 驛屯土臺帳集計簿는 財政的 차원에서 國有地의 收入과 장래의 處分에 관한 圖書를 최종 정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不完全한 것이지만, 日帝의 「驛屯土分筆調査」는 새로이 「驛屯土臺帳」 「驛屯土臺帳集計簿」를 調製함으로써 일단 總질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5) 「驛屯土分筆調査」의 結果

이상과 같은 과정으로 실시된 日帝의 「驛屯土分筆調査」의 결과 확인된 「驛屯土(國有地)」의 地目別 面積은 다음 제23표와 같다.

즉 ① 畚이 43,589.5町步(130,768.5坪), ② 田이 71,965.2町步(215,715,571.9坪), ③ 岱가 3,786.1町步(11,353,320.6坪), ④ 池昭가 738.2町步(2,214,549坪), 雜種地가 7,284.6町步(21,853,714坪), 合計 12萬 7,330.6町步(381,910,701坪)에 달하였다. 여기에 東洋殖殖株式會社에 出資한 2,436町步와 同社에 貸貸한 7,485町步를 합하면 1918년 말 현재의 國有地의 總面積은 13萬 7,224.6町步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이었다.

이것을 1909년 6월~1910년 9월의 「驛屯土分筆調査」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8,359.6町步가 增加한 것이었다. 즉 日帝는 「朝鮮土地調査事業」과 그 附帶事業으로서의 「驛屯土分筆調査」를 통하여 未墾地를 빼고도 8,356.6町步의 民有地를 國有地로 強制編入하여 追加시킨 것이었다. 이것을 田畚別로 보면 畚에 있어서는 약 1,041.5町步가 약간 감소한 반면에 田에 있어서는 무려 2萬 6,187.2町步가 增加한 것이었다.

驛屯土의 小作農을 보면 앞의 제18표와 같이 全國에 걸쳐 약 28萬 4,228戶에 달하고 있으며, 東洋殖殖株式會社에 出資・貸付한 驛屯土의 小作人까지 합하면 30萬 7,800餘戶에 이

〈표 23〉 「驛屯土分筆調査」에 의한 驛屯土의 地目別面積과 筆數表

驛屯土地目別面積筆數表(1)

道	名	面數	田		畓		垡	
			面積(坪)	筆數	面積(坪)	筆數	面積(坪)	筆數
京畿道		234	17,392,311	32,026	19,901,788.8	28,531	1,621,649	13,809
忠清北道		105	3,756,638	6,023	5,218,865	9,817	562,824.6	4,753
忠清南道		163	2,489,732	7,375	10,946,860	15,024	552,262	4,175
全羅北道		158	1,892,861	6,652	10,215,495	12,940	384,359	3,072
全羅南道		250	48,983,382	35,698	11,028,491	21,592	851,034	7,489
慶尙北道		243	6,141,602	16,557	9,392,734	21,355	1,178,500	11,064
慶尙南道		228	8,776,347.9	23,835	14,653,703.7	36,705	950,720	10,872
黃海道		216	42,372,628	42,153	18,456,475	17,228	957,408	7,990
平安南道		167	16,093,395	15,356	11,196,968	8,311	481,675	3,794
平安北道		194	30,142,236	22,765	7,931,658	8,574	842,309	8,455
江原道		170	14,934,943	20,573	7,610,092	12,687	1,187,477	10,561
咸鏡南道		131	13,269,101	16,607	3,355,783	5,455	1,075,445	9,769
咸鏡北道		70	9,470,395	9,974	859,650	813	712,640	5,522
計		2,329	215,715,571.9	257,594	130,768,563.5	199,032	11,358,302.6	101,325

驛屯土地目別面積筆數表(2)

道	名	池沼		雜種地		計	
		面積(坪)	筆數	面積(坪)	筆數	面積(坪)	筆數
京畿道		100,647	86	748,110	223	39,764,505.8	74,675
忠清北道		166,243	81	5,053	49	9,709,623.6	22,723
忠清南道		293,446	96	348,180	103	14,630,480	26,773
全羅北道		105,845	45	347,562	208	12,946,122	22,917
全羅南道		73,622	55	1,114,357	523	62,050,886	65,357
慶尙北道		459,404	114	107,531	184	17,279,771	49,274
慶尙南道		180,489	173	4,018,179	307	28,579,439.6	71,892
黃海道		607,171	74	6,180,917	417	68,574,599	67,862
平安南道		35,760	60	8,630,080	845	36,437,878	28,366
平安北道		98,982	111	175,698	116	39,190,883	40,021
江原道		66,434	46	68,283	114	23,867,229	43,981
咸鏡南道		24,843	26	80,591	104	17,805,763	31,961
咸鏡北道		1,663	3	29,173	40	11,073,521	16,352
計		2,214,549	970	21,853,714	3,233	381,910,701	562,154

資料：『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追録』 pp. 43~45.

르고 있다. (283)

이것은 1911년의 全農家戶數의 13.9%, 1918년의 全農家戶數의 약 10.7%에 달하고, 당시의 純小作農家戶數의 28.7%에 달하는 방대한 비율의 것이었다. (284)

즉 日帝朝鮮總督府는 1907년 부터 1918년말까지 꾸준히 國有地 強制 創出의 植民地土地 占奪政策을 실시하고, 「驛屯土實地調査」 「朝鮮土地調査事業」 「驛屯土分筆調査」를 통하여 다수의 民有地를 國有地로 強制編入함으로써 13萬 7,224.6町步의 土地와 30萬 7,800餘戶의 小作農을 支配하는 조선내의 最大地主가 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日帝朝鮮總督府라는 最大地主는 巨대한 近代軍事力으로 武裝한 地主였으며, 小作人과 小作地를 가장 철저히 파악하고 가장 組織的으로 收奪한 가장 苛酷한 地主이었다.

日帝의 「驛屯土分筆調査」는 「朝鮮土地調査事業」에 의하여 소위 「紛爭地」문제를 일단 武力 彈壓으로 종결한 후에 1918년 1월부터 실시하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예정대로 進行된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驛屯土分筆調査에 대해서도 그 最終段階에 이르기 까지 朝鮮農民의 이에 대한 反抗은 완강하게 지속되었다. 예컨대, 日帝는 驛屯土分筆調査에서까지도 다음과 같은 朝鮮農民들의 反抗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첫째, 朝鮮農民이 驛屯土小作申告를 忌避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에는 驛屯土調査班(外業班)이 現在의 小作人에게 申告書를 提出하도록 압력을 가하였으며, 만일 小作人이 그래도 申告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日帝의 驛屯土調査班(外業班)이 「便宜申告書」를 작성하고 實地調査를 행한 후에 이를 府郡島에 回付하여 土地臺帳登錄事項 기타 필요한 事項을 記入하도록 하는 便法을 취하였다. (285)

둘째, 朝鮮農民이 日帝의 土地占奪에 직접적으로 끝까지 완강하게 抵抗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京畿道 高陽郡 中蘆島面, 漢芝面, 崇仁面의 3面에서는 國民有土地紛爭이 아직도 沈沈하고 있어서 小作人別通知가 不可能하였기 때문에 驛屯土分筆調査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臺帳과 地圖의 調製도 할 수 없었다. (286)

셋째, 朝鮮農民의 抗爭 때문에 小作人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小作申告書〉는 現 小作人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國有地의 強制 創出過程에서 民有地가 編入되거나

(283) 『小作農民ニ關スル調査』 p. 2의 31 참조.

(284) 朝鮮總督府 『農業統計表』 1932年版 p. 7에 의하면, 「朝鮮土地調査事業」이 終了된 1918년의 總農家戶數는 265萬 2,481戶이고 小作 農家(純小作農) 戶數는 100萬 3,775戶이다. 1918년의 驛屯土 小作農家戶數는 日帝의 發表가 없으므로, 부득이하여 1911년의 驛屯土小作農家戶數를 번어다 썼으나, 驛屯土面積의 增加에 따라 小作農家戶數도 약간 增加했을 것이므로, 실제의 비율은 이 보다 약간 더 높을 것이다.

(285) 『報告書追錄』 p. 9 참조.

(286) 『報告書追錄』 p. 3 참조.

農民의 權利들이 否認되는 등 無理한 정책이 執行되었기 때문에 元所有主, 賭地權所有者, 小作人등이 「抗爭」을 시도하여 「小作權紛爭」이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이러한 紛爭은 기묘한 형태의 抗爭이어서 驛屯土調査班이 解決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他日 府郡 島가 결정하도록 하고 「小作人未定」으로 조사처리하도록 할 수 밖에 없었다.<sup>(287)</sup>

日帝의 이상과 같은 國有地強制創出에 대한 朝鮮農民의 反抗鬭爭은 결국 驛屯土分筆調査가 끝난 3개월 후인 1919년 3.1運動에의 農民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鬭爭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다.

## XI. 맺 음 말

이상에서의 고찰을 통하여 넓은 의미의 日帝의 「朝鮮土地調査事業」은 日帝朝鮮總督府의 所有地를 의미하는 소위 「國有地(驛屯土)」의 強制 創出을 그 최우선 목적의 하나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미 土地私有權이 확립된지 오래인 우리나라의 土地制度에 日帝가 굳이 朝鮮王朝末期까지의 土地制度가 원칙적으로 公有(또는 國有) 制度이며, 私占은 원칙적으로 不法的이라는 歷史的事實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주장을 당시에 되풀이 한 것도 日帝의 「國有地」 強制創出政策의 合理化를 위한 強辯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日帝의 넓은 의미의 「朝鮮土地調査事業」은 國有地와 民有地로 나누어 자신은 먼저 「國有地占有」부터 시작되었다. 日帝의 「朝鮮土地調査事業」진반을 통하여 「國有地」(日帝朝鮮總督府所有地)의 最優先 創出과 占有, 그리고 다음에 日帝資本의 土地占有進出을 위한 民有地에 대한 調査를 시킨 것은 日帝의 「朝鮮土地調査事業」의 변함없는 優先順位配列이었다.

日帝가 소위 「國有地創出」을 「朝鮮土地調査事業」의 最優先順位에 둔 것은 그것이 資本의 支出을 수반하지 않고 植民地統治權力에 의하여 《無償》으로 방대한 土地를 占有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民有地에 대한 「朝鮮土地調査事業」 이후의 日帝資本의 土地占有는 日帝의 植民地政策의 支援에는 불구하고 일단 經濟過程을 통한 資本의 《支出》을 수반하는 土地占有였을 뿐 아니라 막대한 資本을 投入하고도 난관이 많은 과정이었다. 그러나 「國有

(287) 『報告書追錄』 p. 9. 예컨대 「申告書는 現在의 小作人이 提出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前小作人 中間小作人 또는 將來 小作하려고 바라는 者等이 申告하는 例가 적지 않았으며, 심한 것에 이르러서는 面의 吏員이 此際에 小作人을 變更하려고 생각하여 故意로 他人으로 하여금 申告케 하는 것도 있었다. 此等은 現小作人 또는 小作人總代等の 申出에 의하여 그 事實이 스스로 判明됨으로써 調査의 趣旨를 說示하여 申告를 取消시킨다 할지라도 往往 抗爭을 試圖하여 마치 小作權紛爭의 狀態가 되었다. 外業班은 이를 解決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他日 府郡 島가 決定하는 수 밖에 없는 것으로서 우선 小作人未定으로 하여 調査를 遂行하였다.」참조.

地」의 強制創出은 할 수만 있다면 <無償>으로 광대한 土地를 一擧에 占有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日帝는 「國有地創出政策」을 「朝鮮土地調查事業」의 가장 중요한 最優先 事業內容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日帝의 軍國主義的 植民地掠奪政策의 본질은 土地問題와 관련해서는 「朝鮮土地調查事業」의 民有地에 대한 調查에서 보다 「國有地(驛屯土)」의 強制創出過程과 그 調查過程에서 단적으로 더욱 선명히 들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日帝가 소위 「乙巳條約」(1905년 11월)에 의하여 國權을 박탈하기 이전까지의 한국의 土地所有實態는 農地는 거의 모두가 私有地(民有地)이었으며, 國官有地는 극히 얼마 되지 않았다. 따라서 日帝는 「國有地(朝鮮總督府所有地)」의 創出을 위하여 民有地의 一部를 國有地에 強制編入시켜서 「國有地」의 面積=無償占有地의 面積을 擴大시키려고 하였다.

日帝는 國有地強制創出政策은 본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4단계를 거쳐 실시되었다.

제 1 단계는 既存의 官有地에 기초에서 民有地를 「國有地」에 強制編入하는 作業의 단계이었다.

이를 위해서 日帝는 종래의 「驛土」중에서 ① 본래부터 民有地(民人의 私有地)로서 田稅만을 國家대신 驛院站에 납부하던 驛公須田・長田・副長田・急走田・站衙祿田 등 <無土驛土>를 國有地에 強制編入시켰으며, 朝鮮初期에는 官田이었으나 점차 私田化되어 民人의 私有地로 되어버린 馬田과 院主田의 一部인 <第二種有土驛土>도 國有地로 強制編入시켜버렸다.

또한 日帝는 屯田 중에서 ① 民人의 私的 所有地의 徵稅權을 官衙에 給與한 것(民結의 折授) ② 民人의 新開墾地의 徵稅權을 官衙에 給與한 것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無土屯田>은 그것이 명백히 民人의 「私有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國有地에 強制編入시키고 말았다. 또한 <有土屯田> 중에서도 <第一種有土屯田>은 官有地이었으나, <第二種有土屯田>은 朝鮮王朝末期에는 이미 私有地化되어 있었는데 日帝는 이를 國有地로 強制編入시켰다. 또한 屯田에는 民人의 「混奪入地」가 매우 많았는데 日帝는 이들도 모두 屯田이라고 하여 國有地에 강제 편입시켜버리고 말았다.

또한 日帝는 宮庄土중에서 당연히 王室의 私有地로 처리되어야 할 대부분의 土地를 모두 國有地로 강제 편입시켰으며, 民人의 私有地化 되어버린 <第二種有土宮庄土>도 國有地로 강제 편입시켜버렸다. 뿐만 아니라 방대한 면적의 <無土宮庄土>와 宮房에 投托되었던 民人의 <投托地>와 宮庄土에 混入・奪入되어 있던 <混奪入地>도 그 대부분을 國有地에 강제 편입시켜 버리고 말았다.

또한 日帝는 牧場土 중에서 民人의 私有地이면서 단지 田稅만 牧場을 관리하는 官衙에 납

부하던 牧子位田, 牧位田 등과 外牧場의 一部로 된 <無土牧場土>까지도 國有地에 강제 편입시켰다. 또한 堤堰畚耨에서 이미 私有地化되어 수차례 轉相買賣됨으로서 文記까지 갖추게 된 民有堤堰畚耨까지 모두 國有地에 강제 편입시켰다. 또한 日帝는 陵園墓位土와 그 內核子の 農地와, 林野 全部, 그리고 外核子の 農地와 林野一部를 國有地에 강제 편입시켰다. 이외에도 學田의 一部, 廢寺田畚耨 및 寺刹基址, 公廨基址田, 기타 각종의 土地 등이 모두 日帝에 의하여 國有地에 강제 편입되었다. 이것은 모두 植民地統治權力에 기초한 공공연한 土地掠奪이었다.

또한 日帝는 林野를 별도로 하고도 약 102萬餘町步에 달하는 실로 방대한 면적의 未墾地를 國有地化하였다. 「朝鮮土地調査事業」直前に 日帝가 파악한 未墾地의 면적은 매우 방대하여 既墾地面積의 무려 66.5%에 해당하는 약 120萬 397町步에 달하는 것이었다. 日帝는 이러한 방대한 면적의 未墾地의 극소부분만을 民有地로 인정하고 그 大部分인 약 102萬餘町步의 無主開墾未墾地와 民有未墾地를 國有地에 강제 편입시켜 버리고 말았다.

또한 日帝는 종래 民人의 토지에 대한 慣習上의 耕作權, 賭地權, 開墾權, 入會權을 否定하여 버렸다. 日帝는 國有地化한 未墾地를 民人이 開墾하는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民人이 開墾地의 所有主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小作農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

日帝는 이상과 같이 실로 방대한 면적의 農耕地와 未墾地를 <無償>으로 私有地까지 「國有地」에 강제 편입시켜서 서류상으로 그 面積을 概算하고 一方的으로 이것이 國有地임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日帝가 國有地로 선언한 土地중에서 매우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民人의 私有地였으므로 民人들이 承服치 아니하여 日帝는 아직 國有地로서의 權利 행사를 다할 수 없었다.

제 2 단계는 日帝가 國有地로 강제 창출한 土地 중에서 주로 「農耕地」를 중심으로 現地踏査를 하여 그 「國有地」의 所在와 面積과 小作人을 確認하여 「驛屯土臺帳(國有地臺帳)」을 작성하는 작업의 단계였다. 日帝는 이를 「驛屯土實地調査」라고 불렀다.

이 工作은 「朝鮮土地調査事業」의 본격적 실시를 전제로 하고, 그에 앞서 國有地로 強制創出하여 區分해 놓은 農耕地가 「朝鮮土地調査事業」때 「國有地」로 <申告> <通知>되도록 事前 工作을 해 놓은 작업이었다.

日帝는 각 지방 財務監督局별로 現地踏査班을 파견하여 1909년 6월부터 1910년 9월까지 15개월 동안에 12萬 8,868町步의 「驛屯土」(國有地)의 面積을 확인하고 이것을 「驛屯土臺帳」으로 만들었으며, 그 小作人을 調査하여 「小作人名寄帳」을 조제 하였다.

그러나 이 때 日帝의 國有地 創出工作과 調査工作은 그들이 國有地로 區分한 土地를 一方的으로 確認하여 一方的으로 文書化하였을 뿐, 國有地에 강제 편입된 民人의 私有地에서

발생한 朝鮮農民의 所有權紛爭은 해결하지 않았으며, 일부러 이와의 충돌을 기피하고 그紛爭問題처리를 日帝強占뒤로 미루어 두었다.

日帝는 오직 小作料를 引上해서 통일적으로 定租의 金納으로 징수함으로써 小作料收入을 增大시킴과 동시에, 그 土地의 「國有地」임을 證明하는 資料를 수집하기에 열중했으며, 紛爭地의 問題에 대해서는 日帝強占後로 이를 미루어 넘겼다.

제 3 단계는 日帝가 「朝鮮土地調査事業」을 통하여 「國有地」를 스스로 法認하고 登記한 다음 日帝가 民人의 私有地를 「國有地」로 강제 편입함으로써 발생한 土地紛爭과 朝鮮農民의 反抗을 武力으로 彈壓하는 工作을 전개한 단계이다.

日帝는 「驛屯土地調査」가 끝난 1910년 9월부터 바로 「紛爭地調査」에 착수함과 동시에 「朝鮮土地調査事業」을 실시하여, 그들이 앞서 만든 「驛屯土臺帳」에 기재된 소위 「國有地」는 이를 官廳이 臨時土地調査局에 <通知>하여 國有地로 法認받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驛屯土臺帳」에 기재된 「國有地」 이외에도 ① 「未墾地利用法」에 의하여 貸與된 未墾地의 新開墾地 ② 無主閒曠地(公有地)에 단들어진 民有地와 火田과 陳田등의 土地 ③ 모든 종류의 民人의 堤堰畚 ④ <申告>하지 않은 土地등을 國有地에 강제 편입함으로써 「朝鮮土地調査事業」을 통하여 다시 掠奪의 方法으로 日帝의 「國有地」面積을 擴大하였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日帝는 紛爭地問題에 정면으로 대처하였다. 이 때의 土地紛爭은 日帝가 民人의 私有地를 「國有地」로 강제 편입함에 대한 朝鮮農民의 극히 정당한 反抗鬪爭의 한 형태이었다. 日帝는 이 土地紛爭을 ① 土地申告 때의 事前的 和解의 強制(申告의 諦念操作) ② 土地申告(後)의 和解의 強制(紛爭地申告의 取下) ③ 警察官憲의 動員을 통한 彈壓 ④ 裁判所와 土地調査局의 協定 結托에 의한 朝鮮農民의 敗訴判決 ⑤ 紛爭地審査委員會에 의한 國有地로의 査定등의 方法으로 紛爭地에 대한 民人의 私有權을 否定하고 日帝의 「國有地」로 査定하여 確定하였다. 이 과정에서 朝鮮農民의 각종형태의 反抗은 武力으로 彈壓되었다. 日帝는 紛爭地의 「國有地」로의 査定을 1918년 1월에 종결하였다.

제 4 단계는 「紛爭地」査定을 종결한 후 그들이 강제 창출한 「國有地」의 小作人和 小作人別疆界·地目·地番·等級조사를 실시하고 새로 추가한 「國有地」를 포함한 새로운 「驛屯土臺帳」과 地籍圖를 추가 조제하여 그간의 國有地 強制創出工作을 마무리 짓는 단계이었다. 그들은 이 작업을 「驛屯土分筆調査」라고 불렀으며, 이를 「朝鮮土地調査事業」의 附帶事業으로서 1918년 1월부터 1918년 12월말까지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 단계의 작업은 이미 武力으로 確定한 日帝의 「國有地」의 小作人을 정확히 파악하고 「朝鮮土地調査事業」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된 「國有地」의 小作人·面積·地目を 정확히 파



악하여 實測圖를 작성함과 동시에 舊驛屯土臺帳을 폐기하고 「朝鮮土地調查事業」에 의하여 작성된 土地臺帳과 地籍圖에 일치하도록 새로운 驛屯土臺帳과 地籍圖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 제 4 단계의 「驛屯土分筆調查」는 「朝鮮土地調查事業」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되었는데, 이 작업을 통하여 일제는 총계 13萬 7,224.6町步의 광대한 面積의 國有地를 최종 확보하여 登記하였다. 그리고 日帝는 이 土地에서의 小作料의 收入을 늘리시렸으며, 장래 이 土地를 日本移民 및 日帝資本에 拂下할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상과 같이 日帝는 4개의 단계의 國有地 強制創出工作을 전개한 결과 日帝朝鮮總督府는 1919년 2월 현재 13萬 7,224.6町步의 小作地와 총농가호수의 약 13.9%에 해당하고 純小作 農戶數의 약 28.7%에 해당하는 30萬 7,800餘戶의 小作農을 거느린 國內 最大地主가 됨과 동시에 가장 組織的으로 武力的으로 小作農을 搾取하는 地主가 되었다.

日帝의 國有地 強制創出工作에 의하여 日帝朝鮮總督府는 〈無償〉으로 土地를 占有하여 國內 最大地主로 등장하였으나, 그에 따라 朝鮮農民은 다수의 權利를 상실당하게 되었다.

朝鮮農民은 ① 종래의 私有地를 國有地로 빼앗기었으며, ② 慣習上의 耕作權을 상실당하였고, ③ 賭地權을 상실당하였으며 ④ 無主閒曠地의 開墾權을 상실당하였고 ⑤ 森料, 林野에의 入會權을 상실당하였으며 ⑥ 小作料를 늘리당하게 되었다.

朝鮮農民들은 日帝의 이러한 國有地 強制創出政策에 대하여 각종 형태의 격렬한 反抗鬪爭을 전개하였다. 日帝가 1918년 12월말 國有地 強制創出工作의 최후의 작업인 「驛屯土分筆調查」를 끝내자 그 두 달 후에 「3.1獨立運動」이 폭발하고, 農民層이 자발적으로 가장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참가하여 暴力運動으로 까지 3.1運動을 전개한 것은 그 社會經濟的 背景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